

관세연구 10-04

# 통관환경 평가지표 개발 연구

- 태국, 인도네시아 평가지표 적용 -

정재호 · 정재완 · 이정미 · 김정아 · 박지우

2010. 12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연구원



# 목 차

I. 서론	9
II. 통관환경 평가보고서 사례	12
1. EU 시장장벽백서(Market Access Issues)	12
가. 개요 및 발간취지	12
나. 형식 및 내용	14
2.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17
가. 개요 및 발간취지	17
나. 형식 및 내용	18
3. 우리나라 『외국의 통상환경』	22
가. 개요 및 발간취지	22
나. 형식 및 내용	22
III. 통관환경 평가요소 및 지표개발	25
1. 통관환경 평가요소 개발의 목적과 방법	25
가. 통관환경 평가지표 개발의 의의와 목적	25
나. 통관환경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 개발의 근거	26
다. 통관환경 평가에서 적용될 ‘통관’의 개념	27
2. 평가요소 및 주요 평가지표의 정의	28
가. 투명성(Transparency)	29
나. 공정성(Fairness)	30
다. 적법성(Legality: 국제협정과의 일치성)	31
라. 관세장벽(Tariff barrier)	32

마.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34
바. 효율성과 효과성(Efficiency and Effectiveness).....	35
사. 반부패(anti-corruption).....	37
아. 권익보호(Protection of Rights).....	38
자. 서비스(Service).....	39
차. 통관환경 개선 노력.....	40
3. 평가대상인 통관환경과 평가지표.....	42
가. 평가대상인 통관환경.....	42
나. 통관 기초환경에 대한 평가지표.....	43
다. 통관 단위업무와 각 단위업무에서 적용될 평가지표.....	45
4. 통관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	80
가. 통관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의 개요.....	80
나. 문헌/통계조사.....	80
다. 전문가조사.....	84
라. 사례조사.....	86
마. 설문조사.....	86
바. 조사자료 작성자의 샘플링(SAMPLING).....	88
IV. 태국의 통관환경제도 및 평가적용 사례.....	92
1. 통관환경제도.....	92
가. 태국의 대외무역 체계 및 현황.....	92
나. 태국의 수입통관절차.....	100
다. 통상애로 사례.....	107
2. 관세제도.....	113
가. 관세율 개요.....	113
나. 여러 가지 관세제도.....	117
다. 태국의 관세율 정책.....	125
라. 태국의 비관세장벽.....	128

3. 통관환경 평가지표 적용사례	134
가. 개요	134
나. 각 지표별 적용사례	141
<b>V.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제도 및 평가적용 사례</b>	<b>174</b>
1. 통관환경제도	174
가. 교역 동향	174
나. 통관제도	184
다. 통관애로 사례	189
2. 관세제도	196
가. 관세행정	196
나. 관세 분류방식	196
다. 관세율	197
라. 관세평가제도	201
마. 관세환급제도	202
바. 원산지 규정	203
3. 통관환경 적용사례	203
가. 개요	203
나. 지표별 적용사례	206
<b>VI. 요약 및 향후 개선방안</b>	<b>232</b>
1. 평가지표 개발	232
2. 태국과 인도네시아 적용사례	235
가. 태국	236
나. 인도네시아	237
3. 향후 개선방안	239
<b>참고문헌</b>	<b>244</b>

부 록.....	247
1. 정부투자기관의 아시아지역 소재지 및 연락처.....	247
2. 종합무역상사의 아시아지역 소재지 및 연락처.....	252
3. 최근 6년간 관세청장회의(세관협력회의) 개최실적.....	262

## 표 목차

〈표 II-1〉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CCK) 기관 개요	13
〈표 II-2〉 조세위원회의 한-EU 조세부문 현안 및 쟁점	15
〈표 II-3〉 2010년도 SPS/TBT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19
〈표 II-4〉 연도별 통관절차 보고내용	24
〈표 III-1〉 평가요소와 가능한 평가지표	41
〈표 III-2〉 평가대상 통관환경과 통관 단위업무	43
〈표 III-3〉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현황	82
〈표 III-4〉 관세청장회의(세관협력회의) 개최 실적	83
〈표 III-5〉 동남아국가 및 인도에 파견된 주재관 현황(2010년 현재)	85
〈표 III-6〉 동남아국가 및 인도 주재 정부투자기관과 종합무역상사	85
〈표 III-7〉 특정국의 통관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 모집단	89
〈표 III-8〉 동남아국 등에 직접투자한 우리나라 기업 현황(2010년 9월 현재)	90
〈표 III-9〉 특정국의 통관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표본의 선정	91
〈표 IV-1〉 태국의 무역관련 주요 법률 현황	95
〈표 IV-2〉 태국의 연도별·국별 수출 규모 및 순위	97
〈표 IV-3〉 태국의 연도별·국별 수입 규모 및 순위	98
〈표 IV-4〉 대 태국의 연도별 수출입 무역수지	99
〈표 IV-5〉 태국의 세수확보 현황-연도별, 수입원별	100
〈표 IV-6〉 태국의 MFN 실행 평균관세율(2009)	115
〈표 IV-7〉 태국의 종가세·종량세 비율(2009)	117
〈표 IV-8〉 평가요소와 가능한 평가지표	135
〈표 IV-9〉 예시: ASEAN 국가별 협정관세율 체계	149

〈표 V-1〉 연도별 인도네시아 수출입 현황	175
〈표 V-2〉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별 수출 현황	175
〈표 V-3〉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별 수입 현황	176
〈표 V-4〉 주요 품목별 수출	176
〈표 V-5〉 주요 품목별 수입	177
〈표 V-6〉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입 규모	178
〈표 V-7〉 對 인도네시아 수출상위 10대 품목	178
〈표 V-8〉 대 인도네시아 수입상위 10대 품목	179
〈표 V-9〉 對韓 수입규제 현황	192
〈표 V-10〉 인도네시아의 평균관세율(2009)	198
〈표 V-11〉 인도네시아의 종가세 · 종량세 비율(2009)	200
〈표 V-12〉 평가요소와 가능한 평가지표	205

## 그림 목차

[그림 III-1] 통관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80
[그림 III-2] 통관환경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의 실시방법	87
[그림 IV-1] 태국 MFN 실행관세율 분포	116
[그림 IV-2] 태국의 관세율 분포(2009)	117
[그림 V-1] 인도네시아 부별 평균 관세율 분포	199
[그림 V-2] 인도네시아의 평균관세율별 분포현황(2009)	200

## I. 서론

-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 무역의 여건 속에서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무역원활화에 밑바탕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작성됨
  - 최근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통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간 원활한 교역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서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도 무역원활화가 이슈로 등장함
  
-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을 갖추고 있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역대국이므로 개별 국가의 통관환경이 우리나라 교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상황임
  - 이에 우리나라 교역 상대국에 대한 통관환경을 조사 및 파악하는 것은 양국간 교역을 보다 원활히 하고 양국간 교역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임
  
- 한 나라의 통관환경을 다른 나라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평가에 매우 신중해야 함
  - 만일 어떤 평가요소나 평가지표에 특정성이 지나치거나 사실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전체적인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됨
  - 또한 평가방법이 적정하지 못할 때도 그 평가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 그리고 평가방법이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
  - 통관환경 발전 또는 우리나라와 평가대상국 간의 무역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사항들이 포함된 통상환경 평가요소와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함

- 특히 통관환경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과정은 일반적인 평가지표 개발과는 달리 교역 상대국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신중함과 장기적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며 지표개발, 분석, 적용은 여러 단계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1차 단계에서는, 고려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문헌조사 및 각종 자료를 분석하는 탐색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지표 대략의 윤곽을 파악한 후,
  - 이어지는 후속연구로 전문가조사와 더불어 설문(안)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평가 지표에 대한 타당성 및 설문대상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 이를 바탕으로 완성도 있는 평가지표 개발 및 설문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 설문 결과의 분석과 다각적 평가를 통해 향후 다른 국가들에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 장기적으로 여러 각국에 적용 가능한 정량화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정할 수 있음
  
-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통관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보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로 통관정보가 부족하고 관세행정이 낙후된 ASEAN 회원국 중 수출규모 금액이 상위권인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sup>1)</sup>을 평가해 보고자 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제Ⅱ장에서 각국의 통관환경보고서를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핵심인 통관환경 평가요소에 대한 개발작업을 수행한 후, 제Ⅳ장과 제Ⅴ장에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2개국에 대해 각국의 무역환경 관련 제도를 정리하고 통관환경에 대한 평가지표를 적용한 후에 제Ⅵ장에서 결론으로 마무리함
  - 제Ⅱ장은 각국의 통관환경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현재 시장장벽 및 무역환경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인 미국의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와 EU의 시장장벽 보고서 및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외국의 통상환경의 취지와 내용 등을 간략히 개괄하여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음
  - 제Ⅲ장에서는 통관환경요소 개발 목적과 방법, 평가요소 및 주요 평가지표의 정

1) 2009년 12월 기준으로 한국-ASEAN 회원국 수출규모 순위에서 태국은 4위, 인도네시아는 2위임

의, 평가대상인 통관환경의 평가지표 개발 작업들을 수행하였는데, 각 10개의 평가요소에 대해 요소별 2~5개의 평가지표를 포괄하여 총 38개의 지표를 개발함

-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각각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 평가적용 사례를 살펴보는 데, 우선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제도와 관세제도 및 통관애로사항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제Ⅲ장에서 개발된 38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각국의 적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

□ 제Ⅵ장 요약 및 향후 개선방안에서는 앞선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지표 적용과정과 설문대상·설문구성을 제시하면서 보고서를 마무리함

- 우선 설문을 통한 평가지표의 적용과정을 살펴보면, 구체성 확보 및 설문조사의 수행과정은 각국에 주재하는 상공회의소를 이용하여 현지법인들과 교류하는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임
- 대략적인 설문의 대상은 일반적 대상자인 ① 여행객·국내수출업체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이해 요구의 당사자인 ② 현지 투자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제시함
- 설문의 구성은 대략 ① 대상국 관련 보편적 정보, ② 일반적인 무역현황, ③ 구체적인 통관환경 관련 질문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적시함

## II. 통관환경 평가보고서 사례

### 1. EU 시장장벽백서(Market Access Issues)

#### 가. 개요 및 발간취지

-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이하 EUCCK)에서 발행하는 EU 시장장벽백서(Market Access Issues)는 한-EU 간 대외무역 성장에 방해가 되는 무역장벽 등 문제점을 기초로 작성한 무역보고서임
- 동 문서는 EU와 한국 간의 통상협상의 기초가 되며, 개별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 쌍무적인 협상을 진행할 때 이용될 수 있음
- EUCCK 산하 산업별 위원회가 수집해 1차 요약한 자료는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거쳐 한국 정부, 브뤼셀 EU본부, 서울의 EU 분과위원 및 관리들, 그리고 EU 회원국 대사관에 전달됨
- 보고서는 한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주한 유럽 기업과 투자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18개 분야의 비관세장벽 문제들을 담고 있음
  - 보고되는 분과는 주류, 상용차, 은행, 화학 및 농약, 건설, 화장품,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식음료, 건강관리, 인적자원, 보험, 정보통신, 지적재산권, 법률서비스, 물류 및 운송, PR 마케팅, 부동산, 조세 이상 18분야임

〈표 II-1〉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CCK) 기관 개요

정식명칭은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이며 1986년 2월에 설립됨. EU의 재정지원하에 한국에 기반을 둔 다양한 EU 기업체들과 주한 유럽연합 대사관에 의해 구성됨. 현재 주한 27개국 유럽연합 대사관과 800여 유럽연합 및 한국 기업체회원들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으로, 부산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유럽연합 정부와 한국 정부부처, 국내외 경제단체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고도로 정보화된 회의소로 발전하고 있음. 한국 내 유럽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무역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정부부처와 협력해 매년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오는 역할을 했으며 EUCCK와 관련 그룹은 EU 정부의 특정 그룹과 비EU 회원국 내 비즈니스 연합체 간의 대표적 의견교환 기관인 European Business Organization(EBO)의 멤버임

- EUCCK 장 자크 그로하 소장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동 보고서가 양국 목표 달성의 효율적 도구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 “EU와 한국 양측이 상호 협조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시장진입장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EU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발표함
- 시장장벽백서 출간은 EU와 한국의 유관사업 거래를 촉진하고, 한국에서의 EU 기업의 사업과 EU에서의 한국 사업이 호혜적으로 대우받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구성원들에게 한국에서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발전상황 특히 무역장벽에 대한 정보 제공
  - 구성원들 간에 한국에서의 사업활동에 관한 공통적인 문제와 기회 요인에 관한 정보 제공
  - 한국의 핵심 정부부처, 기타 정부기관 및 지방 경제단체와 연합하여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고, 구성원들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각 정부부처에 촉구하며, 관련 법규상의 변화를 관찰, 관계당국에 법규 개정을 권고하는 목적이 있음
-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EUCCK와 주최국 간의 견해 교환을 증진시키고, 정부 서비스와 기관 간의 더욱 공고한 관계를 형성하며, EU의 정책과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그 정책의 실행과 발전 기반을 다지는 것임

## 나. 형식 및 내용

- 본 보고서는 총 1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CCK가 작성한 보고서는 당해연도 외교통상부에서 자료를 검토받고, 성명서(Position Paper)를 근거로 차년도 시장 진입장벽보고서를 발행하는 형식임
- 위원회별로 현안, 쟁점, 제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 형식이며 특히 제안은 현장에 있는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성됨
- 통관절차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 물류 및 운송부분에서는 2009년에 이어 2010년도 팔레트 문제가 지적되었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한-유럽 간 팔레트 기준이 다른 데 따른 문제가 자주 야기되기에 포장 단위의 표준화, 즉 국제규격의 팔레트화를 통해 양 지역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물류비를 절감시키는 효과
  - 한, 중, 일은 1.1m × 1.1m를 사용하는데, EU는 1.2m × 0.8m 규격이라 1.2m × 1m 규격으로 확대 추진 필요
- 또한, 해외에서 판매중인 차량에 적용된 자동차 신기술이 한국에서는 더딘 행정절차 탓에 제때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그 외에도, 물류·운송분과 관련 외국계 운송업체 및 전세기 취항 허용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함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에서 고정자산에 큰 투자를 하지 않는 외국계 전문 포워딩 업체들을 위한 별도 규정을 마련
  - 외국계 복합운송업체들이 세관면허를 포함한 이중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전세기 취항을 허용

□ 조세위원회는 조세 관련 무역장벽 현안을 외국인투자, 지방세, 상계, 대손금 손금산입, 원천징수, 대손세액공제, 감면기간, 증권거래세 등의 부문에서 정리하고 개선점을 제안함

〈표 II-2〉 조세위원회의 한-EU 조세부문 현안 및 쟁점

2009년 조세관련 현안	쟁점 및 건의	2010	쟁점 및 건의
지주회사를 통한 외국인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건의	외투감면 대상 법인의 감면된 증자 등록세의 소급과세	과세당국이 동 사안에 대한 해석을 바꾸어 이를 소급 적용하여 다시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사료 됨
접대비 범위	접대비의 정의와 범위의 한정	지방세에 대한 경정청구	과오납 환급신청규정이 있으나 해당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을 시 불복청구가 불가함
외국환 거래법상 상계 및 제3자 지급 등 사전 신고의무 폐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하게 하고 해외법인들과의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선의의 범법자만을 만들어내는 상계 또는 제3자 지급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사후 심사를 통해 외화도피 또는 불법적인 외화송금 여부를 가려내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함	대손금의 손금산입	실무적으로 세무당국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금에 산입된 대손채권의 경우라도 납세자가 법적 조치를 비롯한 채권회수를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증명해야 하고 증빙 미비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대상에 포함시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거투자거래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분위기를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에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함	대손세액공제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는 법적 조치 및 기타 채권회수 노력에 따라 중단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경우 납세자는 법인세법상의 대손처리를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

〈표 II-2〉의 계속

2009년 조세관련 현안	쟁점 및 건의	2010	쟁점 및 건의
사용료소득 개념의 명확화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상 사용지주의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이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사용지가 정보나 기술을 실제로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지를 의미하는지 생산된 제품이 실제로 판매되는 소비지를 의미하는지가 모호함	경정청구기한세액공제	수정신고에 비하여 경정청구에 관한 소멸시효만을 제한하는 것은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환급청구권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임
비거주자의 을 중 근로소득 과세방법의 명확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분리과세를 할 것인지의 방안과 분리과세시 적용될 세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실무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세법적용상의 혼란을 없애야 함	외국사업자 간접세 특례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까지는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며 일선 세무서가 아닌 국제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제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이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움
외국법인의 구조조정에 따른 국내주식 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의 장려를 위한 차원에서 제한적이나마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증자시 외투감면 기간 계산	증자에 따른 감면의 경우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 등기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 감면이 적용되며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법인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개선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의 지주회사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80%에서 95%로 상향조정하고, 자회사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나 지주회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회사의 경우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30%에서 80%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함	국제청 국제협력의 인력감축	현재 국제청 내의 국제조세전문가의 인원을 감축할 경우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APA나 CA를 진행 또는 완료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제공되지 않아 이로 인한 부적절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이로 인하여 납세자에게는 세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국제청에 대한 신뢰도 상실될 우려가 큼

자료: EU상공회의소

## 2.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가. 개요 및 발간취지

-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행하는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로 향후 미국의 우선 협상대상국, 감시대상국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74 통상법(the 1974 Trade Act) 제181조 개정법령인 84 통상법 무역과 관세법(the 1984 Trade Act)의 제303조, 88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의 제1304조 및 UR 이행법(Uruguay Round Agreements Act) 제311조에 근거함
- 주요 해외무역장벽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 상원재정위원회(the Senate Finance Committee) 및 하원의 적합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임
- 이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에서 수집되는 불만사항과 해외주재 미국대사관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상무부, 농무부, 국무부, 노동부, 재무부, 예산관리국, 경제자문회의(CEA), 국가경제위원회(NEC) 등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참고해서 작성됨
- 최신 보고서(2010)는 25번째로 총 58개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총 10쪽에 걸쳐 수입정책, 조달, 표준인증, 서비스 및 투자장벽 등 10개 분야에서 통상관련 수출입업자들이 겪는 주요 불만사항을 기술함
- 미국은 전통적으로 동 보고서를 기초로 교역 상대국들에 통상압력을 가해 왔는데 특히 WTO 출범(1995) 이전까지 미국이 교역 상대국에 강력한 통상압력을 행사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음

○ 특히, 스페셜 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정부조달 불공정관행국 지정,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의 골간이 된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 특히 미국과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주목을 받아 왔음

## 나. 형식 및 내용

□ 약 62개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 조사대상국으로 9개 분야에서 무역장벽에 대해 기술하는 형식임

□ 금년부터 SPS<sup>2)</sup>(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sup>3)</sup>(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에서 분리하여 각각 발표함

○ 금년도 NTE 및 SPS/TBT 무역장벽보고서는 총 609쪽 분량으로, 중국(54쪽), EU(41쪽), 일본(24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6쪽 분량임

□ 발행 내용으로 수입정책, 정부조달, 수출보조금,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장벽, 투자장벽, 정부용인, 전자상거래 관련 제한, 기타장벽 등임

○ 수입정책

– 관세와 수입부과, 정량적 제한, 수입 라이선싱, 통관장벽

○ 정부조달

– 자국산구매(Buy National) 정책과 제한입찰(Closed Bidding)

○ 산업보조금

– 특혜기간이 부여된 수출파이낸싱, 농업 수출보조금

○ 지적재산권 보호

– 부적절한 특허권, 저작권, 상표등록 체계

2)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3) Repor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서비스장벽
  - 외국 재정기관에서 제공된 재정서비스 범위의 한정, 국제정보 흐름의 규제, 해외정보 절차 관련 사용의 제한, 해외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조항에 관한 장벽들
- 투자장벽
  - 해외단체 참여의 한정과 외자 R&D, 지역콘텐츠 요구사항, 기술이전 요구와 수출수행 요구에 대한 접근 제한, 외화, 자본 송금 제한
- 경쟁 제한적 관행(Government-tolerated)
  - 외국시장에서 미국 제품 혹은 서비스 판매를 제한하는 국가소유 및 사유 기업들의 반경쟁적 행동(Anticompetitive Conduct)
-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통상제한
  - 관세 및 비관세 조치들, 차별적 규제와 스탠더드, 차별적 과세정책
- 기타 장벽들
  - 뇌물과 부패 등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들

〈표 II-3〉 2010년도 SPS/TBT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 내용

분 야	주요 내용
수입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li> <li>○ 관세할당(TRQ) 및 조정관세를 통해 수입 농산물 시장 접근을 제한</li> <li>○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을 통해 미국산 쌀의 한국시장 접근 개선</li> </ul>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 인터넷전화에 대한 국산 암호화 알고리즘(ARIA) 탑재와 관련, ARIA 탑재 의무화 대상 기관이 아닌 기관(대상기관 : 외교·안보 관련 기관)에서 여전히 정부조달시 ARIA 탑재를 요구 중</li> <li>○ 공공기관용 암호 관련 네트워크 장비에 일부 암호화 알고리즘(ARIA 또는 SEED)만 탑재를 허용하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AES는 배제</li> </ul>
산업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은행 민영화 현황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하고 산업은행과 한국신용공사를 분리하였으며, 향후 상장 계획 등에 대해 상세 소개</li> </ul> </li> </ul>
지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저작권법 등 입법 현황과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Topsites 단속, 대학가 불법복사 단속 등 집행 현황에 대해 평가</li> <li>○ 온라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특허-허가 연계 관련 식약청 및 특허청 간 협조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있음을 표명</li> </ul>

〈표 II-3〉의 계속

분야	주요 내용	
서비스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쿼터 제한, 외국 재송신 채널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지역광고 제한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에 대한 위성방송 서비스 직접 제공 제한, 별정통신 통신망 접근 권리 제한, IPTV 면허요건에 콘텐츠 쿼터 적용 등도 제기</li> </ul> </li> <li>○ 법률시장 개방 계획, 우정공사·농협·수협 등과 민간금융기관 간 차별적 감독, 금융규제의 투명성 부족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의 규제 및 시장접근 문제 제기</li> </ul>	
투자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우려사항 해소 및 장벽 제거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 계획, 경제자유구역 제도 등 소개</li> </ul> </li> <li>○ 투자 관련 규제 결정의 투명성 부족, 쌀·보리 경작 관련 외국인 투자 금지, 기간통신사업자 및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육류도매, 전력사업,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을 장벽으로 지적</li> </ul>	
경쟁 제한적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현황 설명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보고서 송부시 심사관 조치의견 및 과징금 산정 기준 설명 등</li> </ul> </li> </ul>	
기타장벽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 차별적인 배기량 기준 세제, 표준, 규제 투명성 부족, 규제 및 표준 개발시 초기에 이해관계자가 의견 제기할 수 있는 기회 부족 등 지적</li> <li>○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 구체화 과정에서 미국 정부 및 수입 자동차 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현 가능하고 공정한 관련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 지적</li> <li>○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금지, 관세 및 세금수준, 저당권 설정 불능 문제 등 지적</li> </ul>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통한 약가 인하가 추진되고 있는바, 미 정부는 혁신 약제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추진해 줄 것을 지속 요청 중</li> <li>○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등 불법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에 있어 미국 업체측은 투명성 등 문제를 제기</li> </ul>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 관련 제도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부여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요청</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제·개정 및 규제 제도에 있어 투명성 부족, 행정절차법상 불충분한 입법예고기간(20일) 및 제출의견의 미반영 문제 지적</li> <li>○ 08.7월 시행된 개정 주세법이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만 적용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 소개</li> </ul>

〈표 II-3〉의 계속

분야	주요 내용
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용타르색소 사용 금지 관련, 동 방안이 추진 보류되었음을 설명</li> <li>○ 쇠고기 관련, 고급 냉장육 수입 증가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쇠고기 교역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협의 의지 표명</li> <li>○ 체리의 메틸브로마이드 혼증 요건 관련 식물검역 당국간 협의 현황 설명</li> <li>○ ‘불검출 농약 목록 신설’ 관련 기존 최대잔류허용기준(MRL) 목록 유지 및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우리 정부와의 협의 의지 표명</li> <li>○ LMO법이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규정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를 한다고 우려 표명</li> </ul>
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전화에 대한 국산 소프트웨어 플랫폼(WIFI) 탑재 문제 관련, WIFI 탑재 의무화가 09.4월 해제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이로 인해 스마트폰의 한국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언급</li> <li>○ 적합성 평가 관련, 해외시험기관 발행 성적서 수용과 관련 최근 진진 사례(냉장고 에너지효율 신고 및 리튬이온전지 안전성 인증)를 소개하고, 이를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li> <li>○ 기능성 화장품 주성분 제도 및 기능성 화장품 미국 내 작업장 인정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한국측과 협의 예정임을 설명</li> <li>○ 유기가공식품인증제와 관련,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2009.12월 농식품부는 동 제도에 따라 인증받지 않고서도 해외 유기식품의 판매를 2011.1.1까지 허용하도록 하였으나, 동등성 인정 등 장기적 해결책이 요구된다고 설명</li> <li>○ GMO 표시제 확대 관련, 2008.10월 식약청이 제안한 법령 채택 여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상급 미정이라고 설명</li> <li>○ 냉장고 에너지효율표시제도 관련, 냉장고 에너지효율 측정 방법 관련 우리 정부의 국제표준 도입('08년도) 현황 및 최근 이의제기제도와 관련한 일부 진진 사항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효율 허위표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li> </ul> </li> <li>○ 한국 정부가 여러 유형의 박막 태양전지 중 비정형 실리콘계에 대해서만 인증을 실시 중인 것에 우려를 표명</li> </ul>

자료: 외교통상부(2010)

### 3. 우리나라 『외국의 통상환경』

#### 가. 개요 및 발간취지

- 1998년부터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에 대한 통상환경을 조사·분석하여 발간해 오고 있음
- 2009년판<sup>4)</sup>은 2008년 대비, 가나·라오스·레바논·키르기즈스탄·파라과이 등 5개국의 통상환경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94개국에 대한 경제현황 및 투자환경,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 각종 통상장벽 관련 정보를 담음
- 한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으로서 거래상대국의 경제·통상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협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임
- 또한, 각종 통상 관련 양자 또는 다자 회의 및 협상에서도 우리나라의 통상이익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함

#### 나. 형식 및 내용

- 동 책자는 각국의 통상장벽 정보를 분야별로 조사한 ‘분야별 통상환경’과, 국가별로 경제현황, 우리나라와의 무역·투자 관계, 각종 통상장벽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지역별(국별) 통상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분야별로 관세,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보조금, 원산지규정, 정부조달, 표준·인증 등 기술장벽, 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 환경, 경쟁정책, 금융 등 15개 분야별로 조사·분석·정리함
  - 지역별로 아시아·대양주, 미주, 아중동, 구주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함

4)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10년판은 2011년 1월에 발행될 예정임

- 발간물의 구성은 공통적으로 개관, 현황분석, 국가별 문제점 순으로 기술됨
  - 개관에서는 부분별, 지역별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 현황분석에서는 국가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즉, 어떤 무역장벽이 존재하는지 국제적 협의는 어떠한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 통관환경에 있어,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통관절차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 문제점을 강조함
  
-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수입통관의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시스템, 세관분류의 임의 변경,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는데 따르는 방대하고 복잡한 서류절차 등이 있음
  
- 통관절차는 관세와는 달리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운용이 빈번한 분야이며 정해진 절차와 실제 운영이 큰 차이를 보이기 쉬움을 지적하면서, 이는 결국 무역업자들에게 시간 및 금전적 교역비용을 부담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하였음

〈표 II-4〉 연도별 통관절차 보고내용

	목록	2007	2009
통관절차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협상으로 인해 관세장벽은 완화되는 추세, 비관세장벽인 세관의 규제가 강화되는 경향</li> <li>○ 통관절차에 따른 문제점은 개도국에서 빈발하는바, 이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통관절차는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함</li> <li>○ 통관절차상 무역장벽의 일반적인 유형으로는 항만에서의 적체, 수입통관의 과도한 지연, 비과학적 검사 및 검역 시스템, 세관분류의 임의 변경,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데 따르는 방대하고 복잡한 서류절차 등</li> </ul>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의 중요한 경향은 기술표준, 위생검역 등 기술장벽과 관련된 절차가 강화되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li> <li>○ 통관운영과 관련한 국가간 제도 및 절차적 상이성이 많이 해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li> <li>○ 기술 및 검역과 관련된 통관절차의 복잡한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간 무역원활화 협상의 진전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li> <li>○ 원산지규정, 위생검역 등과 관련된 통관절차의 복잡한 운영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임</li> <li>○ 개도국의 경우 통관운영 자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 큼</li> </ul>
	국가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의 통관절차의 개요와 문제점을 살펴봄. 해당 국가는 미국, EU, 일본, 호주 등 1개 지역연합 및 18개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EU, 중국, 일본, 호주 등 1개 지역연합 및 26개국</li> </ul>

자료: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2009)』

## Ⅲ. 통관환경 평가요소 및 지표개발

### 1. 통관환경 평가요소 개발의 목적과 방법

#### 가. 통관환경 평가지표 개발의 의의와 목적

-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으로서 초기단계에서는 선진국을 모방하였는데, 그 이후는 무역 중심의 경제개발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수용하여 이를 내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음<sup>5)</sup>
  - 그러나 이제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역대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을 갖추게 되었을 뿐 아니라 원조를 받고 평가를 받는 개발도상국에서 원조를 하게 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고,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주는 모범적인 국가가 되었음
  - 국제무역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관세징수를 통한 재정수입과 산업보호 등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통관에서도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효율·효과적인 통관절차 이행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발전 노력으로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채용함으로써 통관시스템(UNIPASS)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sup>6)</sup>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관세행정을 구현하는 단계로 발전함
  
- 유엔(UN), 세계무역기구(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뿐만 아니라 FTA 등 각국과의 양자간 협상에서 통관은 항상 주요한 협상항목의 하나로 포함됨

5)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2010), pp. 13~15 참조

6) 도미니카 공화국, 몽골 등에 수출하고 라오스, 네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멕시코, 케냐, 탄자니아, 슬로베니아 등에서 벤치마킹(<http://www.unipass.or.kr> 참조)

- 그 이유는 한 나라가 제공하는 통관환경이 그 나라와의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임
- 따라서 무역과정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며, 그와 관련한 정부의 행정행위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역상대국의 통관환경을 면밀히 평가하여 자료화하고, 이 자료를 교역상대국과의 합리적 교역관계 설정과 교역상대국에 직접 투자하여 생산·판매·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당해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보호하는 데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선진화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개발도상국이 그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을 채용하도록 적정하게 지원하는 것은 선진국의 도의적 의무이자 국제무역의 원활화에 기여하고<sup>7)</sup>, 무역을 경제의 주축으로 하는 우리나라 국익에도 전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에서 통관환경이 성숙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통관환경을 적극 평가하여 그 자료를 평가대상국의 통관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나. 통관환경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 개발의 근거

- 한 나라의 통관환경을 다른 나라에서 평가할 경우 그 평가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피평가국에 수용되려면 평가요소 및 평가지표, 그리고 평가방법이 국제규범에 근거하여야 하며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
  - 만일 어떤 평가요소나 평가지표에 특정성이 지나치거나, 평가에 있어 사실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전체적인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평가방법이 적정하지 못할 때도 역시 그 평가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므로 그와 같은 평가결과는 아무 효용도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임

- 통관환경과 직접 관계되는 국제규범은 WTO협정<sup>8)</sup>과 WCO의 각종 협정, 특히 세관

7)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1999. 6. 30. WCO 총회에서 채택, 2006. 2. 3. 발효)는 '통관절차와 관행의 간소화와 조화를 통하여, 그리고 국제적 협력의 증진을 통해 그러한 무역과 교환의 발전에 대한 효과적인 기여'를 동 협약의 목표로 제시. 동 협약 서문 참조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개정교토협약’이라 함<sup>8)</sup>)이며, 그 외에 UN의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등 각종 다자간조약이 될 것임  
 ○ 또한 통관환경 평가대상국과 우리나라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양자조약도 특정국에 대한 통관환경 평가에서 기준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평가요소는 이들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하여 개발하되, 조약에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관환경 발전 또는 우리나라와 평가대상국 간의 무역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사항도 평가요소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다. 통관환경 평가에서 적용될 ‘통관’의 개념

□ 통관환경 평가에 있어 ‘통관’의 개념은 개정교토협약이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국의 관세영역<sup>10)</sup>으로 국내사용 목적의 반입, 수출, 또는 다른 절차로 이관을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관절차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함<sup>11)</sup>

8) WTO 정식 회원국은 2010년 9월 현재 153개국이며 31개국이 Observer로 참여하고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WTO협정을 규범으로 수용

9) 개정교토협약 가입국은 2010년 9월 현재 ALGER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ELGIUM, BOTSWANA, BULGARIA, CANADA, CHINA, CONGO(Dem. Rep. of th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GYPT, ESTONIA, EUROPEAN COMMUNITY, FINLAND, FIJI,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NDIA, IRELAND, ITALY,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OREA, LATVIA, LESOTHO, LITHUANIA, LUXEMBURG, MADAGASCAR, MALAYSIA, MALI, MALTA, MAURITIUS, MONGOLIA, MONTENEGRO, MOROCCO,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AKISTAN,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SENEGAL, SERBIA,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WEDEN, SWITZER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RKEY,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VIETNAM, ZAMBIA, ZIMBABWE 등 71개국임. 일부 통관환경 평가대상국이 개정교토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동 협약이 발효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동 협약이 국제기구에서 채택되어 발효되었고, 다수 국가가 이미 이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규범성을 가지는 것에는 변화가 없음

10) 관세영역이란 평가대상국의 관세법령이 적용되는 영역을 의미.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Chapter 2, E11./F2. 참조

11)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Chapter 2, E5./F9. 참조

- 이와 같이 통관의 용어를 정의할 경우 수입은 외국무역선(기)의 입항에서부터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국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유통 상태에 놓여질 때까지의 전체 과정과,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에서부터 당해 물품을 적재한 외국무역선(기)의 출항까지 전체 과정을 포괄하는 의미의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직접적인 통관절차가 종료된 이후 통관과 관련한 사후적 통제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로서 사용되어야 함
  - 또한 평가대상국으로의 수입과 수출뿐 아니라 평가대상국에서의 반송이나 환적도 포함되며, 통관대상이 되는 물품은 무역화물뿐 아니라 우편물과 여행자의 휴대품통관 등도 포함될 것임

## 2. 평가요소 및 주요 평가지표의 정의

- 통관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그 특성을 고려한 다음, 여기에 WTO협정과 개정교토협약 등의 이념과 주요 내용을 기초<sup>12)</sup>로 하고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sup>13)</sup>’, 유럽상공회의소가 매년 발간하는 ‘시장장벽보고서<sup>14)</sup>’ 등을 참고하여

12) WTO협정과 개정교토협약의 이념 등에 대해서는 Stewart, Torrence P(ed), *The GATT Uruguay Round : A Negotiating History(1986-1992)*,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1993); Anne O. Krueger, *The WTO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98); Meserlin, P. and Zarrouk, J., “Trade Facilitation : Technical Regulation and Customs Procedures”, *The World Economy*, 23(2000); Bernard M. Hoekman & Michel M. Kosteck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2001); Kostecky, M., *International Marketing and the Trading System*, Geneva : ITC(2001); Marceau G. and Trachtman J.,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greement, and the GATT, *Journal of World Trade*, 36(2002); Arrowsmith, S.,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 The Objectives of Regulation and the Boundari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Journal of World Trade*, 37(2003); Kameswari, S., *Introduction to the Revised Kyoto Convention-the key instrument link the GATT article on trade Facilitation*,(2004); Leslie Alan Glick, Esq., *Guide to United States Customs and Trade Laws*, Wolter Kluwer(2008); 양준석, 「WTO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적 함의」, 『무역학회지』 제29권제3호(2004.6.); 이남구,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제1호(2005.2.); 이명현·정재호·김재식, 『무역원활화 규범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2002.12.); 정재완·장근호, 『WCO교토협약이 권고하는 선진통관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한국관세무역연구원(2001); 정재완, 「국경절차에 대한 가치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제3호(005.8.) 등의 자료를 참고함

특정한 국가의 통관환경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주요 요소를 추출하면 ① 투명성, ② 공정성, ③ 적법성, ④ 관세장벽, ⑤ 비관세장벽, ⑥ 통관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 ⑦ 반부패, ⑧ 권리보호, ⑨ 서비스, ⑩ 통관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으로 정리됨

□ 이들 10개 평가요소의 정의와, 각 평가요소별로 당해 요소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 투명성(Transparency)

□ 투명성의 원칙은 평가대상국 행정기관의 통관절차와 관련된 법령과 규칙 등이 적정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통관에서 이러한 법령과 규칙에 기초한 의사결정이나 적용, 제도의 운용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하며, 통관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이유가 고지(告知)되어야 한다는 원칙임

○ 이 원칙은 WTO협정의 일관된 원칙으로 다자간협정의 곳곳에 명시되어 있고<sup>15)</sup>, 개정교토협약에도 통관절차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고, 투명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sup>16)</sup>

□ 투명성은 통관을 이행하는 무역업체로 하여금 수출입물품의 통관 가능성과 통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미리 예상할 수 있게 하고, 불이익한 결정이 있을 경우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무역원활화에 기여함

13) U.S. Representativ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2009, 2010) 참조

14) EUCCK, *Review on 2009 EUCCK Market Access Issues 및 2010 Market Access issues*, 이에 대해서는 [http://trade.eucck.org/site/2009/ko/review\\_2009.htm](http://trade.eucck.org/site/2009/ko/review_2009.htm)를 참조

15)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Preamble and article 6,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Preamble,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article 6,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rticle 22,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Preamble and article 3, 등 참조

16)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Appendix 1 Preamble 및 General Annex Chapter 9 참조

- 통관환경 평가에서는 법령과 규칙 자체뿐 아니라 이러한 법령과 규칙을 적용하는 통관과정의 투명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 평가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함
- ①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과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 ②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③ 통관과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④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⑤ 국제협약 가입 상황

#### 나. 공정성(Fairness)

- 통관에 있어 공정성이란 통관대상인 수입물품에 대해 평가대상국 세관당국이 WTO 협정이 규정한 내국민대우의 원칙(National Treatment)과 최혜국대우의 원칙(Most-Favoured Nation Treatment)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 WTO협정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무역자유화 내지 국경을 출입하는 거래에 있어 정부의 개입과 이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내국세나 적용하는 국내규칙이 국내 상품에 대해 적용하는 그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임
  - WTO는 이와 관련하여 ‘수입되는 상품은 수입국 내에서의 판매 및 판매를 위한 제의,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규칙 및 기타 요건에 관해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허용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up>17)</sup>
-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대해 따로 예외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 있어서 제3

17)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rade article 3.4 참조. 그 외 무역관련 투자나 지적재산권 거래,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도 유사한 취지가 규정되어 있음.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article 2,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ticle 3,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Preamble and article 17 등을 참조

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임<sup>18)</sup>

- 결국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수입통관에서 평가국의 통관물품이 평가대상국 상품 또는 제3국 상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여 경쟁상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임<sup>19)</sup>

□ 통관환경 평가에서는 평가대상국의 통관단계에서 이들 두 가지 원칙이 지켜지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 평가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함

- ①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② 수입물품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다. 적법성(Legality: 국제협정과 의 일치성)

□ 통관에 있어서 적법성은 평가대상국의 통관관련 법령과 규칙 및 세관을 포함한 통관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관세평가, 품목분류, 통관물품의 취급, 기타 각종 통관절차의 이행과 관련한 행위가 평가대상국이 체결하고 있는 다자간협정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간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의미함

□ WTO협정은 동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각 회원국은 자기 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절차가 WTO협정에 규정된 바와 합치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sup>20)</sup>

- 다만,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나 협정 적용의 유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sup>21)</sup>을 이들 국가에 대한 통관환경 평가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18)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rade, article 1.1 참조

19) 외교통상부, 『WTO 이해하기』 1999. 8, pp. 6-11 참조

20)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rticle 2.2 and article 16.4 참조

21)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reamble, article 10 및 GATT 1994 PART IV(Trade and Development) 참조

- 또 개정교토협약은 세관절차 및 관행의 조화 및 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준(Standard)’, ‘과도기 표준(Transitional Practice)’, ‘권고관행(Recommended Practice)’ 등으로 규정<sup>22)</sup>하고 각국의 세관당국이 통관절차를 수행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함<sup>23)</sup>
  - 또한 양자간협정은 특정사항에 대해 협정을 체결한 주권국가 간 합의를 담고 있고 상호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 것이므로 협정체약국의 의무사항이며 평가대상국이 우리나라와 양자간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협정에 규정된 사항은 우리나라의 권리로서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정부당국 또는 그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각종 기관/단체의 처분 또는 행위는 당해국이 체결한 협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통관환경 평가에서는 평가대상국이 체결한 다자간협정 및 우리나라와의 양자간협정의 통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가 평가될 수 있으며, 이 평가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함
  - ① 통관과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② 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라. 관세장벽(Tariff barrier)

- 관세는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중대한 장벽을 이루는 요소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무역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WTO협정은 모든 회원국 관세

22) ‘표준’은 그 시행이 통관절차 및 관행의 조화 및 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규정. 개정교토협약 체약국은 이 ‘표준’에 기속됨. ‘권고관행’은 통관절차 및 관행의 조화와 간소화를 향한 진전으로 인정되며, 가능한 한 광범위한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특정부속서상의 규정을 말함. 체약당사국이 협약의 수락 시점 또는 그 이후 어느 시점에 국내법령의 규정과 관련 권고관행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적시하여 이의 유보를 WCO의 이사회에 통보하면 해당 권고관행 적용은 유보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표준과 마찬가지로 체약당사국이 기속됨.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article 12 참조

23)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Appendix 1 article 1 and article 13 참조

장벽의 실질적인 삭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음<sup>24)</sup>

- 관세는 종류가 다양<sup>25)</sup>하고, 부과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떤 종류의 관세를, 어떤 상품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 어느 수준으로 부과하느냐에 따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남

□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자유항 국가가 아닌 한 각국은 모든 무역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산업보호나 공정무역 등을 이유로 기본관세율을 높여 부과하기도 하고, 다자간협정이나 양자간협정에 의해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을 낮추어 부과하기도 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목적으로 탄력관세를 운용하기도 함

- 또한 일단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관세의 부과를 면제하거나(감면), 징수된 관세를 되돌려 주기도 하고(환급), 관세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보(징수유예, 보세)하는 경우도 있음
- 이는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임

□ 통관환경 평가에서는 관세율의 수준과 구조, 적용실적 등으로 평가대상국의 관세장벽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자간협정 또는 양자간협정에 의해 우리나라에 양허된 관세율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될 수 있음

□ 이 평가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함

- ① 수입/수출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율의 수준
- ② 관세의 부과대상, 부과구조, 부과방법의 적정성
- ③ 감면세율 및 관세환급률 수준
- ④ 관세의 징수유예 및 보세 허용 정도

24)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reamble 참조

25)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II:1(b)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Agreement on Safeguard 등을 참조

### 마.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 비관세장벽이란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가대상국 정부기관 또는 통관 관련기관·단체의 조치로 관세를 제외한 기타의 규제적 조치를 의미함
  - 이에는 수출입제한과 같이 무역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있고, 수출입은 허용하되 수입과징금이나 부과금과 같이 관세 이외에 수입물품에 대해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도 있음
  - 그 외 복잡한 절차의 이행요구나 처리의 지연 등에 의한 상거래 기회의 상실 또는 금전적 비용부담의 증가 등을 초래하는 일체의 조치들이 포함됨
  
- WTO협정은 이러한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을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sup>26)</sup> 개정교토협약도 ‘세관절차 및 관행에 대한 고도의 간소화와 조화의 달성’이란 통관에 있어서 비관세장벽 완화를 핵심 목표의 하나로 삼음<sup>27)</sup>
  
- 비관세장벽의 특징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또 수시로 그 형태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임
  - 대개의 비관세장벽은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정될 것이지만 정부당국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기술적 낙후나 관리기법의 낙후, 업무수행자의 전문지식 결여 등도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통관과정에서는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 수출입화물의 통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보호 등을 위한 각종 요건의 확인, 수입물품의 검사와 심사, 관세의 부과와 징수 등 수많은 절차의 이행이 법령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가 비관세장벽화 될 수 있음
  
- 따라서 통관환경 평가에서는 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어떤 처분 또는 행위가 비관세

26)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reamble 참조

27)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Preamble 참조

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측면을 살펴서 판단해야 할 것임

- 그러한 처분 또는 행위를 평가대상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 그것이 통관적법성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
- 그러한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해 실제로 물품의 수출입이 제한을 받거나 관세 이외 추가적인 비용, 또는 통관시간의 지체 등이 발생하는지 여부

□ 이 평가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함

- ① 일반적으로 통관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및 행위 정도
- ②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 ③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통관시간의 지체 정도

#### 바. 효율성과 효과성(Efficiency and Effectiveness)

□ 통관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어느 국가의 통관에서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두 가지 주요 과제, 즉, 통관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불법물품의 철저한 차단이 동시에, 그리고 조화롭게 달성되는 것을 의미함<sup>28)</sup>

- 통관절차는 교토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sup>29)</sup> 그 절차 및 관행에 대한 고도의 간소화와 통관당국에 의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통제방법에 의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역원활화에 필요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국제평화를 해치는 전략물자 등 불법적인 물품은 WTO협정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조약<sup>30)</sup>에서 국제거래 대상에서 배제하도

28) 정재완, 「국경절차에 대한 가치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3호, 2005. 8, pp. 1~22 참조

29)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Preamble and Appendix 1 Preamble 참조

30)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eambl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Preamble, The Wassenaar Arrangement 등을 참조. 바세나르협정 가입국은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ulgaria, Canada, Croatia,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Japan,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은 통관단계에서 수출 또는 수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세관조직이 마련되어야 하고, 담당 업무에 정통한 훈련된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시스템의 전산화와 고도화한 위험 관리기법의 적용 등이 종합적으로 필요함<sup>31)</sup>

□ 통관환경 평가에서는 평가대상국의 일반적인 통관환경으로서 통관조직의 적정성과 담당인원의 전문성, 통관시스템 전산화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구체적인 통관행정 집행 상황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임

□ 이 평가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함

- ① 통관절차에 있어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② 통관절차 및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③ 통관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 ④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⑤ 수입·수출·반송·환적물량과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 수, 여행자입출국 수, 징수실적 및 통관관련 조직과 인원의 적정성
- ⑥ 통관관련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⑦ 통관관련 업무량과 담당조직과 인원의 적정성 및 전문성 정도
- ⑧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 정도
- ⑨ 다른 국가 통관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정도
- ⑩ 통관 단위업무 및 전체 통관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 ⑪ 불법물품의 적발실적
- ⑫ 평가대상국에서 수출한 불법물품이 외국세관에서 적발된 실적

---

Romania, Russian Federation,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krain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등 40여개국

31)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Chapter 3, 3.1 참조

### 사. 반부패(anti-corruption)

- 통관에 있어서 부패는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이해관계자가 법령과 규칙을 적용하는 정부공무원 등에게 편의의 제공, 금전적 부담의 경감, 불법의 묵인 등을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기타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부패는 통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게 되며 불법물품의 통관을 묵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제무역질서 및 국제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OECD회원국 등 34개국은 이미 1977년 12월에 ‘국제상거래에 있어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부패방지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sup>32)</sup>
  - UN도 1996년 12월 ‘반부패(反腐敗) 행동에 관한 결의(Resolution on Action Against Corruption)’ 및 ‘국제상거래의 부패와 뇌물에 관한 선언’을 거쳐 2003년 10월 ‘UN 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채택되어 2005년 12월 정식 발효함<sup>33)</sup>
  - 그 외 APEC 등 경제협력체에서도 반부패 문제는 지속적인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통관환경 평가에서는 평가대상국의 정부공무원 등에 의해 통관단계에서 행해지는 각종 부패행위에 대해 그 사례가 조사되고 평가될 수 있으며, 이 평가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함
  - ①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32) OECD는 1996년 4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손금산입(損金算入)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Tax Deductibility of Bribes to Foreign Public Officials)’를, 1997년 5월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개정권고(Revised Recommendation on Combating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를, 1998년 4월에는 ‘공공서비스 윤리 강령의 향상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Improving Ethical Conduct in the Public Service)’를 각각 채택하였고, 1997년 11월 채택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협약(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은 1999년 2월 발효됨

33) UN의 이 조약은 2010년 9월 현재 163개국에서 발효중.

<http://treaties.un.org/doc/source/events/2010/Ppublication/publication-English.pdf> 참조

- ②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 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아. 권익보호(Protection of Rights)

- 권익보호는 관세 또는 비관세적 부담이나 기타 통관절차 이행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적정하게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WTO협정에는 무역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관세의 부과나 기타 절차에 있어 적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sup>34)</sup>, 세관당국이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절차도 명시하고 있음<sup>35)</sup>
  - 개정교토협약에서도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당사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사법적 재심절차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음<sup>36)</sup>
-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실한 권익보호 장치의 마련과 보호조치는 통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대우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거나 사후적으로 시정할 수 있게 하여 무역원활화에 기여함
  - 따라서 통관에 있어서 어떤 규제를 신설하거나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해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시정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함

34)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 article 6.13과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1994 article 10 등을 참조

35)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article 5, Agreement on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rticle 6,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rticle 2, Agreement on Safeguards article 3 등을 참조

36)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Preamble and Appendix 1 Preamble 및 General Annex Chapter 10 참조

- 통관환경 평가에서는 평가대상국이 일반적인 통관환경으로서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절하게 마련하고 있는지와, 구체적인 통관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파악하여 반영할 수 있음
- 이 평가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함
  - ① 규제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 ② 통관관련 권익 침해에 대한 행정 또는 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자. 서비스(Service)

- 통관에서의 서비스란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이해관계자가 당해 통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각종 시설, 시스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의미함
  - 개정교토협약은 수출입물품뿐 아니라 우편물과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통관에 있어 각종 세관편의의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sup>37)</sup>
  - 서비스의 품질은 무역원활화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물품과 사람의 통관이 결합된 여행자휴대품 통관의 경우 적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여행자의 만족도 향상은 통관당국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임
- 통관환경 평가에서는 실제 통관을 경험한 자들을 상대로 평가대상국이 제공한 통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 평가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함
  - ① 당해 통관절차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② 통관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sup>38)</sup>

37)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J. Chapter 1 참조

38)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Principle 15 참조

### 차. 통관환경 개선 노력

- 통관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평가대상국의 통관당국이 통관절차와 관행의 원활화, 간소화, 국제규범에의 일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등을 위해 경주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함
  - 개정교토협약은 국제무역 기타 국제적 교환을 저해할 수 있는 체약당사국들의 통관절차와 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음<sup>39)</sup>
  - 이와 같은 개선 노력은 평가대상국의 미래 통관환경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당국이 현행 통관의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적 연구와 검토 및 실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관에 관여된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국과의 적정한 협의 등이 있어야 함<sup>40)</sup>
  - 통관환경 평가에서는 이에 대해 다룰 수 있음
  
- 이 평가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함
  - ① 통관당국의 통관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 ② 통관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의 협의의 적극성
  
- 이상의 10개 평가요소와 각 평가요소별로 제시된 38개의 평가지표를 정리하면 <표 III-1>과 같음

39)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Appendix 1 Preamble 참조

40)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Chapter 1 참조

〈표 Ⅲ-1〉 평가요소와 가능한 평가지표

평가요소	가능한 평가지표
1. 투명성	1-①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1-②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1-③ 통관과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1-④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1-⑤ 국제협약 가입상황
2. 공정성	2-①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2-② 수입물품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3. 적법성	3-① 통관과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3-② 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4. 관세장벽	4-① 수입/수출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율의 수준 4-② 관세의 부과대상, 부과구조, 부과방법의 적정성 4-③ 감면세율 및 관세환급률 수준 4-④ 관세의 징수유예 및 보세 허용 정도
5. 비관세장벽	5-① 일반적으로 통관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및 행위 정도 5-②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5-③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통관시간의 지체 정도
6. 효율성과 효과성	6-① 통관절차의 합리성과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6-② 통관절차 및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6-③ 통관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6-④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6-⑤ 통관관련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6-⑥ 통관관련 업무량과 담당조직, 담당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6-⑦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6-⑧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6-⑨ 통관 단위업무 및 전체 통관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6-⑩ 불법물품의 적발실적 6-⑪ 평가대상국에서 수출한 불법물품이 외국세관에서 적발된 실적
7. 반부패	7-①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7-②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8. 권익보호	8-①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8-② 통관관련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9. 서비스	9-① 당해 통관절차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9-② 통관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10. 통관환경 개선노력	10-① 세관당국의 통관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10-② 통관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10개 요소	38개 지표

### 3. 평가대상인 통관환경과 평가지표

#### 가. 평가대상인 통관환경

- 통관환경의 평가는 평가대상국의 통관 기초환경 부분과 구체적인 통관 단위업무 집행환경으로 구분하여 행해져야 할 것임
- 통관 기초환경 부분은 평가대상국이 갖추고 있는 통관의 기본적인 인프라 및 시스템 과 이의 일반적인 관리와 관계되는 부분임
  - 이 부분은 통관절차 집행의 기본적 토대를 제공하며, 통관환경의 제약조건이 되는 것으로 평가대상국마다 차이를 보이게 됨
- 구체적인 통관 단위업무의 집행환경은 수입통관과 수출(반송)통관, 환적 및 여행자 휴대품의 통관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 통관현장의 집행과정임
  - 대부분 국가에서 통관절차는 WTO 및 WCO의 규범에 따라 진행되므로 그 흐름과 업무의 내용은 유사성을 보이게 됨
- 그러나 평가대상국마다 갖추어진 통관 인프라와 운영하고 있는 통관시스템의 현대화에 차이가 있고, 통관을 규율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전문성)과 태도에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므로 통관절차의 집행은 나라마다 상이하게 됨
  - 평가대상 통관환경은 <표 Ⅲ-2>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표 Ⅲ-2〉 평가대상 통관환경과 통관 단위업무

구 분	평가대상 통관 기초환경 또는 통관 단위업무
통관 기초환경	1. 관련법령·규칙 등과 이에 대한 관리
	2. 전산/정보화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3. 이해관계자/이해관계국과의 협력시스템
	4. 국제협약 가입상황
	5. 우리나라와의 협정체결 상황
	6. 수입·수출·반송·환적물량, 외국무역선(기)입출항 수, 징수실적
	7. 통관 담당조직과 인원
통관 단위업무 집행 환경	1.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절차
	2. 화물의 하역과 보관
	3. 보세제도
	4. 보세화물에 대한 관리
	5. 수입신고의 요건
	6.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7. 관세율
	8. 수입통관절차
	9. 납세제도
	10. 수입신고사항의 심사제도
	11. 위법에 대한 조사와 처분
	12.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13. 반송통관 및 환적절차
	14. 휴대품통관절차
	15.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의 통관절차

자료: 연구자가 작성

## 나. 통관 기초환경에 대한 평가지표

### 1) 통관 기초환경의 개요

- 〈표 Ⅲ-2〉에서 제시한 통관 기초환경은 일반적으로 통관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일선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총괄기관에서 정책적으로 구축하는 성격의 것임
- 이는 정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와 예산 등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됨

- 통관 기초환경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국이 적용하고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일정한 평가시점의 협약이나 협정체결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임

## 2) 통관 기초환경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의 규제내용과 공개제도의 적정성
- 2-①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 적용의 명시 정도
- 2-② 수입물품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 적용의 명시 정도
- 3-① 평가대상국의 통관관련 각종 국제협약 가입 및 우리나라와의 협정체결 내용과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이들 협약(협정)의 일치 정도
- 4-①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율의 수준
- 4-② 관세의 부과대상 및 부과구조의 적정성
- 4-③ 감면대상과 감면세율 및 관세환급대상과 환급률 수준
- 4-④ 관세의 징수유예 및 보세제도의 적정성
- 5-① 일반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및 행위 정도
- 6-① 통관절차의 합리성과 통관절차에 있어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② 통관절차 및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6-③ 통관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 6-④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⑤ 수입·수출·반송·환적물량 및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과 여행자의 입출국 수, 징수실적 등과 통관관련 조직의 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6-⑥ 통관관련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6-⑦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의 제도화 정도
- 6-⑧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정도
- 6-⑨ 총체적으로 통관 단위업무 및 전체 통관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 6-⑩ 수출입통관과정에서의 불법물품의 적발률
- 6-⑪ 평가대상국에서 수출한 불법물품이 외국세관에서 적발된 실적

-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8-① 통관과 관련한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의 제도화 정도
- 8-② 통관관련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제도 운영의 적정성
-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통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성
- 9-② 통관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구축 정도
- 10-① 관세당국의 통관 문제점 파악을 위한 제도운영의 적정성
- 10-② 통관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제도 운영의 적정성

#### 다. 통관 단위업무와 각 단위업무에서 적용될 평가지표

- 통관 단위업무 집행환경은 평가대상국이 공포한 동일한 법령·규칙을 적용하고 동일한 인프라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통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
- 따라서 구체적인 통관 단위업무 집행환경의 평가는 실제 통관업무를 수행한 무역업체나 물류업체 등 당사자들의 경험을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음
  -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과 각 단위업무에서 평가될 수 있는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음

##### 1)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 절차

######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외국무역선(기)이 특정국에 입항하고자 할 때는 개항입항을 원칙으로 하며, 불개항에 대한 입항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임

- 개항은 무역량을 감안하여 각국이 정할 것이나, 물동량이 많음에도 적정하게 개항을 지정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운송수단을 포함한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모든 물품은 관세 및 제세의 부과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세관통제를 받아야 함<sup>41)</sup>
- 외국무역선(기)이 입항할 때는 선사(항공사)나 선(기)장은 입항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이 의사표시는 신고일 수도 있고, 허가절차를 요할 수도 있음
  -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하나 또는 여러 곳일 수 있음
- 신고를 할 때는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며, 이러한 서류는 ① 입항신고서, ② 적하목록, ③ 선(기)용품목록, ④ 여객 및 승무원 명부, ⑤ 휴대품목록, ⑥ 출항증명서 등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서류 중 일부는 당해 외국무역선(기)이 입항하기 전에 제출될 것이 요구될 수도 있음
- 신고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적인 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고, 종이서류로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음
  - 신고인은 선(기)장과 같이 특정될 수도 있고, 대리점 등의 대리행위를 허용할 수도 있음
- 입항신고를 받은 세관은 통상 위험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외국무역선(기)에 대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음
  - 이 검색은 불법적인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됨. 검색대상이 될 외국무역선(기)의 비율과 검색 소요시간 등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남

41)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Chapter 6, Specific Annex J. 참조

- 개정교토협약은 세관당국과 다른 관세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조화의 중요성과 세관통제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기술의 적극적 사용을 권장하나<sup>42)</sup> 이와 같은 환경의 구축수준은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음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입출항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 1-② 입출항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입출항과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2-① 입출항외국무역선(기)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2-② 입출항외국무역선(기)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3-①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과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3-② 외국무역선(기) 입출항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5-① 일반적으로 외국무역선(기) 입출항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 정도
- 5-②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선(항공사)의 수출입제한의 정도
- 5-③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 6-① 입출항절차의 합리성과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② 입출항절차 및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6-③ 입출항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 6-④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⑤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 수와 입출항절차 관련조직과 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6-⑥ 입출항관련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6-⑦ 선(항공)사, 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42)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Chapter 7 참조

- 6-⑧ 입출항업무와 관련한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⑨ 입출항 단위업무 및 전체 입출항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 7-① 선(항공)사 또는 그 직원이 입출항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선(항공)사 또는 그 직원이 입출항 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8-① 입출항절차 관련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정도
- 8-② 입출항 관련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8-③ 입출항절차와 관련하여 행해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당해 입출항절차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9-② 입출항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10-① 세관당국의 입출항과 관련된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 10-② 입출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의 협의의 적극성

## 2) 화물의 하역과 보관

###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수출입화물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거나 양하하는 작업(荷役)은 기본적으로 당해 외국무역선(기)에 입항한 공항 또는 항구의 관습에 영향을 받음. 즉, 주말 또는 공휴일과 같은 특정한 날이나 기후 등을 고려하여 하역작업이 허용될 수 있는 날과, 하역이 허용되는 날일지라도 하루 중 하역이 가능한 시간 등은 전적으로 당해 항구 또는 공항의 사정에 따르게 됨
  - 그러나 일국 내의 항구 또는 공항에서 적용되는 관습은 유사하기 마련임
- 공항 또는 항구의 하역작업 관습은 일반적으로 통관 당국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통관환경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며, 환경평가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함
- 외국무역선(기)에 대한 하역작업은 대개 세관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불법

적인 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공무원들이 하역작업에 입회하여 물품을 검사할 수 있음

○ 따라서 이와 같은 검사로 인해 하역이 지체될 수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하역대상인 수입물품은 하역 직후, 수출물품은 하역 직전 보세구역과 같은 특정한 장소에 일시적인 장치가 의무화될 수 있음

○ 일시장치는 물품의 수량, 원산지국 또는 적출국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물품에 대해 허용되어야 하나<sup>43)</sup> 나라에 따라 차별적 조치가 행해질 수 있음

□ 일시적 장치에서 장치 및 보관과 관련한 각종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결정될 수도 있고, 정부당국의 허가에 의해 강제될 수도 있음

####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하역 및 보관과 관련된 법령·규칙 등의 공개 정도
- 1-② 하역 및 보관과 관련된 법령·규칙 등에 대한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하역 및 보관과 관련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2-① 하역 및 보관과 관련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2-② 하역 및 보관과 관련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3-① 하역 및 보관과 관련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3-② 하역 및 보관과 관련해 행해진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5-① 일반적으로 하역 및 보관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 정도
- 5-② 하역 및 보관과 관련한 선(항공사) 및 화주의 수출입제한 정도
- 5-③ 하역 및 보관과 관련한 외국무역선(기)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43)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Chapter 2 참조

## 지체 정도

- 6-① 하역 및 보관업무의 합리성과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② 하역 및 보관업무 관련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6-③ 하역 및 보관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 6-④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⑤ 수입·수출·반송·환적물량 및 관련 조직과 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6-⑥ 하역 및 보관과 관련한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6-⑦ 선(항공)사, 물류업체, 무역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⑧ 하역 및 보관업무와 관련한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⑨ 하역 및 보관과 관련한 단위업무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 7-① 선(항공)사, 물류업체, 무역업체 또는 그 직원이 하역 및 보관업무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선(항공)사, 물류업체, 무역업체 또는 그 직원이 하역 및 보관업무 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8-① 하역 및 보관과 관련한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정도
- 8-② 하역 및 보관업무와 관련한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8-③ 하역 및 보관업무와 관련하여 행해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하역 및 보관업무를 수행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9-② 하역 및 보관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10-① 세관당국의 하역 및 보관과 관련된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 10-② 하역 및 보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의 협의의 적극성

### 3) 보세제도

####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보세제도는 보세구역과 보세운송제도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보세구역은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없이 세관의 통제하에 수입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장치하거나, 사용, 전시, 판매, 작업 등을 허용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보세운송은 보세상태의 화물을 관세영역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보세운송은 환적과는 별개 개념임
- 나라에 따라서는 보세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sup>44)</sup>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장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보세는 아니지만 수입 통관과정에서 당해 물품을 특정지역에서만 사용·소비할 것을 전제로 면세 처분한 다음 사후관리를 행하는 것으로 유사한 효과를 거두는 지역도 운영 가능
  - 이러한 지역도 보세구역과 같은 관점에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세구역 또는 그 유사구역을 운영하는 주체는 세관, 다른 국가기관, 자연인 또는 법인 등이 될 수 있으며, 동 구역을 관리하는 법령도 관세법 이외의 다른 법령일 수 있음
- 보세제도 또는 그 유사제도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 관세 등 조세의 부담경감 정도, 허용되는 장치물품·전시·판매·사용·작업·운송 등의 범위도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절차가 면제되거나 대폭 생략되는 특징이 있으며, 관세 및 내국세의 부담도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혜택이 주어지므로 통관환경 평가에서 그 제도의 운용 내용이 검토되어야 함

44) 교토협약에서는 자유지역을 ‘반입된 물품이 수입관세 및 제세에 관한한 일반적으로 관세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체약당사국 영토의 일부’라 정의함.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D, Chapter 2 참조

□ 보세제도에는 물품이 세관의 통제하에 한 세관에서 다른 세관관서로 운반되는 세관 절차를 의미하는<sup>45)</sup> 보세운송도 포함됨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보세제도와 관련한 법령·규칙 등의 공개 정도
- 1-② 보세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칙 등에 대한 공개방법의 합리성
- 2-① 보세제도 활용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2-② 보세제도 활용에서의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3-① 보세제도 운용과 관련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5-③ 보세제도 활용에 따른 무역업체의 비용경감 정도
- 6-① 보세제도 운용의 합리성과 보세제도와 관련한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② 보세제도 관련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6-④ 보세와 관련한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⑤ 수입·수출·반송·환적물량 및 보세관련 조직과 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6-⑧ 보세제도와 관련된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정도
- 7-① 무역업체 등이 보세제도 활용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무역업체 등이 보세제도 활용 과정에서 업체가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8-① 보세와 관련한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정도
- 8-③ 보세업무와 관련하여 행해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보세관련 업무를 수행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9-② 보세제도와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10-① 세관당국의 보세제도와 관련된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 10-② 보세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의 협의의 적극성

45)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E, Chapter 1, E4./E7. 참조

#### 4) 보세화물에 대한 관리

#####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보세화물에 대한 관리는 외국무역선(기)에서 하역된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세관당국이 행하는 일련의 통제활동을 의미함
- 보세화물은 보세창고 등 특정한 장소에 장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소에 물품이 반입 또는 반출될 때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요구될 수 있음
  - 특정한 장소에의 장치제한이 물류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장치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검사, 견본채취, 물품의 보존에 필요한 작업, 포장이나 상품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하역, 포장별 구분이나 재포장과 같은 작업을 허용하는 것을 표준으로서 제시하고 있으나<sup>46)</sup> 나라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작업이 제한될 수 있음
  - 이러한 작업의 제한은 무역원활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은 당해 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 물류의 원활화 등 세관당국이 정한 여러 이유로 제한될 수 있으며, 부패 등을 이유로 세관당국에 의해 강제로 폐기될 수 있음
- 개정교토협약은 보세구역에 반입될 수 있는 물품은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보나 수량, 원산지국, 적출국 또는 행선지국 등과는 무관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sup>47)</sup>
  - 또한 개정교토협약은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제약하지 말

46)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D 10 참조

47)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D, Chapter 1,5 참조

것을 표준으로 제시함

□ 걱정하지 못한 강제폐기나 소유권이전의 제약 등은 무역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통관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임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보세화물관리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 1-② 보세화물관리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보세화물관리와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보세화물관리와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2-① 보세화물관리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2-② 보세화물관리에서의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3-① 보세화물관리와 관련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3-② 보세화물관리 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5-③ 일반적으로 보세화물관리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의 발생빈도와 보세화물관리에서 행해지는 제약으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증가 정도
- 6-① 보세화물관리의 합리성과 화물관리에 있어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② 보세화물관리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6-③ 보세화물관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 6-④ 보세화물관리에 있어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⑤ 수입·수출·반송·환적물량 및 화물관리 관련 조직과 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6-⑥ 보세화물관리와 관련한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6-⑦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⑧ 보세화물관리와 관련한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7-① 이해관계자가 보세화물관리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이해관계자가 보세화물관리와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8-① 보세화물관리와 관련한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 8-② 보세화물관리와 관련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보세화물관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9-② 보세화물관리와 관련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10-① 세관당국의 보세화물관리와 관련한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 10-② 보세화물관리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5) 수입신고의 요건

###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수입신고에 있어 요구되는 요건은 특정한 장소에 신고대상인 물품을 장치한 다음, 신고적격자가, 수입통관 과정에서 요구되는 관세 등의 과세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대상국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 즉, 통관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와 같은 자료의 제출은 위험관리를 통한 무역원활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반면<sup>48)</sup>, 무역을 억제하기 위한 비관세조치의 일환이 될 수도 있음
-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제출이 요구되는 시기도 수입신고 전, 수입신고시, 또는 수입통관 이후가 될 수 있음

48)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B, Chapter 1 참조

○ 서류의 제출시기가 분산되고,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가 단순할수록 무역원활화에 도움이 됨

□ 관세 등의 과세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대상국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입수되어야 하는 것들임

○ 즉, ① 수입신고인 자신이 작성하는 서류(수입신고서, 납세신고서 등), ② 수출상이 무역서류로서 송부한 서류(송품장, 원산지증명서 등), ③ 수입국의 각종 기관이나 단체가 발행한 서류(검역증, 수입허가서, 할당추천서 등)임

□ 제출을 요구받는 자료 가운데 ①과 ②의 자료보다는 ③에서 요구되는 수입국의 각종 기관이나 단체가 발행한 서류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적정한 시간 이내에, 적정하게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 통관지체 또는 통관불능의 요인으로 작용함

####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수입신고요건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 1-② 수입신고요건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수입신고요건과 관련한 세관당국의 각종 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수입신고요건과 관련한 각종 불이익 결정에 대한 이유의 공개 정도
- 2-① 수입신고요건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2-② 수입신고요건에서의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3-① 수입신고요건과 관련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3-② 수입신고요건과 충족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5-① 통관적법성 확보에 필요한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의 정도
- 5-②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 5-③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 6-① 수입신고요건과 확인과정에 있어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② 수입신고요건 확인과 관련한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6-③ 수입신고요건 확인과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 6-④ 수입요건과 관련한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⑤ 수입물량, 징수실적 등과 통관관련 조직과 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6-⑥ 수입신고요건과 관련한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6-⑦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⑧ 수입신고 요건과 관련한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⑨ 신고요건 단위 확인업무 및 전체 수입신고요건 충족에 소요되는 시간
- 7-① 이해관계자가 수입신고요건 확인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이해관계자가 수입신고요건 확인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8-① 수입신고요건 확인 관련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 8-② 수입신고요건 확인관련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당해 수입신고요건 확인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9-② 수입신고요건 확인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10-① 세관당국의 수입신고요건 확인상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 10-② 수입신고요건 확인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6)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관세평가에 관한 내용은 WTO의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동부속서(1~3)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준수는 협정체약국의 의무사항임

- 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협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sup>49)</sup>
- 관세평가에 관한 규정은 WTO협정에 의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하나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에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WTO협정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내용은 WTO협정이 규정한 바와는 다른 관세평가 관행이 존재할 수 있음
- HS 품목분류 또한 WCO 협약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무역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분류에서는 나라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에서 관세 및 내국세액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세관당국과 납세의무자 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운영의 적정성이 높이 요구되는 영역임

####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 1-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세관당국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한 각종 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한 세관의 각종 불이익 결정에 대한 이유의 공개 정도
- 2-①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2-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서의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3-①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3-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5-①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있어 필요한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또는 행

49) WTO,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article 20 및 Annex III 참조

위 정도

- 5-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 5-③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 6-①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의 합리성과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한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6-③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 6-④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한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관련 조직과 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6-⑥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한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6-⑦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한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⑧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한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⑨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에 소요되는 시간
- 7-①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8-①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관련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 8-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관련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8-③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10-① 세관당국의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상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10-②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7) 관세율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는 당해물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수입 또는 수출의 장벽으로 기능하게 됨
  - 따라서 통관환경 평가에서는 평가대상국이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율, 형식적 관세율과 실효관세율, 관세부과의 구조, 부과 절차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고 평가되어야 함
  
- WTO는 회원국들이 운용하는 관세의 인하 내지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고, 모든 회원국들은 다자간협상 결과에 따라 양허표를 제출하여 협약의 일부로 하고 있으나 WTO협정 테두리 내에서 각국은 다양한 종류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관세율도 나라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차이가 큼
  
- 또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양허한 바가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적용 여건과 상황 또한 평가대상이 될 수 있음
  
- 한편, 관세율은 감면세제도와 환급제도<sup>50)</sup>에 의해 그 실효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관세율과 함께 평가대상국이 운용하고 있는 감면세 및 환급제도가 함께 조사되어야 함
  - 만일 징수유예제도가 운용될 경우 납세와는 별개로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발생시

50)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F, Chapter 3 참조

킨다는 점에서 역시 검토 대상이 됨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관세율, 감면세, 관세환급제도 관련 법령·규칙의 공개 정도
- 1-② 관세율, 감면세, 관세환급제도 관련 법령·규칙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 등에서 이루어지는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불이익한 관세율적용과, 감면세, 관세환급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2-①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 등에서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2-②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 등에서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3-①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 등에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3-②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 등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4-① 수입/수출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율의 수준
- 4-② 관세의 부과대상, 부과구조, 부과방법의 적정성
- 4-③ 감면세율 및 관세환급률 수준
- 4-④ 관세의 징수유예 내용
- 6-①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제도의 합리성과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⑦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 등에서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⑧ 관세율적용에서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7-① 이해관계자가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이해관계자가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 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8-② 관세율적용과 관련한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8-③ 관세율적용과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당해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9-②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10-① 세관당국의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 10-② 관세율적용, 감면세, 관세환급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8) 수입통관절차

###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신고에서 그 신고의 수리(또는 허가나 면허)까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 이 과정에는 신고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와 심사, 납세절차가 포함되며 신고사항의 보안을 위한 절차나 신고물품에 대한 일정한 보수작업 강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이 절차는 전산화와 정보화, 표준화의 정도, 위험관리기법의 채용 정도 등<sup>51)</sup>에 많은 영향을 받음
- 수입통관절차의 이행은 일반적으로 그 목적을 물품에 대한 과세와 통관적법성의 확보에 두지만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비관세장벽 설정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
  - 또한 비관세장벽화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통관시스템의 열악함, 통관을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해 비관세장벽화할 수 있음
-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자, 수입물품의 성상, 수입물품의 용도, 수입물품의 운송형태,

51)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B 및 Kyoto Convention Specific Annex B Guidelines Clearance for Home Use 참조

당해 물품의 수출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절차의 차등적 적용은 통관의 신속과 통관적법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로 합리적일 수도 있고, 다른 의도에 의한 차별로 합리적이지 못할 수도 있음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수입통관절차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 1-② 수입통관절차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수입통관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수입통관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2-① 수입통관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2-② 수입통관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3-① 수입통관절차와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3-② 수입통관절차의 합리성과 수입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 위반 정도
- 5-①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절차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의 정도
- 5-② 수입통관절차에서의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 5-③ 수입통관절차에서의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 6-① 수입통관절차의 합리성과 수입통관절차에 있어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② 수입통관절차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6-③ 수입통관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 6-④ 수입통관절차에서의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⑤ 수입물량, 징수실적 등과 수입통관 관련 조직과 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6-⑥ 수입통관 관련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6-⑦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 6-⑧ 수입통관절차와 관련한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 6-⑨ 수입통관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 6-⑩ 불법물품의 적발실적
- 7-① 이해관계자가 수입통관절차 이행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이해관계자가 수입통관절차 이행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8-① 수입통관절차 관련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 8-② 수입통관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9-② 수입통관절차 이행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10-① 세관당국의 수입통관절차와 관련한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 10-② 수입통관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9) 납세제도

###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납세제도는 세관당국의 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하는 부과고지 방식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신고 납부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
  - 그러나 납세에서 중요한 것은 납세의무자, 납세기간, 납세방법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임<sup>52)</sup>
  - 또한 납기 내에 납부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의 적용될 수 있는 이자율과 그러한 이

52)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Chapter 4 참조

자가 적용되는 조건,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증표의 발행, 과오납한 관세의 환급, 징수유예와 담보제도의 운영 등도 납세제도에서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

□ 납세제도는 통관 소요시간 및 납세와 관련한 비용의 발생, 비관세장벽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적정한 납세제도의 운용은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게 됨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관세납세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 1-② 관세납세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관세납세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하게 행해지는 처분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관세납세에서 이루어지는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2-① 관세납세에서 이루어지는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2-② 관세납세에서 이루어지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3-① 관세납세와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3-② 관세납세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5-① 관세납세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 정도
- 5-② 관세납세에서의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 5-③ 관세납세에서의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 6-① 관세납세제도의 합리성과 수입통관절차에 있어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② 관세납세절차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6-③ 관세납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 6-④ 관세납세에서의 위협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⑤ 관세납세 관련 조직과 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6-⑥ 관세납세 절차에서의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6-⑦ 관세납세와 관련한 무역업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 6-⑧ 관세납세와 관련한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 6-⑨ 관세납세에 소요되는 시간
- 7-① 관세납세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이해관계자가 관세납세 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8-① 관세납세 관련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 8-② 관세납세절차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관세납세를 이행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9-② 관세납세와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10-① 세관당국의 관세납세와 관련한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 10-② 관세납세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10) 수입신고사항의 심사제도

###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수입신고사항에 대한 심사제도는 수입통관절차 이전(사전심사)이나 수입통관절차에 포함되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통관이 종료된 다음 사후심사라는 별도의 절차로서 이루어지게 됨<sup>53)</sup>
- 심사의 내용은 관세율의 적용뿐 아니라 감면세와 관세환급,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가 될 수 있으며,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53)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General Annex Chapter 6 참조

협정관세를 적용한 경우의 원산지검증도 심사에 포함됨

- 심사는 심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나 세관 직원의 무역업체 방문조사 등으로 인한 부담발생 외에 심사 결과 부족납세액의 발생 등이 있을 때 해당세액의 징수 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 부여 여부나 부여 정도 등도 무역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평가대상이 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심사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 1-② 심사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심사와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심사 결과 행해지는 불이익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3-① 심사와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3-② 심사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5-① 일반적으로 심사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및 행위 정도
- 5-② 심사관련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 5-③ 심사관련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 6-① 심사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심사제도 운영에 있어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④ 위험관리 등 현대적 심사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⑤ 수입물량, 징수실적 등과 심사관련 조직과 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6-⑦ 심사업무와 관련한 무역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⑧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7-① 이해관계자가 심사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이해관계자가 심사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8-① 심사관련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8-② 심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9-① 심사를 받은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10-① 세관당국의 심사와 관련한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10-② 심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11) 위법에 대한 조사와 처분

###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수입 및 수출, 반송, 환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의 주체는 세관당국일 수도 있고, 사법당국일 수도 있으며, 양자가 모두 관여하거나 제3자가 할 수도 있음

□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행하는 처분은 일반적으로 당해 범칙물품 및 운송수단의 몰수, 벌금과 같은 금전적 부담, 징역과 같은 인신(人身)의 구속, 그리고 수출입의 제한과 같은 각종 행정제재 등이며<sup>54)</sup> 이들은 각각 행해질 수도 있고 병과(併科)될 수도 있음

○ 평가대상국의 국내법령은 관세법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입증, 그리고 행정처분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것이나<sup>55)</sup>, 조사처분제도의 합리성과 제도 운용의 적정성 여부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게 됨

54)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H 참조

55)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H, Chapter 1 참조

- 관세법과 관련한 조사대상의 설정과 조사절차, 위법 여부의 판단기준, 위법판단에 따른 처분의 정도 등은 모두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 또한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또는 조사대상 무역업체)의 권익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관련규정의 투명성과 법과 제도운영의 합리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적절한 권리보호 조치가 있어야 함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조사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 1-② 조사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조사와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조사 결과 행해지는 불이익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3-① 조사와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3-② 조사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5-② 조사관련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 5-③ 조사와 관련한 비관세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증가 정도
- 6-① 조사처분제도의 합리성과 조사처분에 있어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④ 위협관리, 통제배달 등 현대적 조사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⑧ 관세법의 조사와 관련된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 7-① 이해관계자가 조사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이해관계자가 조사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8-① 관련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 8-②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조사를 받은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10-① 세관당국의 조사와 관련한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10-② 조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12) 수출물품의 통관 절차

###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수출통관절차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수입의 경우에 비해 간소하게 이루어짐
  - 그러나 수출관세를 부과하거나 자원의 보호, 전략물자의 통제, 물류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수출을 제한하거나 엄격한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sup>56)</sup>
- 평가대상국의 수출통관 환경은 해당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수입업체에도 관심사항이 될 수 있으나, 보다 많은 관심은 현지에 직접 투자하여 생산하거나 위탁 가공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있을 것임
- 수출통관에서도 수입과 유사하게 요건의 구비와 수출신고에 대한 세관당국의 검사와 심사,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 등이 따르게 되며 수출통관이 종료된 물품이 외국무역선(기)에 적재되어 출항하기까지의 화물관리 문제가 대두됨
  - 이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업무 내용은 수입의 경우와 유사함

###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수출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 1-② 수출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수출통관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수출통관 과정에서 행해지는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56) 개정교토협약은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당국이 물품의 외국도착 증거를 당연한 것으로 요구할 수도 있음.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C, Chapter 3 참조

- 3-① 수출통관과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3-② 수출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4-① 수출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율의 수준
- 4-② 수출관세의 부과대상 및 부과구조의 적정성
- 5-①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 정도
- 5-② 수출과 관련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 5-③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 6-① 수출통관절차의 합리성과 수출통관 절차에 대한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② 수출통관절차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6-③ 수출통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 6-④ 수출물품에 대한 위험관리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⑤ 수출물량 및 수출통관 관련 조직과 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6-⑥ 수출통관과 관련한 다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6-⑦ 수출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⑧ 수출통관과 관련한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⑨ 수출통관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 6-⑩ 불법물품의 적발실적
- 6-⑪ 평가대상국에서 수출한 불법물품이 외국세관에서 적발된 실적
- 7-① 이해관계자가 수출통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이해관계자가 수출통관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8-① 수출통관 관련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 8-② 수출통관 관련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당해 수출통관절차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9-② 수출통관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10-① 세관당국의 수출통관 관련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 10-② 수출통관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13) 반송통관 및 환적 절차

####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반송은 평가대상국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의미함
  - 반송의 사유는 보세상태로 제조·가공 또는 임가공 후 반출, 주문취소나 무역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매수인의 인수거절, 통관보류에 따른 수출국으로의 회송, 중계 무역물품의 경미한 가공 후 반출 등 여러 가지가 있음
- 반송은 당초 평가대상국으로 수입하려 하였거나, 보세상태로 필요한 작업을 마친 다음 반출될 것을 전제로 하였던 물품이라는 점에서 평가대상국을 단순히 경유하는 환적<sup>57)</sup>과 차이가 있는 것임
- 반송은 통관보류물품과 같이 통관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수입자의 의도대로 통관되지 못하고 반출되는 경우 불법적인 유출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동 물품에 대해 세관의 엄격한 관리 내지 제한이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해당물품의 수출자와 수입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반송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통관환경임

57) 환적은 수출입 모두를 취급하는 한 세관관서의 관할지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수입운송수단에서 수출운송수단으로 물품이 이전되는 세관절차를 의미.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E, Chapter 2, E1./F1. 참조

- 환적은 평가대상국의 하나의 세관관서 또는 둘 이상의 세관관서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수입운송수단에서 수출운송수단으로 이전되는 세관절차를 의미함
  - 환적이 허가된 물품은 관세당국이 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한 관세 및 제세의 납부 대상이 아니며, 단지 물품의 원산지국이나 적출국 또는 행선지국을 이유로 거절될 수 없는 성격이 있음<sup>58)</sup>
  - 평가대상국에서 환적되는 물품이 불법물품일 경우 평가대상국 세관당국이 당해 물품의 압류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반송통관 및 환적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 1-② 반송통관 및 환적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반송통관 및 환적과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2-① 반송 및 환적물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2-② 반송 및 환적물품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3-① 반송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3-② 반송통관 및 환적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5-① 일반적으로 반송통관 및 환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 정도
- 5-② 반송통관 및 환적과 관련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 5-③ 반송통관 및 환적과 관련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 6-① 반송통관 및 환적절차의 합리성과 그 절차에 있어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② 반송통관 및 환적절차 관련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6-③ 반송통관 및 환적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58)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E Chapter 2 참조

- 6-④ 반송통관 및 환적과 관련한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⑤ 반송·환적물량 및 반송·환적 관련 조직과 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6-⑥ 반송통관 및 환적관련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6-⑦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⑧ 반송통관 및 환적과 관련한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⑨ 반송통관 및 환적 단위업무 및 전체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 6-⑩ 반송통관 및 환적과정에서의 불법물품 적발실적
- 7-① 이해관계자가 반송통관 및 환적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이해관계자가 반송통관 및 환적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8-① 반송통관 및 환적과 관련한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정도
- 8-② 반송통관 및 환적과 관련한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당해 반송통관 및 환적절차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9-② 반송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10-① 세관당국의 반송통관 및 환적과 관련한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 10-② 반송통관 및 환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14) 휴대품통관절차

#####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평가대상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목적은 단순한 관광에서 무역거래를 위한 상담 등 매우 다양할 수 있음

- 어느 경우나 여행자는 여러 형태의 물품을 소지하기 마련이므로 입국시 또는 입국과 출국시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가 필요하게 됨
- 여행자휴대품은 여행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여행 동안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품을 의미하며, 상업적 목적을 위해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것을 제외하는 개념임<sup>59)</sup>
  - 여행자휴대품 또는 여행자가 소지한 일시적 수입물품은 면세로 통관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술, 담배, 향수 등 특정물품에 대한 면세범위의 설정과 상업적 목적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와 통관절차 적용은 별개 문제임
- 여행자휴대품 또는 여행자가 소지한 일시수입물품의 통관은 여행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납세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절차가 입국현장에서 용이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야 함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여행자휴대품 및 여행자가 반입한 상업적 물품의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 1-② 여행자휴대품 및 여행자가 반입한 상업적 물품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여행자휴대품 및 여행자가 반입한 상업적 물품 통관과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2-①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2-②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3-① 여행자휴대품 통관과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59)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J, Chapter 1, E4./F3. 참조

- 3-② 여행자휴대품 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4-① 여행자휴대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율의 수준
- 4-③ 여행자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범위
- 5-① 일반적으로 여행자휴대품 및 여행자가 반입한 상업적 물품 통관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 정도
- 5-② 여행자휴대품 및 여행자가 반입한 상업적 물품 통관에 적용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 5-③ 여행자휴대품 및 여행자가 반입한 상업적 물품에 적용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 6-①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의 합리성과 통관절차에 있어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②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 및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6-③ 여행자휴대품 통관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 6-④ 여행자휴대품 통관에 있어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⑤ 여행자의 입출국 수와 여행자휴대품 통관관련 조직과 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6-⑥ 여행자휴대품 통관관련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6-⑧ 여행자휴대품 통관과 관련한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⑨ 여행자휴대품 통관 단위업무 및 전체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 6-⑩ 여행자휴대품 통관에서의 불법물품 적발실적
- 7-① 여행자가 여행자휴대품 및 여행자가 반입한 상업적 물품 통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여행자가 여행자휴대품 및 여행자가 반입한 상업적 물품 통관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8-① 여행자휴대품 및 여행자가 반입한 상업적 물품 통관과 관련한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 8-② 여행자휴대품 및 여행자가 반입한 상업적 물품 통관과 관련한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당해 여행자휴대품 및 여행자가 반입한 상업적 물품의 통관절차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9-② 여행자휴대품 통관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10-① 세관당국의 여행자휴대품 및 여행자가 반입한 상업적 물품 통관상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 10-② 여행자휴대품 및 여행자가 반입한 상업적 물품 통관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15)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의 통관절차

##### 가) 단위업무의 주요 내용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증가,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의 확대에 따라 소규모 물품이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로서 국제간을 이동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소규모 샘플의 신속한 이동이 경영활동상 중요한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에 우편과 특송의 의미도 증대되고 있음
-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은 소액일 뿐 아니라 소규모인 물품이 일반적이고, 그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신속한 배송을 생명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음
  - 개정교토협약도 우편물의 통관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표준으로 규정함<sup>60)</sup>

60)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J, Chapter 2 참조

□ 우편물 및 특송화물의 통관절차는 일반적인 무역상품의 그것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면세대상이나 과세절차도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

#### 나) 이 단위 통관업무 평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1-①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 1-②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과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에서의 불이익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2-①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에서의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2-②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에서의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3-①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과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3-②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4-①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에 부과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율의 수준
- 4-③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에 적용되는 면세범위
- 5-①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 정도
- 5-②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에 적용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 5-③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에 적용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 6-①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절차의 합리성과 통관절차에 있어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6-②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절차 및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6-③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 6-④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에 있어 위협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6-⑤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관련 조직과 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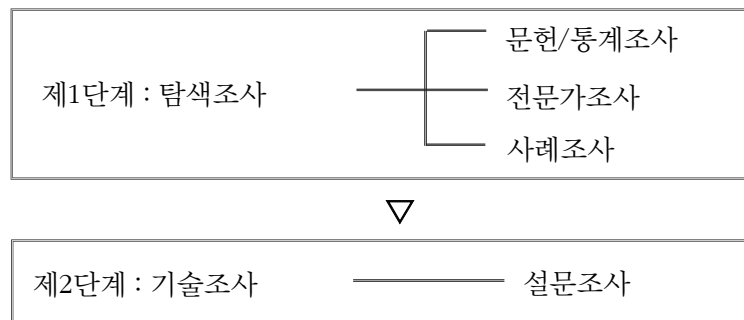
- 6-⑥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관련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6-⑧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과 관련한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활용 정도
- 6-⑨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 단위업무 및 전체 통관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 6-⑩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에서의 불법물품 적발실적
- 6-⑪ 평가대상국에서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로 수출한 불법물품이 외국세관에서 적발된 실적
- 7-①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7-②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8-①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과 관련한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 8-②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과 관련한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9-①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의 통관절차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9-②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10-① 세관당국의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상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 10-②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 통관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4. 통관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

##### 가. 통관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의 개요

- 특정국의 통관환경에 대한 평가는 그 목적이 평가대상국과의 합리적인 교역관계 설정과, 교역상대국에 직접 투자하여 생산·판매·수출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당해국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보호에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것임
  - 즉, 동 자료를 평가대상국에 제시하여 통관상 문제가 있는 법령과 관행을 시정시키고,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보다 원활하고 발전된 통관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교역과 관련된 물품의 통관상 장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통관환경에 대한 평가는 제2절에서 개발된 평가요소별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조사방법은 [그림 Ⅲ-1]과 같이 탐색조사와 기술조사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그림 Ⅲ-1] 통관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 나. 문헌/통계조사

- 문헌/통계조사는 평가대상국의 통관환경과 관련해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기관에

서 발간한 무역환경 관련 자료, 국내의 정부기관<sup>61)</sup>, 정부투자기관<sup>62)</sup>, 또는 종합무역상사 등에서 발간한 무역환경 관련자료, 각종 연구지, 인터넷 공개자료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평가대상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음

- 문헌/통계조사에서 평가대상국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의한 세관협력회의 활용, ② 현지국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주재관 등을 활용, ③ 평가대상국 관세당국에 공문서로 요청, ④ 현지출장에 의한 수집 등임

□ 통관환경 평가를 ‘통관 기초환경에 대한 평가’와 ‘통관 단위업무집행 환경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때 문헌/통계조사는 통관 단위업무 집행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특히 통관 기초환경 평가에 중요함

□ 평가대상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료는 제3절의 <표 Ⅲ-2>에서 정리된 8가지 내용임

- 관련법령·규칙 등과 이에 대한 관리,
- 전산/정보화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 이해관계자/이해관계국과의 협력시스템,
- 국제협약 가입상황,
- 우리나라와의 협정체결 상황,
- 수입·수출·반송·환적물량, 외국무역선(기)입출항 수,
- 징수실적,
- 통관 담당조직과 인원 등임
- 이와 같은 자료는 대개 평가대상국 통관환경의 기초이자 그 한계를 이루는 것으로 통관환경 평가에서 불가결한 것임

61) 예를 들어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2009 분야별 외국의 통상환경’(2010.1.), ‘통상마찰·기업 애로 해소 사례집’(2007.7, 2008.12, 2010.1.) 등

62) 예를 들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간한 ‘ASEAN비관세장벽 현황조사’(2005.1.) 등

- 공식자료의 특징은 대부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그것 자체가 국가간 통상마찰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임
  - 따라서 평가대상국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절한 경로를 통해 평가대상국 관세당국에 요청할 경우 자료의 입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공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로 가운데 바람직한 것은 <표 Ⅲ-3>의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의해 개최되는 관세청장회의(또는 세관협력회의)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임

〈표 Ⅲ-3〉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현황)

체결연도	체결국가	체결연도	체결국가
1986	캐나다, 미국	2000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1988	호주	2001	필리핀
1991	이란	2003	우크라이나
1992	뉴질랜드, 러시아	2004	일본
1993	몽골	2005	멕시코, 칠레
1994	중국	2006	인도
1995	베트남	2007	네덜란드
1996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2009	탄자니아
1997	EU, 홍콩	2010	터키
1999	폴란드, 태국, 우즈베키스탄		

자료: 관세청

- 관세청장회의(또는 세관협력회의)는 <표 Ⅲ-4>와 같이 해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회의의 주목적은 개최당사국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
  
- <표 Ⅲ-4>를 보면 관세청장회의(세관협력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경우와 1회성 회의로 그치고 있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는바, 정례적인 회의 개최가 세관당국 간 협력의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관세청장회의(세관협력회의)를 통해 평가대상국 관세당국과 합의하여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정기적으로 교환하도록 할 경우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가장 충실하고 광범위한 공식자료의 입수가 가능함
- 다만, 관세청장회의는 다수 국가들과 매년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필요한 국가와는 관세청장회의의 합의를 통해 국장급 이하를 단장으로 하는 세관협력실무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제도화하여 여기에서 자료의 교환 등 실무적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Ⅲ-4〉 관세청장회의(세관협력회의) 개최 실적

국 가	최초	최종	총횟수	국 가	최초	최종	총횟수
캐 나 다	1987	2002	7	핀 란 드	2003	2003	1
미 국	1983	2010	13	칠 레	2004	2005	2
호 주	1989	2003	8	페 루	2004	2004	1
이 란	1991	2001	4	멕시코	2004	2004	1
뉴질랜드	1992	2002	8	노르웨이	2004	2004	1
몽 골	1993	2009	4	오스트리아	2004	2004	1
러 시 아	1992	2010	9	헝 가 리	2004	2004	1
중 국	1992	2008	13	도미니카	2006	2006	1
베 트 남	1994	2009	13	아제르바이잔	2006	2006	1
E U	1997	2009	7	키르기즈	2006	2006	1
홍 콩	1980	2009	28	벨라루스	2006	2006	1
폴 란 드	2001	2008	2	타지키스탄	2007	2006	1
태 국	2000	2009	7	싱가포르	2007	2007	1
우즈베키스탄	2000	2003	3	콜롬비아	2007	2007	1
말레이시아	2003	2003	1	과테말라	2007	2007	1
카자흐스탄	2000	2009	5	에콰도르	2007	2007	1
필 리 핀	2006	2006	1	이스라엘	2009	2009	1
일 본	1970	2008	28	인 도	2009	2009	1
대 만	1977	1991	15	캄보디아	2010	2010	1
네덜란드	2003	2003	1	스 웨 덴	2010	2010	1

자료: 관세청

## 다. 전문가조사

- 전문가조사는 평가대상국의 통관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정보와 자료를 얻어내는 것임
  - 평가대상국의 통관환경에 대한 전문가는 전·현직 현지국 주재 관세관 등 주재관<sup>63)</sup>과 정부투자기관의 통관담당 부서장, 종합상사의 통관담당 부서장 등이 될 것임
  
- 평가대상국 통관환경 평가에 가장 유용한 전문가는 현지국에 주재하고 있거나 과거에 주재한 경험이 있는 관세관임
  - 그러나 <표 Ⅲ-5>와 같이 관세관관련 주재관이 파견되는 나라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태국뿐이고 비공식적으로 관세관을 파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하더라도 2개국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있음
  - 관세관이 아닌 주재관의 경우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통관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표 Ⅲ-6>과 같이 여러 정부투자기관과 종합무역상사들이 동남아지역과 인도에 현지사무소를 두고 있는바, 이들 기관이나 업체의 통관담당 부서장은 평가대상국 통관에 직·간접적인 경험이 많을 것이므로 의미 있는 전문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sup>64)</sup>

63)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주재관이란 외교통상부에서 실시하는 주재관 공모를 통해 선발되어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칭함. 2010년 현재 전세계 84공관(분관3개 포함)에서 265명의 주재관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재외공관 주재관으로 선발되면 외교통상부로 전입 후 주재관 재임기간(3년) 동안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국을 대표하여 외교, 통상, 영사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됨. 주재관의 임기를 마치고 나면 원 소속 부처로 복귀. 주재관의 업무분야는 재정경제금융, 국세, 관세, 공정거래, 조달, 에너지, 산업, 국토해양, 특히, 방송통신, 환경, 농림수산, 교육과학, 문화홍보, 보건복지·식약, 노동, 경찰, 출입국, 법무·법제, 공공행정·안전, 통일·안보 등 21개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주재관이 개별공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은 공관별, 각 직위별로 매우 다양하며, 외교수요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안내자료 참조

64) 현지국 소재 정부투자기관 및 종합무역상사의 주소와 연락처는 [부록 1]과 [부록 2]를 참조. 종합무역상사제도는 대외무역법의 개정에 따라 2009년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전문무역상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문무역상사는 종합무역상사 및 중소기업상사 중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상, 수출대행 또는 완제품 구매수출비율이 전체의 10% 이상인 기업이 그 대상이 되고 있음. 한

〈표 Ⅲ-5〉 동남아국가 및 인도에 파견된 주재관 현황(2010년 현재)

국가	근무하는 주재관의 전문분야
인도네시아	국세, 국토해양, 문화홍보, 노동, 출입국
베트남	산업, 경찰
태국	관세, 산업, 경찰, 출입국
말레이시아	경찰
캄보디아	경찰
필리핀	경찰, 출입국
인도	산업, 경찰, 출입국

자료: <http://www.mofat.go.kr/introduction/resident/introduction/index.jsp>

〈표 Ⅲ-6〉 동남아국가 및 인도 주재 정부투자기관과 종합무역상사

소재 국가	정부투자기관/종합무역상사
싱가포르	○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 종합무역상사 :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널, LG상사, 효성무역 PG
태국	○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종합무역상사 : 삼성물산, LG상사, 효성무역 PG, GS 글로벌 <sup>65)</sup>
인도네시아	○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종합무역상사 :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LG상사, 효성무역 PG, GS 글로벌
말레이시아	○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종합무역상사 :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효성무역 PG, GS 글로벌
필리핀	○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종합무역상사 : 삼성물산, LG상사, 효성무역 PG
베트남	○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종합무역상사 :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LG상사, 효성무역 PG, GS 글로벌, SK네트웍스
미얀마	○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종합무역상사 : 삼성물산, 효성무역 PG
캄보디아	○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글라데시	○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도	○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 종합무역상사 :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LG상사, 효성무역 PG, GS 글로벌, SK네트웍스

자료: 각 기관 및 업체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

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안내자료 참조

65) GS글로벌은 종전부터 인정되어 온 종합무역상사는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등에 현지법인이 다수 임을 고려하여 포함한 것임. 반면, 종합무역상사인 쌍용의 경우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건설과 관련된 현지법인만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함

## 라. 사례조사

- 사례조사는 평가대상국의 통관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분석하는 조사방법임
  - 이 사례조사를 통해 조사자는 평가대상국의 통관 장애 문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과 사전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통관상황에 대한 논리적 유추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음
  - 사례분석의 방법으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나 목격(경험)한 사실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시뮬레이션에 의해 가상적인 현실을 만들고 분석하는 방법도 있음<sup>66)</sup>
  
- 사례조사는 우선 평가대상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의 외교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국내의 무역 관련기관 등에 제기된 평가대상국의 통관관련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현지기관 또는 국내 관련기관에 제기된 평가대상국 통관 애로사항은 대개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사례조사를 통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전문가조사나 2단계 조사과정인 현지 직접투자기업이나 평가대상국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적시된 특정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 확인과정을 통해 심층조사와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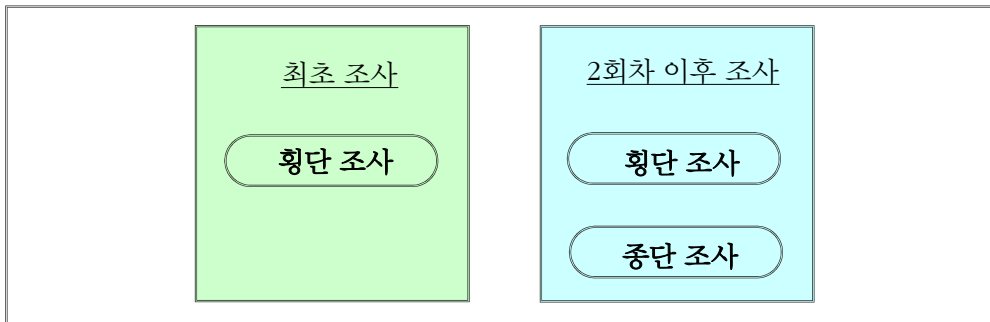
## 마.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1단계로 이루어진 탐색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조사임

66) 사회과학 조사방법론에 대해서는 채서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비엔엠북스(2009); 김구,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비엔엠북스(2008); 레리 B., 프레드릭 J. 크레이브터 저 김효동외 역, 『사회과학통계방법론의 핵심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2009) 등을 참고

- 이 조사는 주로 통관 단위업무 집행 환경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단위 업무는 주로 앞의 <표 Ⅲ-2>에서 정리된 ①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절차, ② 화물의 하역과 보관, ③ 보세제도, ④ 보세화물에 대한 관리, ⑤ 수입신고의 요건, ⑥ 관세율, ⑦ 수입통관절차, ⑧ 수입신고사항의 심사제도, ⑨ 납세제도, ⑩ 수입사항의 심사제도, ⑪ 위법에 대한 조사와 처분, ⑫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⑬ 반송통관 및 환적절차, ⑭ 휴대품통관절차, ⑮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의 통관절차 등이 될 것임
  - 그러나 평가의 필요에 따라 이 단위업무를 더 세분하여 자세하게 하거나 통합하여 단순화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임
  
- 통관환경의 평가는 [그림 Ⅲ-2]와 같이 일정 시점의 환경을 1회 측정하는 횡단조사(橫斷調査)와, 동일한 환경을 시점을 달리하여 반복 조사해 그 변화를 분석하는 종단조사(縱斷調査)가 가능할 것임
  - 따라서 최초에 실시하는 특정국에 대한 통관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는 횡단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되 2회차 이후 실시하는 조사는 횡단조사 방법과 종단조사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그림 Ⅲ-2] 통관환경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의 실시방법



- 설문문의 내용은 제3절 <표 Ⅲ-1>로 정리된 38개 평가지표가 될 것이며, 이러한 지표는 평가목적에 따라 통합되어 축소된 형태로 설문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설문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자가 관계된 통관영역에서만 설문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선사나 항공사 임직원이 설문대상자일 경우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 절차와 관련된 평가지표에 대해서만 설문하고, 평가대상국에 입출국한 여행자가 설문대상자일 경우는 휴대품통관절차와 관련된 평가지표에 대해서만 설문하는 것임

□ 설문조사 실시의 주체는 관세청이 직접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관세청과 조사기관 공동작업도 가능함<sup>67)</sup>

#### 바. 조사자료 작성자의 샘플링(SAMPLING)

□ 조사자료 작성자의 샘플링은 평가대상국의 통관환경 평가에 사용될 자료를 입수함에 있어 누구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것인가의 문제임

○ 조사의 방법은 대면(對面), 전화, 우편(이메일 포함)의 3가지가 주로 사용될 것인바, 작성자라 함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의미함

##### 1) 탐색조사 자료작성자

□ 탐색조사 가운데 문헌/통계자료는 간접적인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는 것이므로 조사자료 작성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문제되지 않으나 탐색조사 중 전문가조사와 사례조사의 경우는 조사자료 작성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조사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국의 통관환경에 대한 전문가는 전·현직 현지국 주재 관세관 등 주재관과 정부투자기관의 통관담당 부서장, 종합상사의 통관담당 부서장 등이 자료 작성자가 될 것임

○ 사례조사의 경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나 목격(경험)한 사실을 분석하여

67) 해외현지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을 통한 조사가 바람직할 것임.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2009년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도와 관련한 현지 조사를 한국리서치라는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 한국리서치, 『한·ASEAN FTA 활용현황 조사보고서』(2009) 및 김한성·김민성, 『한·ASEAN FTA 상품협정 발효 2년간의 이행현황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2009.8.4), p. 6 참조

야 하므로 그 당사자와 직접 접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평가대상국에 주재하는 우리나라의 외교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국내의 무역 관련기관 등에 제기된 통관관련 민원이나 설문조사 과정에서 입수된 통관장애 경험자를 선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대면, 전화, 또는 우편방식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2) 기술조사 자료작성자

- 2단계로 행해지는 기술조사인 설문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인 모집단을 먼저 확정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구체적인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함
- 설문조사 또는 사례수집 대상인 모집단은 평가대상국에서의 통관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및 개인 모두가 될 것이며, 이들의 소재지도 평가대상국과 국내로 나누어질 수 있음
  - 정리하면 <표 Ⅲ-7>과 같음

<표 Ⅲ-7> 특정국의 통관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 모집단

구 분		소재지	대상기관 또는 업체
현지직접 투자기업	종합무역상사	평가대상국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대우인터네셔널, LG상사, 효성무역 PG, GS글로벌
	제조·유통업체	평가대상국	다수업체(수시 변동)
평가대상국에 수출한 업체		국 내	다수업체(수시 변동)
평가대상국에 입출항한 선박(항공기) 운송업체		평가대상국 또는 국내	외국무역선(기)를 평가대상국에 취항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평가대상국을 여행한 자		평가대상국 또는 국내	다수인(수시 변동)

- <표 Ⅲ-7>의 모집단에서 현지직접 투자기업의 경우 제조·유통업체라 할지라도 평가대상국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표 Ⅲ-8>과 같이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그 수가 크

계 많지는 않음

〈표 Ⅲ-8〉 동남아국 등에 직접투자한 우리나라 기업 현황(2010년 9월 현재)

소재 국가	현지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	업체 수
싱가포르	LG전자 싱가포르 법인 등	207
태 국	SK건설 등	277
인도네시아	LG상사 등	685
말레이시아	FNS Logistics(M) Sdn Bhd 등	78
필리핀	CJ 토요타통상 필리핀(주) 등	218
베트남	CJ Vina Agri 등	1,188
미얀마	GTB-F 등	90
캄보디아	Camko Motor 등	59
방글라데시	(주) 유진 LED 등	152
인 도	CJ 피드 인디아 등	236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해외진출 한국기업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 따라서 특정국의 통관환경에 대해 본격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그 표본의 선정은 〈표 Ⅲ-9〉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 Ⅲ-9〉의 현지투자기업과 선사 또는 항공사는 장기간 현지에 주재하면서 빈번하게 입출항, 수출입, 반송, 환적 등의 통관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평가대상국의 통관환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
  - 그러므로 이들 업체의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모니터(monitor)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설문조사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통관환경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임
- 이때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면 모니터에게 소액이라도 활동비 또는 자료수집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이 경우 비용은 기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일정액의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을 것임

〈표 Ⅲ-9〉 특정국의 통관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표본의 선정

구 분		소재지	표본의 선정
현지직접 투자기업	종합무역상사	평가대상국	업체 전체를 표본으로 선정
	제조·유통업체	평가대상국	업체 전체를 표본으로 선정. 단 투자기업이 많은 국가는 통관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일정수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
평가대상국에 수출한 국내업체		국 내	통관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대상국에 대한 수출실적 상위 100개사와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정한 수의 기업을 추출하여 표본으로 선정
평가대상국에 입출항한 국내선박(항공기) 운송 업체		평가대상국 또는 국내	평가대상국에 취항하는 외국무역선(기)를 운항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전체를 표본으로 선정
평가대상국을 여행한 내국인		평가대상국 또는 국내	평가대상국에서 입국하는 일정 수의 여행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표본으로 선정

표본 선정은 속성상 통관환경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를 위한 예산의 형편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임

## IV. 태국의 통관환경제도 및 평가적용 사례

### 1. 통관환경제도

#### 가. 태국의 대외무역 체계 및 현황

- 태국의 현행 대외무역정책은 2006년도에 개정된 태국의 과도헌법의 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 동 헌법에서는 국가통합 실현, 경제 및 사회질서 확립, 부패방지 및 윤리의식 확립,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증진, UN헌장 및 국제 협약/협정의 준수, 여타 국가와의 우호관계 증진, 자립경제(Sufficiency Economy) 유지 등을 명시하고 있음

#### 1) 대외무역의 조직체계 및 법규체계

- 중앙조직의 관료화 등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2년도에 실시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결과, 태국 행정부는 현재 총 20개의 부(Ministry)와 162개국(Department)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 중 무역정책의 계획, 협력, 수행 등과 관련된 정부기관, 중앙은행,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등 국가기관들의 구조, 기능 및 역할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편임
- 무역 등 제반 경제정책에 대한 기획/수행/감독 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총리 및 내각에 있음
  - 무역 및 투자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부 내 주무 책임은 1차적으로 재무부 및 상무부장관에게 주어짐

- 그리고 분야별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농업협력부, 산업부, 보건부, 에너지부, 정보통신부, 교통부, 중앙은행 등이 각각 소관별로 수행함
  
- 무역관련 기본법으로는 수출입관련 제반 법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및 수출입지원기금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물품수출입법’(the Export and Import of Goods Act)이 있음
  - 국경관리 기본법으로는 ‘관세법’이 있으며, 기타 분야별로 소관물품에 대한 수출입관련, 요건, 기준, 절차, 자격, 시설, 위반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을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음
  
- 상무부는 상품무역 관련 기본법인 물품수출입법(The Export and Import Goods Act)을 재무부와 협의하여 입안하고 관리함으로써 대외무역을 총괄함
  - 동 법에서는 수출입금지대상, 허가대상, 수출입요건, 위반시 처벌규정 및 해외통상위원회(Foreign Trade Committee), 국제무역진흥기금(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Fund) 등의 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산하의 대외무역협상국(The 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s)은 다자 및 양자간의 무역협상 업무 등에 있어 주무부서로서 역할과 책임을 가짐
  - 대외무역협상국은 동 대외무역협상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다양한 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 등과 광범위하게 협의함
  
- 태국의 재무부는 국경관리 기본법인 관세법(The Customs Act)과 관세율관련 기본법령인 ‘The Customs Tariff Decree’를 제정·운영함으로써 태국의 재정 및 관세·관세율 정책을 총괄함
  -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국제경제 관련 정책위원회(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Policy)와 소속 소위원회는 태국의 국제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총괄, 조정하는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함
  - 또한, 자문·기획 기구인 총리실 산하의 국가경제사회개발회의(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는 경제정책을 포함한 제반 공공정책에

대한 검토 및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태국의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 준비,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경제사회개발 업무를 총괄함

- 태국도 대외무역관련 법규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있음
  - 태국 내 법규 또는 사법체계의 개선작업은 2004.7 설립된 국가법규개선위원회가 주도하여 왔으며, ‘국가법규개선계획 2005~2008’에 의거 진행되어 옴
  - 동 작업과정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거나, 교체가 요구되는 법규를 중심으로 하여 총 344개 법규에 대해 각 부처별 일정에 따라 전면 재검토 및 개정 작업 등을 수행함
  - 이 중 약 50%는 2008년까지 전면 재검토 또는 대체되었으며 무역 또는 국제무역 관련분야에서는 13개 법이 재검토되었고, 26개 법이 새로 제정됨
  
- 태국에서는 입법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정부부처의 훈령 및 공시 역시 무역관련 정책수행 과정에서 관련법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태국 관세율의 경우 재무부장관에 의해 법정 기본세율의 50%까지 내각의 승인에 의한 훈령의 형태로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고, 기타 투자유인책, 부가세, 특소세, 내국세, 보조금, 수출입통제, 덤핑방지 및 보복관세 등 무역 관련 중요한 정책들도 국회의 승인 없이 내각의 조정 및 협의에 의해 시행됨
  
- 국제무역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법규 및 조직체계의 확보는 해외로부터의 투자촉진은 물론 투명성 증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
  - 태국 역시 법규체계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모든 입법안에 대해 관보 게재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상무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제부처들은 자체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일반에게 필요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이를 통해 정부정책을 홍보 또는 안내하기도 함
  -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주로 태국어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이 접근하여 활용하는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음

- 그러나, 2005.8.6일 승인된 ‘E-Government Action Plan(2005~2007)’는 정책 및 행정의 투명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동 조치는 전자서비스를 촉진시키고, 정부의 문호를 개방하는 역할을 함
  - 또한 기간산업 및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여 왔으며, 전자거래, 안전, 컴퓨터관련 범죄와 연관된 많은 법규들을 개선하는 데에도 일조함

〈표 IV-1〉 태국의 무역관련 주요 법률 현황

(2009. 8, 현재)

법안	관리(부처)	목적
물품수출입법 (the Export and Import of Goods Act)	상무부, 재무부	무역관련 기본법으로, 수출입관련 제반법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처벌규정 및 수출입지원기금운영 등 규정
관세법 (The Customs Act)	재무부, 관세청	수출입통관절차, 관세평가, 관세심사, 보세구역, 환급, 처벌조항 등 규정
검역법 (The Quarantine Act)	공공보건부	검역절차 등 규정
수출촉진법 (The Export Promotion Act)	총리실	수출촉진, 통제, 수출물품 기술지원 등 규정
식품법 (The Food Act)	공공보건부, 식약청	통제 대상식품 지정, 식품보존 방법 및 조건, 포장용기 기준, 수출입절차, 식품검사 기준 등 규정
위해물질법 (The Hazardous Substance Act)	환경부	위해물질 생산, 수출입, 거래, 보관 기준 등 규정
산업생산기준법 (The Industrial Product Standard Act)	산업부	산업생산기준연구원 설치운영, 생산기준 설정, 수출입 절차 및 허가 기준, 위반시 처벌조항 등 규정
식물검역법 (The Plant Quarantine Act)	농업협력부	식물검역원의 임무 및 권한, 식물 수출입, 유통, 보관기준 설정, 처벌조항 등
의료장비법 (The Medical Device Act)	공공보건부	의료장비위원회 구성운영, 의료장비허가절차, 의료장비 통제 및 관리, 수출입절차, 불복절차, 처벌조항 등 규정
연료무역법 (The Fuel Trade Act)	에너지부	연료저장기준, 연료등급 통제 및 관리, 담당직원이 권한 및 의무, 허가 및 갱신절차, 위반시 처벌조항 등 규정
야생동물보호법 (The Wild Animal Reservation and Protection Act)	농업협력부	국가야생동물 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야생동물 사체 및 생산물 사육 및 거래기준, 수출입절차, 처벌조항 등 규정
상표권법 (The Trademark Act)	상무부	상표권 등록 자격, 요건 및 확인 절차 등 규정
수출물품세액보전법 (The Tax and Duty Compensation of Exported Goods Produced in the Kingdom Act)	총리실	보전대상 및 자격조건, 신청절차, 보전을 및 보전액 지급 방식, 지불방식의 활용 및 이전 등 규정

- 최근 태국정부 당국은 전자거래·안전·컴퓨터 범죄와 관련된 전자거래법, 컴퓨터관련 범죄법, 전자무역거래관련 전자사업서비스 규제 훈령, 공공부문 전자거래 훈령, 전자지불서비스공급자 규제 훈령, 승인기관 관리 훈령 등 법률안을 새로이 도입, 시행하여 오고 있음

## 2) 태국의 대외무역 현황

- 태국의 국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 전체 수출은 총 1,524억달러로 2008년도의 1,778억달러보다 14.2%가 감소함
  - 국가별 수출은 미국에 대한 수출이 2009년 166.6억달러로서 전체 수출의 10.9%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에는 일본이 수출 2위였으나 2009년에 순위가 바뀌어서 중국이 161.2억달러를 차지해 중국의 수출신장규모가 두드러짐
  - 한국에 대한 수출은 2009년도에 28.2억달러 규모로서 2008년도에는 36.7억달러에 비해 약 23.2%가 감소하였고, 전체 순위도 2008년 12위에서 2009년 15위를 기록하고 있음
- 태국의 국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전체 수입액은 총 1,338억달러로서 2008년도의 1,786억달러보다 25.1%가 감소하였음
  - 국가별 수입현황은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총 250억달러로서, 태국 전체 수입액의 18.7%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중국은 170억달러 규모로 12.7%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은 기간 중 54.2억달러로서 전년도의 68.5억달러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며, 태국 전체수입 규모에서는 약 4.1%를 차지하고 있음

〈표 IV-2〉 태국의 연도별·국별 수출 규모 및 순위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	153,703.1	177,840.9	152,497.9
1	미국	19,409.5	20,274.5	16,661.6
2	중국	14,839.5	16,190.8	16,123.9
3	일본	18,116.1	20,090.2	15,732.0
4	홍콩	8,670.2	10,046.3	9,484.5
5	호주	5,936.5	7,982.5	8,579.1
6	말레이시아	7,809.2	9,917.5	7,663.7
7	싱가포르	9,606.0	10,114.7	7,574.2
8	베트남	3,802.2	5,017.8	4,678.5
9	인도네시아	4,815.7	6,325.6	4,667.3
10	영국	3,621.8	3,969.8	3,237.1
11	인도	2,654.6	3,401.4	3,223.8
12	스위스	1,423.9	1,979.0	3,143.4
13	네덜란드	3,859.3	4,175.8	3,123.8
14	필리핀	3,010.7	3,512.5	3,022.1
15	한국	2,979.0	3,668.6	2,818.9
16	독일	2,919.7	3,198.4	2,626.9
17	아랍에미리트	2,184.8	2,793.3	2,459.5
18	대만	3,325.2	2,702.7	2,251.0
19	사우디아라비아	1,381.5	1,942.7	1,819.7
20	라오스	1,311.1	1,776.2	1,642.6

자료: 태국상무부

〈표 IV-3〉 태국의 연도별·국별 수입 규모 및 순위

(단위: 백만달러)

순위	국가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	139,958.9	178,653.1	133,795.9
1	일본	28,381.5	33,401.9	25,023.6
2	중국	16,224.9	20,055.9	17,029.0
3	말레이시아	8,617.1	9,697.1	8,575.6
4	미국	9,494.4	11,391.0	8,373.2
5	아랍에미리트	6,836.0	11,149.5	6,666.6
6	싱가포르	6,280.7	7,080.3	5,724.0
7	한국	5,286.2	6,830.9	5,422.9
8	대만	5,734.5	6,197.9	4,826.7
9	사우디아라비아	4,574.8	7,263.5	3,989.3
10	인도네시아	3,985.9	5,394.1	3,800.5
11	호주	3,800.4	5,160.2	3,787.4
12	독일	3,918.5	4,495.4	3,474.1
13	미얀마	2,301.4	3,374.5	2,781.6
14	스위스	1,489.7	3,951.5	2,494.9
15	오만	2,593.8	2,623.2	2,074.9
16	프랑스	1,299.3	1,496.7	1,852.5
17	필리핀	2,140.0	2,269.1	1,783.2
18	영국	1,516.3	1,816.0	1,767.4
19	홍콩	1,441.2	1,958.3	1,730.4

자료: 태국상무부

## 3) 한-태 무역현황

- 한국 대 태국 무역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 태국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말부터 시작된 세계 경기침체로 인하여 2009년에 45.2억 달러로 2008년의 57.8억달러에 비해 약 21.6%의 감소를 보임

- 한편, 한국의 대 태국 수입은 2009년 32.9억달러를 나타내서 2008년 42.8억달러 대비 24.4%의 감소추세를 나타냄
- 그러나 대 태국의 무역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9년에도 대 태국 수출보다 대 태국 수입의 감소추세가 더 크게 나타나서 무역수지는 12.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표 IV-4〉 대 태국의 연도별 수출입 무역수지

(단위: 백만달러, %)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4,246	25.6	4,488	5.7	5,779	28.8	4,528	-21.6
수입	3,328	23.8	3,769	13.2	4,281	13.6	3,238	-24.4
수지	918	32.7	719	-21.7	1,497	79.2	1,289	13.8

자료: KITA

- 태국의 대외무역을 통한 세수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태국의 총세수 확보액은 1조 5,012억바트 규모이며, 이는 2007년도 의 1조 4,370억바트 규모에 비해 약 4.5%가 증가한 수치임
  - 수입원별 세수액은 직접세가 1조 1,238억바트 상당으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간접세가 2,862억바트 규모로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그 외 관세는 약 912억바트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관세액 중 수입관세가 887억바트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한다. 관세를 통한 세금 징수액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인하여 저율의 협정세율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실제로 관세가 태국 전체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11% 수준에서 2008년에는 6.1%로 연차적으로 감소하여 왔음

〈표 IV-5〉 태국의 세수확보 현황 - 연도별, 수입원별

(단위: 백만바트)

분 류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직 접 세	575,381	778,558	872,962	1,063,766	1,123,823
간 접 세	229,065	276,226	255,857	278,143	286,217
관 세	101,189	106,161	101,544	95,082	91,232
수입관세	99,635	103,523	98,304	92,760	88,671
수출관세	197	272	257	328	351
기 타	1,357	2,366	2,982	1,994	2,211
합 계	905,536	1,160,945	1,230,362	1,436,992	1,501,272

주: 환율은 \$1 = 40.27바트(2004), 40.26바트(2005), 37.92바트(2006), 34.56바트(2007), 33.36바트(2008)  
 자료: Fiscal Policy Office, Bangkok Post

## 나. 태국의 수입통관절차<sup>68)</sup>

- 태국의 수출입통관절차는 8개의 절차로 나뉘지는데 수입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 이산화물 통관절차, 우편물 통관절차, 특송화물 통관절차, 일시반입화물 통관절차, 기타 외교서신 등의 통관절차로 구분됨
- 수입통관절차는 “태국 내로 물품의 수입”시에 발생하는 통관절차를 의미하는데, 외국에서 선박, 항공기, 철도, 도로, 배관, 반입로, 또는 우편 등을 통해 태국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말함
  - 수출통관절차는 선박, 항공기, 철도, 육상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해서 물품을 태국 밖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를 의미하며, 수출신고 및 통관절차는 수입통관절차에 준하여 적용됨
  -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는 입국 또는 출국 여행자가 여행을 하기 전에 여권 및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통관규정, 질병검역, 출입국규정, 외환한도 및 환율에 대해서 규정을 알리고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해 통관관리하는 제절차를 의미함

68) 태국의 통관절차는 수입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 여행자휴대품 통관절차, 이산화물 통관절차, 우편물 통관절차, 특송화물 통관절차, 일시반입화물 통관절차, 기타 외교서신 등 8개의 통관절차로 구분되나 여기에서는 가장 주요한 통관절차인 수입통관절차만을 기술함

- 이사회물 통관절차는 태국 국민이 1년 이상 해외체류하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와 외국인이 태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사회물품으로 국내반입이 허용됨
  - 우편물 통관절차는 통관우체국을 통해 우편물의 통관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편을 통해 수출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선별검사, 과세액 평가 및 관세징수, 우편물의 예치 및 발송 등의 제반 우편물통관과정을 통관우체국에서 담당함
  - 특송화물 통관절차는 특별한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로서 국제항공세관에서의 특급특송화물 통관절차, EDI를 이용한 특급특송화물통관절차 및 물품의 유형에 따른 통관절차 등으로 구분되어 특별하게 취급됨
  - 일시반입화물 통관절차는 일반적인 화물의 수출입절차가 아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시반입되는 전시용·교육용·상업견본 등의 용구를 6개월 내에 재반출하는 경우에 세관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것을 의미함
    - 여기에는 세관담보제공 반입제도 및 ATA Carnet 제도 등이 존재함
  - 기타 통관절차는 외교서신, 시신, 보도 사진, 신문, 비상업용 애완동물 등에 대한 통관절차를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따로 통관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음
-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수입통관절차만을 기술하고자 하며 통관절차의 순서는 ①수입신고, ② 관련서류제출, ③관세 등 제세납부, ④반입물품의 검사 및 양도, ⑤세관창고에서의 물품검사 및 반출, ⑥보세창구에서의 물품반출까지 크게 약 6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1) 수입신고

- 수입자는 관세청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컴퓨터시스템에 전송하면, 세관은 이를 관련법과 적하목록 등 참조파일과 대조하여 검증 후 승인 및 허가 여부를 결정함
  - 수입자는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서를 4부 작성하여 수입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세관에 제출해야 함

- 수입신고서는 카본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선박의 이름, 도착일자, 도착예정 항구
  -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 수입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포장상태 및 원산지 등
  - 관세율, 관세 및 사업세, 도시세 등의 금액
  - 외환통제사항(필요 시)

## 2) 관련서류 제출

- 관련서류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증권(Insurance)이 포함되며, 그 외에도 수입신고서 외에 필요시 수입허가서, 외환거래양식,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관련서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송장 및 포장명세서(INVOICE AND PACKING LIST)
    - 화물인도지시서(CUSTOMS DELIVERY ORDER NO.35)
    - 수입허가서(PERMISSION OR CERTIFICATE OF SPECIFIC IMPORTATION - 필요시)
    - 외환거래양식(EXCHANGE CONTROL FORM 21- 필요 시)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필요 시)
    - 제품안내책자 및 기타서류(CATALOG OR OTHER DOCUMENTS- 필요시)
  - 수입자가 수입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동 서류들을 심사하며, 심사사항은 수입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필요한 서류는 모두 구비되었는지, 수입에 필요한 사전승인 또는 허가품목인 경우에 동 조건을 충족했는지, 외환 통제를 위한 증명서가 필요한지 등임
  - 세관에서 서류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서 우측 상단에 확인 스탬프를 찍어 수입업자에게는 접수증을 발급함

### 3) 관세 등 제세납부

- 관세 등 제세납부는 관련세금이나 예치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직접납부, 전자이체,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
  - 은행보증이 필요한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자가 관세청 규정에 따라 보증금 납부를 완료한 때에 은행보증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관세납부 신고”로 자동 전환시킴
  - 세금과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수입자가 해당 세금과 관세의 납부를 완료한 때에 세금 및 관세 납부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세금 및 관세납부 신고”로 자동 전환시킴
  
- 수입세금과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신고인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금 및 관세면세번호를 발급하고 수입신고 상황을 “세금 및 관세면세 신고”로 자동 전환시킴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각각의 수입신고 건에 대해 보증번호, 관세납부번호 또는 관세면제번호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 4) 반입물품의 검사 및 양도

- 해상, 항공, 육상 적하목록을 입력내용과 대조해서 수입신고 및 진행상황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임
  - 신청인이 세금과 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명령 또는 결과 등을 통보함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관세청의 리스크 관리원칙에 의거 위험도(프로필)를 확인하게 됨
    - 수입신고서가 “검사 면제”로 분류된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관세, 과세가액 및 물품검사 면제 대상”(그린 라인)임을 입력하고, 수입신고 현황을 “수입신고 필 인도준비 완료”로 자동 전환시킴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관 창고에 해당 물품을 수입자에게 양도할 것을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세관 관할에서 해제되었음을 통보함

- 수입신고서가 “검사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관세, 과세  
가액 및 물품검사 대상”(레드 라인)임을 입력하고, 세관창고에 해당물품에 대한  
자료를 송부함으로써, 신청인이 세관창고를 접촉하여 물품검사를 인수받도록  
통보함

-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및 관련제세가 통보되면 수입업자는 검사물품을 준비하고 지  
정된 검사원이 샘플검사를 실시함
  - 검사는 수입신고서 등 서류와 실제물품의 일치 여부의 검사와 수입금지 품목의 수  
입 여부 등을 검사하는 2종류로 구분. 신고제품의 적하 목록과 수입품의 불일치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음
    - 수입물품 샘플링 검사 수
      - 수량이 10개 이하인 경우: 1개
      - 수량이 50개 이하인 경우: 2개
      - 수량이 100개 이하인 경우: 3개
      - 수량이 500개 이하인 경우: 4개
      - 수량이 1,000개 이하인 경우: 5개
      - 수량이 1,000개 이상인 경우: 5개

#### 5) 세관창고에서의 물품검사 및 반출

- 수입자는 해당 세관창고에 납세영수증과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세관검사직원은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서와 대조 검사 후 수입신고서와 일치할 경  
우 물품반출을 허락하게 됨
- 통관절차 완료 후 세관에서 반출된 물품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이미 제출  
한 정보와 당해 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과세가액 또는 관세율 등이 모두 일치  
하는 것으로 봄
  - 수입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될 경우에도 해당 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가

액 또는 관세율 등 상세 내역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제출한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봄

- 수입물품을 세관에서 반출한 후 면세지역이나 수출지역으로 이송할 때 역시, 해당 수입물품의 유형, 품질, 수량, 중량, 가액 또는 관세율 등 자세한 내역은 수입자가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제출한 정보와 일치하는 것으로 봄

#### 가) 검사면제 수입신고인 경우

- 수입자는 선하증권번호를 창고관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함
  - 수입자가 단일창구 통관시스템상에서 통관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는 관련서류를 세관 서비스부서에 제출한 후 통관절차 종료에 따라 물품을 수령하게 됨

#### 나) 검사대상 수입신고인 경우

- 수입자는 내륙컨테이너 항만을 접촉하여 물품검사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함
  - 그리고 물품검사는 관세율 및 과세가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됨
  -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사 신청인에게 물품의 양도를 통지하며, 신청인은 세관창고를 접촉하여 물품을 수령함

#### 6) 보세창구에서의 물품반출

- 검사 면제 대상인 경우 해당물품이 통관허가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 물품인지 확인 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세관서비스 부서에 보고하여 즉시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번호를 창고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은 해당 물품이 통관허가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 물품인지 확인해야 함
  - 물품이 통관허가증과 다르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세관 서비스

부서에 보고하여 즉시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창고에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세관공무원은 물품반출 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를 완료한 후 창고관리인에게 통관 허가증을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함

- 수입자가 물품수령을 위해 수입신고서번호를 창고관리인에게 통보할 경우, 창고 관리인은 동 물품이 세관의 물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창고로부터 동 물품에 대한 검사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세관공무원은 그 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함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관 서비스부서 공무원을 자동적으로 배정하여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를 완료한 후 세관공무원은 그 결과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고, 창고관리인에게 통관허가증을 발급하여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 될 수 있도록 함
- 창고에서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면 창고관리인은 인도 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7) 통관절차별 소요시간 및 법규위반시 제재 내용

□ 통관절차는 수입신고서 제출에서 시작하여 보세창고로부터의 화물반출로 종료되며, 통관절차별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음

- 아래 시간은 기술적인 소요시간으로서 실제 통관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1~2일 가량 소요될 때가 많은 편임
  - 수입신고서 제출 및 서명확인: 15분
  - 통관허가에 필요한 서류검토: 15분
  - HS 코드 확인 및 관세평가: 2~3시간
  - 산정관세 확인: 15분

- 산정관세 이상시 재결정 소요시간: 20분
- 적정관세보다 저율로 신고시 관세 재조정 부과: 30분
- 관세 및 추징료 수납: 15~30분
- 선박번호 확인 및 검사물품 준비: 15분
- 검사원 지정: 15분
- 물품검사 및 반출순서 제시: 15~30분
- 보세창고에서 화물반출 절차: 15분

□ 통관관련 법규 위반시 제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밀수: 실제 관세액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부과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 밀수품 수취: 실제 관세액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부과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정당한 세관신고 위반: 15,000바트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 다. 통상애로 사례<sup>69)</sup>

##### 1) 2009년 사례

###### 가) 2009-1. 지방도로 건설 관련 민원 지원

- 현지 진출한 물류업체 A사는 최근 태국 교통부가 동사 물류창고 바로 앞을 지나는 지방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2009.4월 동 A사는 수차례 태국 교통부에 노선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원활히 해결되지 못하였고 이에 주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함
- 우리대사관에서는 (1)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2) 동 A사의 지역경제 기여(고용, 수출 등)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

69) 이 절은 『통상마찰사례집(각 연도)』을 참고하여 정리한 자료로서 각 연도별로 한태무역간에 발생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노력 및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통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례도 포함되어 있음

- 태국의 지방도로과장은 일단 도로계획심의회의 의결을 마친 사안이라 노선 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 전제하면서, A사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답변

#### 나) 2009-2. 항공기<sup>70)</sup> 말소 등록 지원

- SkyStar Airways(태국법인)는 2007년부터 투자자를 모집, 교보증권과 현대증권이 공동 투자한 항공기 1대를 포함, 총 4대의 항공기로 방콕-인천 간 운행. 2008.4월 교보증권과 현대증권은 GrandStar를 설립, SkyStar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B767-200 항공기 1대 임대
  - 2008.11.27 SkyStar Airways 부도 및 대출금 미상환되자 교보증권과 현대증권이 공동으로 SkyStar Airways 측에 임대한 항공기의 말소등록을 신청
  - 2009.2.28 항공기 소유권자인 GrandStar는 SkyStar Airways에 리스계약해지를 통보하고 SkyStar 측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선언에 대한 확인서'와 '항공기 말소등록 위임장'을 청구
  - 2009.3.9 Grandstar는 태국 교통부 민간항공국에 말소등록위임장을 첨부, 항공기 말소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민간항공국은 항공기 말소등록은 당초 등록을 한 SkyStar Airways 측에 있으며, 소유권자인 Grandstar는 말소등록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 GrandStar는 2009.8.7일 말소등록 재신청하였으나, 2009.8.28 민간항공국으로부터 SkyStar Airways보다 상위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으라는 공문 접수
    - 2009.9.1 교보증권과 현대증권은 동 말소 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
- 2009.9.11 주태국대사는 태국 민간항공국장을 면담, 해당 항공기 소유권은

70) 항공기 및 건설기계장비 등 초기에 막대한 자금투입이 필요한 산업리스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대출금을 완전 변제하기 전까지 소유권은 임대인 몫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계약이 유지되며, 항공기의 경우 말소등록이 되지 않으면 운항 및 신규등록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음

GrandStar에 있고 GrandStar가 SkyStar로부터 ‘항공기 말소등록위임장’을 징구하였으므로 말소등록 권한이 있음을 주장함

- 아울러, 임차항공사의 채무불이행(Default)의 경우에는 항공기 소유권자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국제관례를 들어 동 건을 조속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함(주태국 대사관 경제담당관, 태국측 법률전문가 등 관계자 4명 배석)
- 민간항공국장은 태국 항공규정에 말소에 관한 조항이 없으며, 일반적 법관행에 따라 등록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동 말소권한은 등록자인 SkyStar측에 있다고 말함
- 또한, 등록자인 SkyStar측이 ‘항공기 말소등록위임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 말소 위임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동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민간항공국이 중재자가 되어 양측의 화해를 통해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우리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항공기 운항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해지는 점을 설명하고, 민간항공국 차원에서 기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처리해 줄 것을 당부

□ 대사관은 동 처리를 위해 태국 민간항공국 및 해당 금융기관과 수시 접촉하여, 주태국대사관의 항공기 리스계약 특성, 국제관례 및 법률적 해석 등에 대한 끈질긴 설득 결과 태국 민간항공국은 2009.11.4 법원의 ‘긴급재판’을 통해 동 항공기에 대한 말소 및 신규 등록을 지급(2009.11.4 당일) 처리

- 외국기업과의 비즈니스에서 해당국가가 자국회사 보호를 우선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해 기업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및 현지공관과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비용 및 시간절약, 최대효과 획득 등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임
- 항공기 말소등록<sup>71)</sup>에 관한 국제관례에 의하면 임차항공사(Lessee)의 채무불이행(Default)의 경우에는 항공기 소유자 보호를 위해 동 소유자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71) 우리나라 항공법(제12조 말소등록)은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등의 경우에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

- 태국측은 항공기 소유자(GrandStar)가 ‘말소등록위임장’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국법인(SkyStar) 보호를 위해 동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국 법원의 ‘긴급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동 건을 지급(당일) 처리함
  - 금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민간항공국은 항공규정에 ‘말소등록’ 조항을 추가, 2009.11.1 이후 신규 등록하는 항공기는 임차인(Lessee) 또는 임대인(Lessor)이 항공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됨

#### 다) 2009-3. A사의 “Bangkok Trade Zone 프로젝트” 참여 지원

- 2009.4.1 한국의 A사는 태국 수와나폼 공항 근처에 추진되고 있는 “Bangkok Trade Zone 프로젝트(1.5억 달러 규모)”에 참여할 계획으로 동 프로젝트 주관회사인 Chaiyanan Bangplee Parrland사와 접촉해 왔으나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자, 3.31일 본사 해외사업팀 3명이 태국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지만 이에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해 대사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
  - 2009.4.1~2 주태국대사관 담당관은 동 프로젝트의 실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태국 투자청(BOI)을 접촉, 2008.3월 투자청에서 승인한 사업임을 확인하고, 태국 관세청 국제협력과장과 정보분석과장을 접촉하여 동 프로젝트의 진행현황 등에 대해 문의
  - 관세청 담당과장은 동 자유무역지대에 파견되어 있는 세관사무소 직원과 연락을 통해 대략적인 사업 현황과 직원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태국의 ‘Bangkok Trade Zone 프로젝트’ 담당자와 연결을 통해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정보획득에 성공

## 2) 2008년 사례

### 가) 2008-1. 태국투자가이드제작

- 태국 진출(예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태국의 법률, 제도, 사업환경 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안내하는 투자가이드<sup>72)</sup> 발간

72) 본문 300페이지(제1장 태국경제일반, 제2장 태국정부정책, 제3장 태국 경제사업법률, 제4장 사업

- 이 투자가이드는 과거 대사관에 문의가 들어온 내용과 한태상공회의소, KOTRA 등과 협조하여 진출기업의 공통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책자의 내용과 목록을 구성
- 2008.1 삼성전기, LG전자, KOTRA, 한태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TF(팀장: 상무관)를 구성하여 작업 추진(대사관에서 미화 3,500달러 지원), 2008.1~9 수차례 TF를 회의를 개최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보완
- 2008.8월말 가이드 초안이 완성되고, 대기업자문단에서 내용을 검토, 2008.11.25 발간을 목표로 2008.10.20일 인쇄 작업 착수 (총 1,000부 발간예정)
- 1,000부 중 700부는 현지 태국에서 활용하고 300부는 한국 관련기관(관련정부기관, 협회 등)에 송부하여 태국진출의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

### 3) 2007년 사례

#### 가) 2007-1. 태국 전자주민증 정부입찰 수주

- 06.8. 태국 정통부의 전자주민증(13백만장) 2차 입찰에서 하이스마텍(HST) 콘소시엄이 최저가로 입찰하였으나, 입찰자격 심사시 기술적 결격 등을 이유로 전자입찰위원회는 경쟁사를 최종입찰자로 하여 정통부에 보고
  - 입찰 직후 HST의 요청에 따라 공관에서 정통부 사무차관(입찰관리책임자)에게 우리 업체의 기술 우수성을 설명하고 우리 업체의 수주지원을 요청
  - 전자입찰위원회 관계자를 수차례 접촉 및 현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진행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정통부 장관의 협조요청 서신 전달
- 06.9. 군부 쿠데타로 새로운 정부가 전자주민증 입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감사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 지원
- 입찰관리책임자는 전자입찰위원회 경쟁사 선정결과 승인 유보, 재심 요구와 함께 최종입찰자 선정절차 변경을 재무부 관련국에 요청

□ 06.11. 태국 정통부 전자주민증 입찰계획 변경 발표

- 06.8. 시행될 전자입찰 실시 결과는 전면 무효화
- 차후 실시할 입찰에서는 기술사양 Upgrade(카드 메모리: 32K→ 64K) 등 신정부 수립으로 기존 정부시책의 전반적 재검토가 이루어짐

나) 2007-2. 취항항공기(대한항공) 용품 면세통관 지원

- (주)대한항공에서는 치앙마이 국제공항을 취항하는 항공기 수리부품에 대해 현지통관 보관 후 항공기 정비시 수시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치앙마이 공항 세관측에서 면세통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함에 따라 대사관에 지원요청
  - 다자간 협정문, 태국 내 여타 공항에서의 면세통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세관담당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당 세관의 담당국·과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항을 설명 및 적극 지원 요청
  - 협의과정의 장기간 소요를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방콕 세관을 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태국 관세청과 현지 세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병행하여 문제해결
- 초기 현지 세관의 근거 불분명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요청과 설득을 병행하여 무리없이 당해 세관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리 업체의 주장을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
  - 이는 초기 현지 세관의 반응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 같았으나 국제협정, 여타 공항의 면세조치 사례, 태국항공기에 대한 우리나라 면세적용사례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설명과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

## 2. 관세제도

### 가. 관세율 개요

#### 1) 관세율의 기본구성

- 태국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실행관세율, 협정관세율 및 할당관세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본세율 및 실행관세율은 태국이 회원인 다자 또는 양자간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적용하는 세율임
  - 협정세율은 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WTO협정세율과 ASEAN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협정세율 및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간 협정세율 등이 있음
  - 할당관세율은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함
  - 태국은 연도별 통합 관세율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으며, 관세율 변경에 대한 사안별 고시만 별도 공포하고 있어서,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관세율변경고시 등의 확인이 필요함
  
- 태국의 관세율표 개정작업은 자국 내 업종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 등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지연되어 왔음에도, 대체적으로 WTO 또는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 등의 양허일정에 따라 원자재 및 국내 비생산품 등을 중심으로 하여 수입관세율이 꾸준히 인하되어 옴
  - WTO사무국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섬유, 의류, 화공품, 기초금속, 기구, 기계 등을 중심으로 1,981개 품목(전체 품목의 35.7%)의 관세율이 인하됨
  - 반면, 절단된 식용고기, 용화 마그네슘, 코카인, 원료피혁, 철강평판, 기계, 기타 기구 부품/부속품 및 액체운반용기 등 8개 품목의 경우는 오히려 관세율이 인상됨
  - 태국 역시 품목분류에 대한 해석 및 결정업무는 관세청의 고유 권한 및 책임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세번분류업무는 관세청 내 세관품목분류국에서 수행함

- 한-태 협정관세율은 기본적으로 한-ASEAN 협정관세율에 근거하고 있음
  -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은 2004.11월 최초 협상개시 이후, 총 24회의 협상과정을 거쳐 2006.8월에 상품협정에 서명을 하였으나, 당시 태국은 우리나라와 쌀, 자동차 등 민감품목에 대한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국내 정치상황 등의 이유를 들어 서명에 불참하게 됨
  - 이후 태국측 요구에 따라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별도의 협상을 수행하여 왔으며, 2007.12월에는 최종 타결을 보게 됨
  - 그 결과, 2009.2.27일 태국 후아헌에서 양국대표가 정식으로 한-ASEAN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발효됨
  
- 한-ASEAN 상품협정에 태국이 합류함에 따라 2009년 또는 2010년에는 태국의 일반품목군에 대한 관세철폐가 완료되었고, 이를 통해, 향후 한-ASEAN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한-ASEAN 상품협정 발효 이후 1년간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은 24.9%, 수입은 20.9%가 증가하였고 전체 교역량은 23% 증가한 바가 있음

## 2) 관세율 현황 및 분포

- 태국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6단계<sup>73)</sup> 관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원료와 의료 장비 같은 필수품은 0%, 일부 원료와 전자부품 및 국제운송차량 등은 1%, 1차 및 자본재의 경우는 5%, 중간제품은 10%, 미완성 제품 등은 20%, 특별보호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는 30% 등으로 구성됨
  - 이런 세율구조와는 별개로 차량은 80%, 알콜음료 중 포도주는 60% 등 아직도 별도의 고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3년에 품목전반인 공산품목 1,047개, 농산품목 464개 등 총 1,511개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기도 함
  - 이러한 조치들은 기존 무역구조 불합리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일환으로

73) 태국의 관세율 품목분류코드는 국제기준인 6단계를 기준으로 독자적으로 부여한 2단계를 추가, 8단계 코드로 분류하며, 여기에 3단계의 기술관리 코드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음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평균 실행관세율이 10%를 넘고 있어서 여전히 높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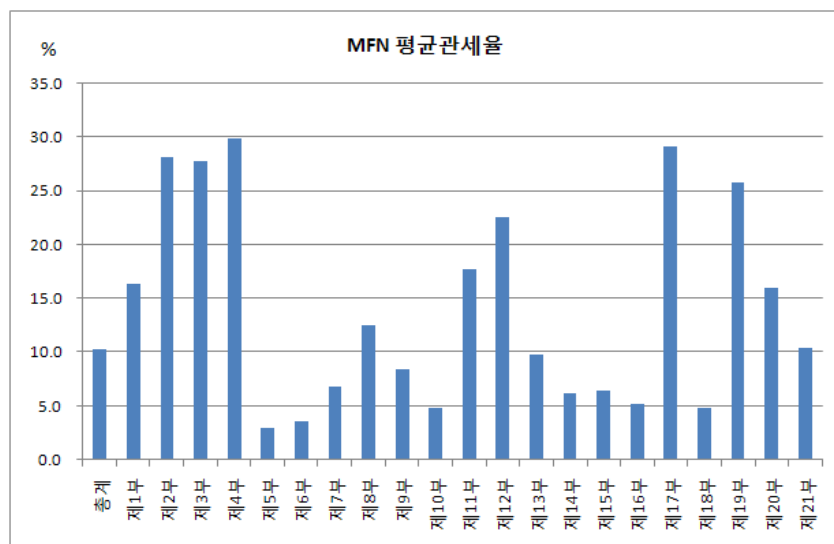
□ 구체적으로 2009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관세율은 10.27%로서 2003년 13%에 비해 낮아진 수준으로 <표 IV-6>과 [그림 IV-1]을 통해서 그룹별 분포를 파악할 수 있음

<표 IV-6> 태국의 MFN 실행 평균관세율(2009)

구 분		평균관세율
<b>총합계</b>		10.27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16.29
제2부	식물성 생산품	28.10
제3부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27.74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9.78
제5부	광물성 생산품	2.94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3.65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6.76
제8부	원피	12.48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8.40
제10부	목재펠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4.78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제품	17.71
제12부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22.47
제13부	석. 플라스터.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9.82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과 주화	6.23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6.42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5.15
제17부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29.02
제18부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87
제19부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속품과 부분품	25.71
제20부	잡 품	15.89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10.42

- 그룹별로 살펴보면 주로 농식료품 및 술 등에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광물 및 목재류에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제2부~제4부, 제17부 및 제19부는 평균관세율이 25%를 넘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주로 농식료품 및 그의 가공품과 술·담배 그 외 차량·수송기 및 무기류 등이 해당 그룹에 속함
- 그 외 낮은 관세율 그룹은 제5부~제7부, 제9부, 제10부 및 제13부~제17부 등이 해당되며 주로 목재류와 귀금속을 포함한 광물 그리고 기계류 등이 포함됨

[그림 IV-1] 태국 MFN 실행관세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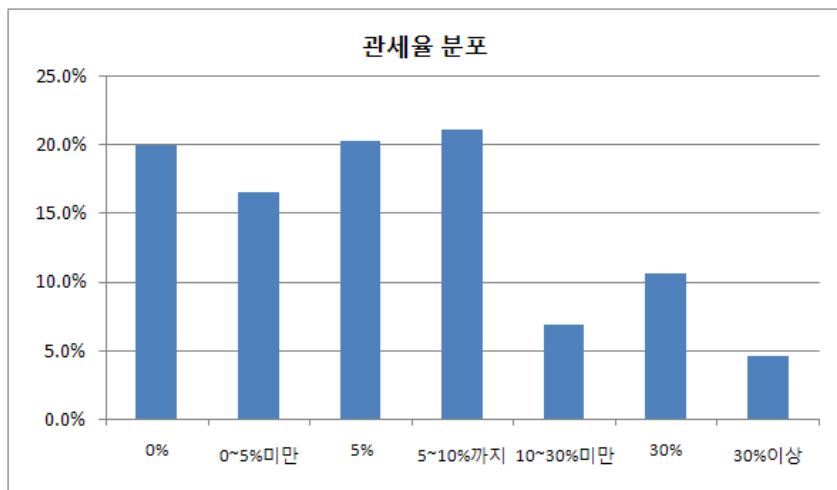
- 태국의 관세율에서 종가세와 종량세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종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8,908개로서 약 91%를 차지하며, 종량세가 부과되는 품목도 806개로 약 8%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외 국제표준코드에 근거하여 태국은 9,748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중에서 34개의 품목은 종량세, 종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평균관세율 및 해당비율에서 제외되는 항목임

〈표 IV-7〉 태국의 증가세·종량세 비율(2009)

	총수	증가세	종량세
개수	9,748	8,908	806
비중	100%	91.38%	8.27%

- 태국의 관세율 분포를 살펴보면 0~10%까지가 전체 관세율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 이상의 관세율은 4.6% 정도를 나타내고 있음
- 10% 이하의 관세율 중에서 0%와 5%의 비중이 동일하게 20%를 나타내고 있으며, 0~5% 미만 그리고 5~10% 이하의 관세율 비중은 각각 16.5%, 21%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IV-2] 태국의 관세율 분포(2009)



#### 나. 여러 가지 관세제도

- 태국의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관세법(CUSTOMS LAW B.E.2469)”이 있으며, 동법이 수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됨
- 관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Royal Decrees, Ministerial Regulations, Notification 등이 있음

- 관세를 담당하는 부서는 재무부 관세국(Customs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이나 조직은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함
- 관세는 1987년의 관세율기본율령(Customs Tariff Decree)에 의해 관장되며, 이는 관세협력이사회(Customs Cooperation Council)의 통일된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전의 관세법을 개정한 것임

### 1) 관세평가제도

-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분류한 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의 2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가세와 종량세가 함께 적용되는 품목일 경우 세금이 높은 방식을 선택함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평가가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6가지의 방법이 적용됨
  - 과세가격 결정은 보통 다음의 6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지만 수입자가 요청하고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원가계산방법을 공제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 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시점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 실제로 구매자에 의해 판매자에게 지불되었거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계 또는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자에 의해 제3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계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함

#### 나) 동종물품의 거래가격

- 동종물품이라 함은 물리적 형태, 품질, 사회적 평판 등에서 당해 수입물품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고, 동일 국가에서 생산된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은 도착항까지의 운임, 운송,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됨
- 제3자에 의해 생산된 동종물품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동종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동종물품은 당해 수입물품과 같거나 유사한 시기에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일로부터 30일 전후) 태국에 수출되어야 함
  - 동종물품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야 함
  - 당해 수입물품과 같은 거래규모 또는 수량이어야 함
  - 태국 내에서 수행된 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기타 용역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다)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과세가격을 위의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방법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함
- 만일 당해 수입물품을 생산한 자에 의해 생산한 유사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생산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적용 여부가 고려될 수 있음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유사물품은 당해 수입물품과 같은 시기 또는 유사한 시기(당해 수입물품의 수출일로부터 30일을 전후한 시기)에 태국으로 수출된 것이어야 함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이전에 과세가격으로 이용된 적이 있어야 함
  - 동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당해 수입물품과 거래규모(Trade level) 및 거래량(Quantity level)과 같아야 함
  - 동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등의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만일 동일 거래규모나 거래량의 유사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유사물품의 거래규모

나 거래수량이 다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이를 조정하여 거래가격으로 정할 수 있음

- 거래규모가 같고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수량을 조정
- 거래수량이 같고 규모가 다른 경우에는 거래규모를 조정
- 거래규모와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규모와 수량을 조정
- 만일 운임, 운송료, 보험료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거래가격을 정할 수 있음
- 만일 유사물품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음

라) 공제방법, 수입물품의 국내 거래가격에서 국내 판매비용을 공제한 가격

- 위의 3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조건으로 태국에 판매된 수입물품의 단위당 거래가격에서 제 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음
- 만일 당해 수입물품의 국내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단위당 국내 거래가격에서 제 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음
-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 거래가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최고수량으로 판매된 가격
  - 상호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된 가격
  - 다음의 원재료, 장비, 용역을 제공한 자가 아닌 사람에게 판매된 가격
    - 수입물품에 체화된 원재료, 부품, 또는 유사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도구, 몰드 또는 유사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모된 원재료
    - 태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행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기타 용역
  - 다음의 비용은 공제함
    - 당해 물품의 태국 내에서 판매와 관련된 이윤 및 일반경비 또는 지불하였거나 지불하기로 계약이 된 커미션
    - 태국 내에서 발생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

- 당해 물품의 수입 또는 국내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제 세금

마) 원가계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위의 4가지 방법을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 방법을 적용하며 수입자가 요청하고 세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공제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은 다음 항목의 합계로 정함
  - 원재료, 부품, 노무비, 가공비, 기계장비, 유지비 등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와 가공비용. 다만, 수출환급대상 원재료에 부과되는 생산자의 국내 제 세금은 제외
  - 다른 생산자에 의해 태국에 수출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판매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합계
  -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용기 비용
  -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된 재료 및 노무비
  - 다음의 재료 및 장비 비용
    - 수입물품에 체화된 재료, 부품, 또는 유사한 물품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도구, 몰드, 또는 유사한 물품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모된 재료
  - 운임, 운송비, 보험료 등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생산자의 비용으로 태국 내에서 수행된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엔지니어링, 계획, 스케치 등 용역비

바) 역산가격에 의한 방법

- 위의 모든 방법을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 방법들의 결정에 필요한 기준, 원칙,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 태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물품의 판매가격

- 2가지 가격이 있을 경우 높은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정해진 가격체계
- 수출국가의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물품의 가격
- 원가계산방법에서 언급된 항목이 아닌 생산 비용
- 태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수입물품의 판매가격
- 최소 과세가격
- 근거 없이 결정된 가격
- 역산가격을 위한 합리적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각 방법의 기간은 1회에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동종 또는 유사물품은 과세가격의 평가기초로 사용될 수 있음
  - 공제방법에서도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단위당 거래가격이 사용될 수 있음
  - 제3국에서 수집한 비용, 원재료 가격정보도 계산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음
  -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가격과 동등한 가격
  - 전문가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

## 2) 관세(사후) 심사제도(Post Audit)

- 세관의 사후심사는 기업이 세관의 통관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회계, 기록, 영업 등 기타 제반 무역관련 정보에 대한 세관의 심사활동(Examination)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세관직원은 수출입자의 사무실, 선박대리점 사무실 등은 물론, 다음의 관련사무실에 대해서도 조사활동을 수행하게 됨
  - 수입/수출자
  - 선사 및 선박대리점
  - 상기 대리인 및 관계인
- 모든 수출입관련 기업 및 관계자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문서, 장부 등 기타 관련서류를 자체사무실 및 보관시설에 정히 보관할 의무를 짐

- 만약 기업이 폐업을 하는 경우도, 해당기업, 관계자, 정산인은 모든 관련서류를 폐업일로부터 2년 동안 당해 기업 사무실 또는 정산인 사무실 등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히 보관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관련서류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여타장소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관의 사후심사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이의 위반시는 태국관세법 제113조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됨
- 사후심사 절차는 담당세관직원이 사후심사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통보하면서 시작하여 사후심사 종료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송부함으로써 종료됨
- 담당세관직원은 심사대상자의 사무실에서 실시하게 될 사후심사 날짜,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세관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최소한 10일 이전에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사후심사 담당직원은 사전통지 없이 조사에 임할 수도 있음
  -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세관 담당직원은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심사관련 공문 원/사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원본은 심사대상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심사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인지의 증거물로 보관함
  - 담당직원은 심사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동 기간 안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은 본부에 추가 10일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심사가 종료된 후, 어떠한 혐의점이나 범칙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담당직원은 당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본인 및 심사대상자가 합동 서명토록 하고, 차후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서 원본은 담당직원이 보관하며, 사본은 심사대상자에게 주어야 함
  - 심사 결과 관련법규(관세법 등) 위반 혐의 및 범칙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담당자는 추가조사를 위해 관련서류 일체를 사무실로 인취하며 이때 심사대상자는 제시한 모든 관련서류에 서명을 하여야 함
  - 사후심사 담당직원은 심사대상자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인취한 날 또는 서류개봉을 위해 심사대상자의 대리인이 세관조사실에 출두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든 서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송부함

### 3) 관세환급제도

- 관세법 제19조에 의한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기 납부하였거나 예치한 담보금 즉, 수입관세, 소비세, 시세 등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 혼합, 조립 및 포장을 완료하였을 경우에 제조공식에 따라 관세 환급액을 결정함
  - 이때 제조의 시점은 원자재의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의 환급 신청은 관세청에 예치한 담보의 종류가 현금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이나에 따라서 달라짐

### 4) 관세보전제도

- 관세보전은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 장비, 스페어파트, 원료 및 기타 형태의 에너지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을 “세금증명”의 형태로 보상하여 줌으로써, 수출자가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내지 않고 제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임
  - 수출물품에 관한 관세보전법(The Tax and Duty Compensation of Exported Goods Produced in the Kingdom Act B.E. 2524)에서는 관세보전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에서 관세보전의 세율과 대상 물품, 보전받을 수 있는 조건 및 보전허가 시기 등을 정함
- 세금보전 신청자는 제조자 여부에 상관없이 수출자이면 되나 해당물품은 반드시 국내에서 제조되어야 함
  - “제조”는 조립, 공정 또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행위를 말함. 그러나 그러한 물품의 수출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고 그 대금이 국내로 송금되어야 함
  - 수출행위가 상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 보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국제차관 등의 지원을 받거나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면세 특권이 있는 외교관 등 특혜 해당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보전 대상으로 취급함

□ 관세 보전을 받을 수 없는 수출은 다음과 같음

- 태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
- 광물과 관련한 법률에 의한 광물
- 수출세 또는 수출입기금을 내야 하는 물품
- 관세보전위원회가 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정한 물품

#### 다. 태국의 관세율 정책<sup>74)</sup>

##### 1) 관세율의 단계적 인상(Tariff Escalation)

□ 태국의 Tariff Escalation은 원칙적으로, 가죽제품, 의류, 화학제품, 비금속생산품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특히, 대상 품목군별 완성품(식품, 의류, 가죽제품, 목제품 등)을 중심으로 고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태국은 1998년 12월 이후 별도의 관세율 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세율 구조 개편작업을 추진하여 모든 물품을 기초 원재료, 중간 제품, 완제품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기초 원재료에 대해서는 5% 이하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반면, 완성도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토록 함으로써, 국내산업 보호 및 자국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관세율을 운영하고 있음

---

74) 이는 관세율 장벽으로 인식되는데, 자국의 산업보호 등을 위해서 기본적인 관세율 이외에 추가적으로 특정상황이나 물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른 관세율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임

## 2) 할당관세(Tariff Quotas)

- 2006년도 기준 태국의 할당관세 품목 수는 전체 품목 수의 1%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품목들은 모두 농산품과 관련된 것임
  - 태국 관세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오직 WTO 양허세율만이 실행세율이 될 수 있고, 주로 종가세율이 적용됨
  
- 2006년에 태국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세에 대한 할당량을 기존의 302톤 규모에서 37,978톤 규모로 대폭 늘리고, 동시에 soya bean, soya bean cake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량도 무제한으로 확대함
  - 일부 품목의 경우는 할당물량 이내의 관세율과 할당초과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가세율 대신 특별세율을 적용하기도 함
  - 특히 태국의 경우는 대체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유, 크림, 감자, soya bean, soya bean cake 등의 경우는 기대와는 달리 할당물량을 현저히 초과하기도 함
  
- WTO의 보고서에서는, 태국에서의 할당물량 접근은 종종 애매하고, 명확하지 않은 방식에 의해 관리 또는 이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함
  - 태국 정부는 할당물량에의 접근이 전담위원회에 의해 공정하고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아직 할당의 필수서류인 수입허가서가 특정 생산업자에 한해 주로 발급되는 경향이 존재함
  
- 원칙적으로 할당관세는 재무부장관의 조치 및 AFTA 특혜조치로 ASEAN국가로부터 무제한 공급이 가능한 특정물품, 예를 들면 Palm Oil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음

###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 태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자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반덤핑 관련 업무는 상무부에서 주관하며 덤핑, 보조금, 피해, 반덤핑 수단, 상쇄 조치 등에 대한 결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도 관련규정에 의함
  -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는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국(The Department of Foreign Trade: DFT)의 제소에 따라 시작되고, DFT는 제소업무는 물론, 피해 조사 및 동 결과를 덤핑방지위원회(The Committee on Dumping and Subsidy)에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
  
-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2002년 이후 태국의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는 계속 감소함
  - 2002~2006 기간 중 개시된 조사 건은 주로 기초금속 및 관련제품, 화학제품 등이며, 이들은 대부분 중국, 한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제품들임

### 4) Safeguards

- 태국의 Safeguards는 수출입법(Import export Act) 제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별도 상무부의 Safeguard Measures(고시) 등에 의해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 Safeguards 조치는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2002년 1월 31일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 BOI)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 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철강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부과금(Surcharge)을 부과한 사례가 있음

## 라. 태국의 비관세장벽

- 최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체제 출범 이후, 전통적인 관세에 의한 무역장벽 이외의 무역관련 절차, 제도 및 규제, 즉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음
  - 반면, 이러한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들은 국가간 무역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표준, 인증 등 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관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등 개별 기업이 직접 대응하여야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됨

### 1) 표준 및 품질표시

#### 가) 태국의 독자적 인증제도

- 국제표준(IEC)의 인증 시험소에서 받은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인 태국의 표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함에 따라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정식 수입 전에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 행정적인 문제로 신제품 출시 등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
  - 분야로는 전자제품, 비료, 의약품 등의 전품목이 해당됨
-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농산품,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 의료용품 등 10개 카테고리 85개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 산업표준원(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TISI)이 정한 표준공업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 산업표준원의 규격을 따를 때만 정부 조달상 특혜를 주고 있음
  - 다만, 산업표준원에서 인정한 CE마크 등 일부 외국인증 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제출과 함께, 수입 통관시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님
    - 수입시 검사는 한 번이 아닌 매번 수입시마다 검사를 요구해 수입 절차를 번거

롭게 하기도 함

- 특히, 태국 내 품질인증 관련 규정상 강제기준에 속하는 제품의 수입시는 반드시 산업표준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 제출과 더불어 샘플 테스트가 필수적으로 시행됨

- 한국 전자제품 수출업체의 경우, 한국에서 'CB Test'를 기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표준원에서 동 인증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샘플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하고, 태국으로 비료 수입시 일반 타입의 비료가 아닐 경우도 농업화학국(Agriculture Chemistry Department)에서 별도의 테스트 및 등록절차가 필요함
  - 테스트 기관의 수가 부족해 1차 검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약 2개월이나 소요되고, 동 테스트 후에도 농업화학국 내 위원회의 재승인 절차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따라서 품질 테스트 및 등록에는 총 3~4개월의 추가 시일이 소요됨
  - 예로서, 신제품 수입 시마다 공업표준규격을 재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는 통상 최소 3~7일의 기간이 소요됨

#### 나) 태국의 Labeling(Mark)제도

- 태국의 Labeling(Mark)제도는 우리나라의 KS제도와 같은 표준규격제도로서 11개 산업, 74개 품목으로 그리 많지는 않으며 동 제도의 운영 목적은 소비자 보호의 일반적 취지 외에, 사실상 태국 상품의 품질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Labeling(Mark) 관련 업무는 태국 상무부 산하 산업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신청시 소요되는 기간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개월 내에 종료됨
  - 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체로 30만원 선에서 가능하며 마크는 둥근 원안에 마름모와 십자(+)가 표시된 특수 마크를 사용함
  - 상표에는 제품이름, 설명, 순중량 또는 수량과 제조일 및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야 하고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명과 주소, 제품 또는 상표등록번호도 명기하여야 함

- 식품류의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전에 원산지 정부 또는 인정받은 민간연구소가 발급한 식품분석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5개의 원산지 라벨과 태국어 라벨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음
- 이 제도는 태국의 산업생산기준법(The Industrial Product Standard Act)에 의거한 장난감, 게임, 스포츠용품 및 관련부품, 액세서리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이며 산업표준원에서 건강, 안전, 환경보호 등 성능검사 및 인증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2) 식품안전

- 태국 역시 식품의 위생과 안전문제와 관련 비관세장벽을 도입, 운영하고 있음
  - WTO SPS협정(위생검역협정)에서는 동 협정의 적용에 있어 기준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협성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에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태국으로 곡물, 과일 식품 및 그 가공품이 수입되는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 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함
  - 식품 수입 허가에는 통상 약 300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매 3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 성분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과정도 설명하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편임
- 의약품 수입허가는 성분분석, 검사 등 모든 과정이 종료되기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수입자는 별도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이는 매년 갱신하여야 함
  - 1999년 11월에 발효된 의약품에 관한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일부 절감시켰으나 여전히 이전 관행은 계속되고 있음
  - 일반 의약품 수입검사에는 1,500바트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태국에 처음 소개되는 의약품의 경우는 통상 40,000바트의 검사비용이 소요됨

- 화장품은 1974년에 시행된 화장품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허가는 물론, 라벨을 포함한 완제품에 대한 성분 등이 식약청에 등록되어야 함
  -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샘플, 제품공식, 태국 화장품 규정을 준수한다는 보증서와 함께 대표자가 태국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의료장비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출국 선적에 앞서 태국 식약청에서 수입 및 판매허가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수량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복잡한 수입절차 때문에 대다수의 수출기업은 태국 내 수입업체에 수입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게 됨
  - 수입자 또는 바이어 측에서 태국 내 각종 수입절차 및 판매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위험부담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봄

### 3) 환경보호

- 최근 기술표준의 무역장벽 중 환경보호 비관세장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환경 라벨링(Eco-label)과 관련 WTO TBT 협정에서는 상품 자체만이 아니라 공정 및 제조방법 등 영역에 대해서도 동 협정이 확대 적용됨
  - 또한 상품의 생산과 소비 및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환경상의 위해 여부에 대해 동 협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 태국의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 다음의 조치 등을 취하고 있음
  - 보건부는 국민의 생명, 건강,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체 훈령 및 규정의 형태로 과일, 곡물 등에 대한 살충제의 유형 및 잔류수준 허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상무부 산하의 대외무역국, 산업부 산하의 산업업무국(The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에서는 국내 환경 및 공공보건 보호의 명목으로 자체규정을 통해 스크랩, 스크랩 폐기물, 사용 또는 미사용된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폐타이어 등의 수입을 위해서는 동 기관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상무부에서는 공공보건 및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50cc 이하의 오토바이 중고 엔진, CFC를 사용하는 가정용 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공공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중고 자동차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그리고, 상무부 내 육상교통국(The Department of Land Transport)에서는 중고 오토바이 수입에 대해 공공안전 및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엔진배출가스 검사서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건강 및 생명보호를 명목으로 별도 수입허가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무부 예술국(The Department of Fine Art)에서는 진품 고가품 등의 불법 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동 물품의 재질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기관에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4) 수출입부과금

- 태국의 경우 ‘국제무역진흥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일부 수출입물품에 대해 수출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음
  - 물품수출입법 제5조에서는 경제안정, 공공이익, 공중보건,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선의를 위해 상무부는 내각의 승인에 따라 수출입부과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주 및 종류에 대한 요건을 지정하여 관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동법 제6조에서는 수출입부과금의 부과 및 그 요율에 대한, 수정,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부과금 납부절차 등은 상무부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수출입부과금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재무성 국고에 편입되지 않고 국제무역진흥기금에 직접 입금됨
  - 태국 정부는 국제무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상무부 내에 ‘국제무역진흥기금’을 설립하고 수출입부과금을 동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음
  - 그리고 동 기금의 집행과 배분에 대한 규칙과 절차는 내각의 승인에 따라 상무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제21조에서는 수출입부과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처벌조항도 규정하고 있음
  - 동법에서 규정하는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부과금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부당한 조치를 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또는 2가지를 병행하여 부과받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

#### 5) 정부조달

- 태국의 조달계약에 관한 기본법인 The Regulation on Procurement 1992(B.E 2535)는 '92년 총리령으로 공고됨
  - 이는 당초 '79년 제정 이후 '80년, '83년, '84년 및 '85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고, 동법에서는 태국의 조달관련 기본 법규로서 조달절차, 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음
  - 또한, 태국은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태국산 제품 및 태국인 사업육성 진흥지침이 '92년 총리령으로 발표되었고, 동령에서는 태국산 제품의 입찰구매 방법, 위원회 구성 방법, 가격협상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조달 관련 법규에서는 내국(태국) 입찰참가자에게 외국 입찰참가자에 대해 5%의 입찰가격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고, 입찰과정에서 발주처가 언제든지 기술 요구조건 미달 등을 이유로 입찰을 거절,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 정부 입찰조건에는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 목적으로 입찰 조건에 내국산 원재료나 부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 단일 입찰 3억바트(약 U\$745만) 이상의 경우 연계구매거래(Counter-trade transaction)를 요구하고 있어, 외국인의 태국 정부조달 시장진출은 쉽지 않은 실정임
  
- 태국의 경우,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 비회원국으로 가입을 미루고 있어, 국제협약에 특별히 구속을 받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지방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까지도 국내조달이 가

능한 사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태국업체에 기회가 제공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 이는 대부분,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대동소이하게 적용됨

#### 6) 연계구매제도(Counter Trade Policy)

- 태국은 정부, 국영기업 등이 3억바트 이상의 물품 및 공사입찰을 발주할 때에는 낙찰자에 대해 연계구매 의무(입찰금액의 50%)를 부과하고 있음
  - 태국정부는 2000.5월 연계구매정책 강화를 위해 대상 입찰규모를 5억바트에서 3억바트로 인하한 바가 있음
- 입찰참여자자는 응찰시 연계구매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무부의 국제무역국과 연계구매계획을 확정된 후에야 낙찰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음
- 상무부는 연계구매 대상물품으로 31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음
  - 수출경쟁력이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입찰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 3. 통관환경 평가지표 적용사례

#### 가. 개요

- 앞선 Ⅲ장에서 살펴본 통관환경 평가지표는 10개의 평가요소와 각 평가요소별로 2~5개의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3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이에 이 절에서는 아래와 같은 평가요소에 대해 태국의 적용사례를 평가지표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각 평가지표별 평가내용을 간략히 정리함

〈표 IV-8〉 평가요소와 가능한 평가지표

평가요소	가능한 평가지표
1. 투명성	1-①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1-②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1-③ 통관과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1-④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1-⑤ 국제협약 가입상황
2. 공정성	2-①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2-② 수입물품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3. 적법성	3-① 통관과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3-② 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4. 관세장벽	4-① 수입/수출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율의 수준 4-② 관세의 부과대상, 부과구조, 부과방법의 적정성 4-③ 감면세율 및 관세환급률 수준 4-④ 관세의 징수유예 및 보세 허용 정도
5. 비관세 장벽	5-① 일반적 통관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및 행위 정도 5-②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5-③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6. 효율성과 효과성	6-① 통관절차의 합리성과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6-② 통관절차 및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6-③ 통관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6-④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6-⑤ 통관관련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6-⑥ 통관관련 업무량과 담당조직, 담당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6-⑦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6-⑧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6-⑨ 통관 단위업무 및 전체 통관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6-⑩ 불법물품의 적발실적 6-⑪ 평가대상국에서 수출한 불법물품이 외국세관에서 적발된 실적
7. 반부패	7-①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7-②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8. 권익보호	8-①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8-② 통관관련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9. 서비스	9-① 당해 통관절차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9-② 통관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10. 통관환경 개선노력	10-① 세관당국의 통관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10-② 통관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10개 요소	38개 지표

주: 이 표는 Ⅲ장의 지표개발에서 제시된 표이나, 각국 지표 적용사례시 대비하기 위하여 중복하여 예시한 것임

- 각 평가요소별로 태국의 통관환경에 적용하였을 때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개요에서 간략히 개괄하고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봄
  - 각 평가요소는 투명성, 공정성, 적법성,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효율성, 반부패 권익 보호, 서비스 및 통관개선노력으로 10개 요소이며 이를 태국의 통관환경에 적용함
  
- 먼저 투명성과 관련하여 태국은 관세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왕령인 관세율령 (Customs Tariff Decree, 1987)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 형식으로 공개함
  - 그러나 태국세관은 관세율 변경시 변경내용만을 고시하거나 사안별로 별도 고시하고 있어서 다분히 행정편의적 요소가 많음
  - 이의 개선을 위해 태국은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 관세율령 사이트를 통해 품목분류 해석의 일반통칙과 각종 관세율 및 감면·면세 대상 등을 고시하고 있으며, 최근의 IT활용도가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한 조치로 여겨짐
  -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 세관이 다양한 관세율 구조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년 통관편람을 작성하는 등의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도 태국은 법령·규칙 및 세부내용의 공개에 대해서는 미진한 측면이 존재함
  
- 두 번째 평가요소인 공정성과 관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을 지표로 살펴보면 태국은 전체 관세품목 중 73.7%를 최혜국대우품목으로 양허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어서 국제협약에 비춰서 형식적인 시스템은 갖추고 있음
  - 그러나 국내의 제도적 시스템은 내각의 제도승인을 통해 관세율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어 최혜국대우원칙에 의거한 관세율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불투명성이 내재되어 있음
  
- 세 번째로 적법성 평가요소와 관련해서는 통관과정에서 평가대상국과 협정의 일치 정도 및 협정위반 정도를 평가지표로 포함함

- 태국의 경우는 품목분류에 있어서 국제적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독자적 품목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며, 세관사후심사제도 시행과정에서 국제규범이나 관행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독자적 품목분류체계는 국제적 규범과 불일치해서 무역업자들에게 혼란을 주며,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행정관청에서 대부분 벌금부과 등으로 해소하고 있어서 상당한 무역장벽의 요소가 되고 있음
  - 또한 세관사후심사제도는 성실납부 확인과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협정과정에서 적법하게 수행되는 제도이나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심사시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담당자들에게 보조금을 주어 국제무역 관행 및 규범에 왜곡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네 번째 평가요소인 관세장벽을 살펴보는 지표로는 관세율 수준, 부과구조, 감면세율 및 징수유예 등이 평가되고 있음
- 태국은 과거 많은 품목에서 고관세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WTO의 양허일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꾸준히 인하하고 있으며, 평균관세율을 점차 낮추고 있고 2009년 현재 평균관세율이 10.3%를 나타내고 있음
  - 그 외 중과세하는 관세율의 비중도 점차 낮추고 있으며 불합리하게 높은 비종가관세율은 대폭 인하하고 있으나 세율변경고시 및 WTO에 제출한 비종가세율 품목이 11.6%에 그치는 등의 불투명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임
  - 기타 관세환급시 행정절차상의 복잡성, 전산화 미비의 상황이 발생하여 환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관세행정 효율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음 평가요소는 비관세장벽인데, 태국의 비관세장벽은 독자적 인증제도, 라벨링제도, 식품안전, 환경보호, 수출입부과금, 정부조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비관세장벽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독자적 인증 제도로서 이는 국제표준(IEC)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태국의 표준인증을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그러나 이 제도는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절차적, 행정적인 과정도

복잡하여 수출입 과정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

- 또한 이 제도는 국제무역 원활화를 위해서도, 자국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도 제약 요소로 작용하므로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을 일치시키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절차 등의 불합리한 요소는 개선이 요구됨

- 그 외 식품안전에 대한 장벽도 상당한데, 곡물, 과일 식품 및 그 가공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는 GMO 수입국 및 자국의 산업보호<sup>75)</sup>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는 각국간 입장의 차이로 인정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통관과정에서 절차의 복잡성과 행정적 불필요한 요소는 개선할 점으로 보임

□ 통관절차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이에 해당되는 지표로는 통관절차의 국제규범 준수 정도에서부터 통관절차의 자동화 정도, 단일창구 구축, 통관기법의 고도화를 포함하여 인력의 전문성 및 무역업체들의 협력체계까지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됨

- 우선 통관절차의 국제규범 준수의 정도를 살펴보면 세관당국인 관세청 수출입규정집(Danapa Paperless)에 나타난 내용에서는 수입통관 및 수출통관의 경우 전 과정에서 전자방식을 이용하고 세관통과시간도 매우 신속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실제의 애로사례나 통관시간을 판단할 때는 규정집의 적시내용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업무 절차상의 복잡성, 직원의 업무미숙, 전산화 미비가 많이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세관에서 세금납부 후 현품검사과정에서 정정요인이 발생하면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회피로 간주하여 벌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현상이 존재함

□ 다음의 평가요소는 반부패인데 이의 지표로는 금품이나 향응의 정도나 규모 및 이를 예방하는 제도의 운영과 이의 적정성 등을 적용하고 있음

75) GMO 수입국들의 입장은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담보할 때까지 기존 식품과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견지함.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과 소비자들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GMO 식품이 그렇지 않은 식품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임

- 반부패의 정도나 규모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다만 이를 예방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오히려 부패를 조장하는 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를 여타 무역국에서 제기함
  - 구체적으로 태국세관당국은 밀수 및 허위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고액의 추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선의 공무원들이 이를 경감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각종 부조리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최근 이 문제는 미국 상공회의소(AMCHAM)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외 무역단체간에 이슈화가 되기도 하였는데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는 태국의 관세당국에 동 제도의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해 별도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다음의 평가요소는 권익보호인데, 세관당국의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불복절차의 접근 용이성 등이 평가지표로 적용됨
- 세관당국은 그간에 독자적 품목분류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일치의 문제를 무역당사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2008년 7월 이후 세번분류, 세번 및 세율 등을 사전회시하여 주는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세관당국이 그간의 무역당사자들의 불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지만, 사전회시해 주는 데 약 1~3개월이 소요되어 제도의 원 취지를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음
  - 그러나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를 시행으로 그간의 세번분류상의 오류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데, 이는 주로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지식의 결여, 관련자료의 부족, 업무담당자의 착오, 업무대행자의 무관심/실수, 법규준수 의무의 관리·감독 기능 미흡 등에서 유래되고 있어서 태국세관당국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됨
- 다음은 서비스와 관련된 평가요소로서 통관절차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 및 편의시설 제공 정도를 지표로서 제공하고 있음
- 태국관세청은 관세율변경 고시 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관세청 홈페이지에 ITD(Integrated Tariff Databas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태국 관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음

- 또한 관세청은 수입업자들에게 통관절차와 관세율에 대한 상담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Customs Clinic'을 2009년 9월 7일 개설함
  - 이는 태국의 세관당국이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한 세금징수에서 벗어나 무역증진으로 향하는 큰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판단한다는 변화로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임
  - 더불어 관세청의 이러한 무역업무 효율성 증가 노력은 태국 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회복에도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마지막 평가요소는 통관환경 개선 노력으로서 세관당국의 문제점 파악 정도 및 문제 해결의 적극성을 평가지표로 포함하고 있음

- 태국의 세관당국은 세관행정에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문제파악에 미진한 면이 많음
  - 구체적으로 관세환급시 까다로운 절차와 함께 실무적으로 환급업무의 수행 속도가 느려서 시간적·행정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함에도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또한 정부입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입찰공고를 안내하는 Web Site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 운영과정에서 태국어로만 운영하여 형식적 해결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세관당국이 품목분류 세액산정상의 단순오류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점검으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진신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성을 나타내기도 함
  - 태국세관의 동 프로그램 운영은 고무적 현상이나 여전히 제도운영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서 실질적 개선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 이 절에서는 10개의 평가요소별로 각각의 평가지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절에서는 각 지표별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나. 각 지표별 적용사례

1) 투명성

1. 투명성	1-①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1-②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1-③ 통관과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1-④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1-⑤ 국제협약 가입 상황
--------	--

1-①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 태국은 관세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왕령인 관세율령(Customs Tariff Decree B.E. 2530, 1987)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 변경은 태국의 재무부장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형식을 취함
  
- 그 외 관세율의 변경이나 관세율표 등의 고시는 연도별 통합 관세율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관세율 변경시에만 고시에 의해 사안별로 공표함
  - 그러므로 실무수행 과정에서는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관세율 변경 고시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함
  -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양한 관세율 구조 등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년 ‘HS품목별 수출입통관 편람’을 작성하여 각종 관세율 변동사항, 수출입 제한사항, 관련 법규정 변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함
  
- 평가내용: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태국세관은 관세율 변경 시 변경내용만을 고시하거나 사안별로 별도 고시하고 있어서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요소가 많아 이의 개선이 요구됨

## 1-②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태국관세청은 관세율변경 고시 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관세청 홈페이지에 관세율령(ITD: Integrated Tariff Database) 사이트를 운영하여 태국 관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ITD 사이트에는 품목분류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수입관세율, 수출관세율, 관세감면 및 면세 대상품목, 화학물질목록, 철강제품목록 등이 명시되어 있고, 관세율 검색 사이트에서는 HS Code별, 연도별, 국가별, 관세율 유형별(기본, 실행, 협정세율 등) 통합검색이 가능함
  
- WTO는 태국의 세관행정은 명확하지 않은 방식에 의해 관리 또는 이행되고 있음을 지적
  - 일례로 태국정부는 제반 수출입 관련 국제규범에 맞추어 운영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 할당의 경우는 필수서류인 수입허가서를 세관이 아닌 특정 생산업자가 발급하는 경향이 지적되었고
    - 물품신고시 많은 자료요구, 세관별·직원별 해석이 상이하여 통관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낮다는 사실이 지적됨
  
- 평가내용: 태국은 최근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율령 사이트를 통해 품목분류해석의 일반통칙 등을 고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규제내용의 공개 및 제도운영과정의 공개가 미진하므로, 관세율령 및 제반 규제내용에 대한 각종 자료를 영문으로 발간하여 수출입 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개선노력이 요구됨

## 1-③ 통관과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태국세관에서는 많은 물동량을 공항만에서 원활하게 처리하고 물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의 접수와 확인 등을 전적으로 수입자의 성실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수입자는 스스로 세관에 신고한 내용

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밀수 및 허위신고시 포/보상금 지급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도 운영시 자의성이 많아 문제가 지적됨
  - 동 제도의 취지는 세수확보 및 근무의욕 고취 등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세관직원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세관직원들이 실적에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이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잘못된 주장 또는 조치마저도 번복을 기피함으로써 민원 마찰의 근원이 되기도 함
- 태국은 전체 관세품목 중 73.7%를 최혜국대우(MFN) 품목으로 양허하고 있으나 전체 품목의 1/4가 비계상품목에 포함되고, 이에 대한 태국의 실행관세율은 내각의 승인 하에 언제든지 기본관세율 수준까지 조정될 수가 있어 이는 관세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됨
- 평가내용: 세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번복이 발생하고 있고, 자진신고제도라는 효율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의 모든 책임을 수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어서 통관절차상 비합리적이고 예측불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므로 개선이 요구됨

#### 1-④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태국 세관법규상 서류심사를 완료하게 되면 관세 등 제세를 지불하고(관세 지불 또는 BOI에 의한 면세) 난 후에 실제 화물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금납부 후 현품 검사과정에서 업무미숙 또는 정보부족으로 인해 세번분류상의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수입자가 세번분류상의 착오를 최소화하고, 서류심사과정 또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세관에 화물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여도 세관에서 이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서 관세 등 제세 납부 이전에 적용 세번 및 세율

등에 대한 세관의 사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임

- 평가내용: 현품검사과정에서 세번분류상의 착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도 운영하지 않고 세관의 적극적 응대도 없어서, 관세 등 제세납부 이전에 적용 세번 및 세율 등에 대한 세관의 사전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됨

#### 1-⑤ 국제협약 가입상황

- 태국은 WTO회원국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 협정관세율, 탄력관세율, 할당관세율이 사안에 따라 적용됨
  - 기본세율은 다자 또는 양자간 협정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에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다자간 협정세율과 FTA에 적용되는 양자간 협정세율로 적용됨
-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은 그동안 여러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지금까지 체결한 FTA 현황은 아래와 같음
  - Thailand-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TAFTA)
  - Thailand-New Zealand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TNZCEPA)
  - Japan-Thailan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JTEPA)
  - Asean-China Free Trade Agreement(ACFTA)
  -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AKFTA)
  - 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AIFTA)
- 그 외 태국은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과 관련하여서는 비회원국으로 가입을 미루고 있어, 국제협약에 특별히 구속을 받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지방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까지도 국내조달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우선하여 태국업체에 기회가 제공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음

○ 이는 대부분, 외국 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대동소이하게 적용됨

□ 평가내용: 태국은 WTO회원국으로 가입 태국을 포함한 ASEAN을 통해 무역장벽 등을 해소하기 위한 FTA를 추진하여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Asean-Korea FTA에서도 타 회원국보다 가장 늦게 협약을 체결하였고, WTO 정부조달협정과 관련하여 비회원국으로 남아 있어서 국제협약체결에서 타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2) 공정성

2. 공정성	2-①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2-② 수입물품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

### 2-①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sup>76)</sup>

□ 태국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농업, 어업,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외국인에게 제한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고용허가를 받아야 취업이 가능함

○ 그 외 외국인은 주식에 대한 소유가 제한되는데 주식시장에서 경영권에 상관없는 외국인 주식거래는 허용되고 있으나 업종별·기업별 주식소유한도가 존재함

○ 그 외 외국기업이 태국주재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개설허가 취득이 필요

○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투자청의 투자장려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취득이 인정되기도 함

### 2-② 수입물품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2008.6월부터는 현행 HS2007 분류시스템(AHTN)을 적용(2007.1월부터 소급)하여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체 관세품목 중 73.7%를 최혜국대우

76) 수입물품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내국민대우상의 문제이므로 이 항목에서 적시함

(MFN) 품목으로 양허하고 있음

- 여기에는 모든 농산품목이 포함되고, 비농산품의 경우는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의 69.5%가 종가세, 특별세, 대체세 등의 형태로 계상됨
- 그리고 태국은 ITA(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회원국으로서, 일부 IT생산품에 대한 협정관세율(0%) 계상을 2005.1 마무리하였는데, 이를 위해 대상 IT생산품의 3/4는 2000.1까지, 기타 품목은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2005년까지 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한 바 있음

□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으로는 소금, mineral fuels, chemicals, fertilizer, 펄프, 운송장비, 고무생산물, 철강 등이 존재함

- 실행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은 경우, 또는 실행세율이 특별세율이고 기본세율이 종가세율일 경우는 낮은 세율 우선 적용의 원칙이 적용이 됨
- 그러나 전체품목 수의 1/4이 비계상품목에 포함되고, 이에 대한 태국의 실행관세율은 내각의 승인하에 언제든지 기본관세율 수준까지 조정될 수가 있어 이는 관세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됨

□ 평가내용: 태국은 전체 관세품목 중 73.7%를 최혜국대우품목으로 양허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어서 형식적인 시스템은 갖추고 있으나, 국내의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불투명성이 내재되어 있음

### 3) 적법성

3. 적법성	3-① 통관과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3-② 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

#### 3-① 통관과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 태국 관세청은 2000.1.1일부터 관세부과기준인 과세가격에 대한 평가방식으로 WTO/GATT 신평가기준을 사용함

○ 이 평가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 국제공통 적용의 평가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태국은 WCO의 6단위 HS Code system을 기본으로 하고, 동 System에 2자리를 추가하여 별도 운영함에 따라 8자리 단위의 독자적 품목분류체계(the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AHTN)를 적용하고 있음

○ 태국은 아세안 공통의 8자리 세번 분류에 단지 통계 목적의 3자릿수를 추가함으로써 총 11개 자릿수의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음

### 3-② 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세관사후심사시에 관세 등 제세액의 성실납부 확인을 위해 제세액 산정의 정확성, 세번분류의 적합성 여부, 수출입제한 여부 등이 주로 심사대상이 됨

○ 사후심사의 중점관리대상은 주로 다국적기업, 별도의 대금결제 거래, 특수관계의 거래, 상대적인 저가신고업체 등이 됨

○ 이에 태국당국은 세수확보의 극대화 또는 독려의 수단으로 추징 또는 벌금액의 일정분을 심사업무 수행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이는 재정확보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심사업무 담당자들의 실적확보에만 치중하여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어 국·내외 무역관계자들로부터 국제무역 관행 및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함

□ 평가내용: 태국의 세관사후심사제도는 성실납부 확인과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협정과정에서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는 제도이나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심사시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담당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실적확보에만 치중하여 과도하고 자의적인 요소가 많아 국제무역 관행 및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의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4) 관세장벽

4. 관세장벽	4① 수입/수출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율의 수준 4② 관세의 부과대상, 부과구조, 부과방법의 적정성 4③ 감면세율 및 관세환급률 수준 4④ 관세의 징수유예 및 보세 허용 정도
---------	--

## 4-① 수입/수출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율의 수준

- 태국은 통일상품 분류에 관한 협약<sup>77)</sup> 가입국으로, 2008년 7월 개정된 관세율표는 HS 8단위 품목분류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WTO 자료에 따르면 동 개정 관세율표는 2008년 현재 총 8,301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7년 1월부터 아세안 회원국의 일환으로 HS 8단위 분류기준인 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AHTN) 분류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세율표상의 품목 수는 2008년에 총 8,301개로 증가됨
- 태국의 관세율은 법정관세율, 협정관세율 및 할당관세율 등으로 구성됨
- 법정관세율 및 실행관세율은 태국이 회원인 다자 또는 양자간 협정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에 적용되고, 협정세율은 WTO회원국에 적용되는 WTO협정세율과 ASEAN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협정세율 그리고 호주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간 협정세율 등이 있으며, 설탕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율이 적용됨
- ASEAN국가별 협정관세율 체계(2008기준)를 살펴보면 관세의 종류 및 수준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데 태국이 계상한 ASEAN 협정관세율 품목 수는 총 8,301개로 말레이시아의 12,331개 품목보다 다소 적은 수준임
- 5% 이하 품목비율은 99.8%로 말레이시아(99.5%), 인도네시아(99.9%)와 비슷하며, 0% 관세율 비율은 80.0%로서 인도네시아와 동일한 수준이나 캄보디아(6.8%),

77)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and Coding System: HS

미얀마(4.9%)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수는 13개 품목으로 말레이시아 32, 필리핀 76개 품목과 비교하여 다소 적으며, 캄보디아는 5% 이상 관세율 품목이 무려 3,772개나 되며, 그 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라오스는 5% 이상 관세율 적용품목이 없음
- 민감 품목으로는 필리핀이 19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고 있고, 라오스는 199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태국의 경우는 민감품목이 없음

〈표 IV-9〉 예시: ASEAN 국가별 협정관세율 체계

국가	총품목 수	계상(IL) 품목 수	관세율 5% 이하		관세율 0%		5% 이상	일반 제외 품목	민감/초민감 품목	참조(AHTN)
			품목 수	%(IL)	품목 수	%(IL)				
브루나이	10,702	9,924	9,924	100.0	8,472	85.4	0	778	0	2002
인도네시아	8,732	8,627	8,620	99.9	6,900	80.0	0	96	0	2007
말레이시아	12,331	12,231	12,169	99.5	10,112	82.6	32	96	0	2007
필리핀	8,873	8,827	8,751	99.1	7,321	82.9	76	27	19	2007
싱가포르	8,298	8,298	8,298	100.0	8,298	100.0	0	0	0	2007
태국	8,301	8,301	8,288	99.8	6,643	80.0	13	0	0	2007
캄보디아	10,689	10,454	6,682	63.9	707	6.8	3,772	181	54	2002
라오스	8,298	7,878	7,878	100.0	5,783	73.4	0	221	199	2007
미얀마	10,689	10,615	10,611	100.0	524	4.9	4	51	23	2002
베트남	8,300	8,099	8,009	98.9	4,547	56.1	90	201	0	2007

자료: World Tariff Profiles 2008(WTO)

□ 그 외 태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여 자국 내 관련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2002년 이후 태국의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는 계속 감소하여 왔으며, 2002~2006 기간 중 개시된 조사건은 주로 기초금속 및 관련제품, 화학제품 등이며, 이들은 대부분 중국, 한국,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제품들임

- 평가내용: 태국은 HS 기준에 의거하여 관세율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ASEAN 국가와의 협정관세율을 살펴볼 때도 품목과 그 외 제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4-② 관세의 부과대상, 부과구조, 부과방법의 적정성

- 태국의 관세 부과구조는 관세율표 개정작업을 자국 내 업종 간의 이해관계 및 갈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하여 상당기간 지연되었지만 대체적으로 WTO 또는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 등의 양허일정에 따라 원자재 및 국내 비생산품 등을 중심으로 수입관세율을 인하함
- WTO사무국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섬유, 의류, 화공품, 기초금속, 기구, 기계 등을 중심으로 1,981개 품목(전체 품목의 35.7%)의 관세율이 인하된 반면,
  - 절단된 식용고기, 용화 마그네슘, 코카인, 원료피혁, 철강평판, 기계, 기타 기구 부품/부속품 및 액체운반용기 등 8개 품목의 경우는 오히려 관세율이 인상됨
- 구체적으로 태국의 관세 부과대상을 살펴보면 법정관세율 부과대상, 실행관세율 부과대상, 특별관세율 부과대상 등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법정관세율(Statutory rates)
- 태국의 법정관세율 구조는 상대적으로 복잡함
    - 2006 관세율표에는 총 31개 등급의 품목별 종가세율(0~80% 범위)과 19등급의 특별세율, 그리고 158개의 대체세율(Alternative duty) 등을 가지고 있었음
    - ‘고율의 종가세 적용품목군’에는 민감품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차, 마른 양파, 오토바이 등 12개 품목(60% 적용)과 65% 적용의 고체형태의 설탕, 그리고 80% 적용의 자동차류 15개 품목 등이 포함됨
- ㉡ 실행관세율
- 특별 및 대체세율로 구성되는 비종가관세율(Non-ad valorem Duties)은 전체 대상품목 수의 22.5%를 차지함
    - 비종가세율에 해당하는 품목은 주로 농산품, 식료품, 플라스틱, 고무, 펄프,

종이, 섬유, 가죽제품, articles, stone 등이고, 이는 태국의 관세율표상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음

- 2006년 태국의 관세당국은 143개 AVEs의 견적을 WTO에 제출함으로써 다소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나, 동 견적은 전체 비종가관세율 대상 품목 수의 11.6%에 불과함
- 공개된 AVE 견적 자료에서는 가장 높은 상위 20개 관세율 중 3개 관세율이 비종가관세율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에는 87.7%의 조제 또는 저장 어류, 저민 고기와, 340.2%에 해당하는 ethyl alcohol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2003~2006 기간 중 태국 관세율표상의 비종가관세율의 단순평균은 20.5%에서 16.5%로 감축되어서 동기간 종가세율의 단순평균이 10.8%에서 9.3%로 감축된 것에 비하면 큰 비중으로 축소된 것임

㉔ 특별관세율

- 태국은 수입되는 특정물품에 대해 특별관세율(Special Duties or Surcharges)을 적용하여 특별부과금을 징구토록 하고 있음
- 예로서, quota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사료용 옥수수에 대해 톤당 180 Baht의 부과금을 징구하고, flour, meal, pellets of fish, crustaceans, mulluscs, 등에 대해서는 5%의 종가세율을 부과함
- 수입부과금은 종가세 또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되며 그 중 종가의 부과금은 특별관세율에 관세액을 곱하여 산정하게 됨

□ 태국의 평균관세율은 2009년도 10.6% 수준으로 2003년의 13%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HS그룹별 가장 높은 평균관세율은 식물성 생산품, 조제식품, 신발, headgear, 운송장비, 무기, 탄약류 등이 해당됨

□ 평가내용: 태국은 최근 WTO의 양허일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꾸준히 인하하고 있으며, 불합리하게 높은 비종가관세율은 대폭 인하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율변경고시 및 WTO에 제출한 비종가세율 품목이 11.6%에 그치는 등의 불투명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임

## 4-③ 감면세율 및 관세환급율 수준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여행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탑승수속과 동시에 공항 내 세관사무실을 방문하여 당해 물품과 함께 하기서류를 제시하여 환급대상물품 해당 여부 등에 대해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 외국인으로 당해연도에 태국에서 180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 태국에서 출항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나 승무원이 아닌 경우
  -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
  
- 태국은 전체품목의 18.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외 37.3%에 해당하는 품목은 5% 이하의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2003~2006기간 중 평균 관세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관세율을 나타내는 Domestic tariff peaks율은 3.9%로 변동이 없으나, 15% 이상 관세율을 나타내는 International tariff peaks율은 2003년 30.3%에서 2006년 25.2%로 다소 감소함
  
- 태국관세법에서는 재수출 목적의 수입품목에 부과된 수입관세에 대해, 소정의 관세환급절차를 거쳐, 수출시 수입업자에게 환급하여 주는 관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태국 세관의 관세환급 처리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관세환급신청 30일 이내에는 환급금을 지급, 결정토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일선에서는 관세환급 업무의 절차상의 복잡성, 직원의 업무미숙, 전산화 미비 등으로 환급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태국은 2003년 이후 양허율표상의 관세를 면제(Duty free)해 주는 무관세 적용품목 수가 4.1%에서 18.5%로 현저하게 증가함
  - 이는 주로 1%의 관세율 적용대상을 무관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IT 관련품목에 대해서 전면 무관세를 적용한 데에 기인하고 있음

- 무관세적용 대상품목은 주로 화학제품, 기초금속, 기계류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조치는 저율관세율(0~2%)의 비중을 2003년 21.4%에서 2006년 12.2%로 감소시키는 계기가 됨
- 태국의 무관세율은 최초 태국의 우루과이 라운드 적용시점에 비해 8배 이상 증가한 것임

□ 평가내용: 태국은 평균관세율을 점차 낮추고 있으며, 중과세하는 관세율의 비중도 점차 낮추고 있으나 관세환급시 행정절차상의 복잡성, 전산화 미비의 상황이 발생하여 환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행정효율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4-④ 관세의 징수유예 및 보세 허용 정도

□ 보세 허용 정도

- 검사 면제 대상인 경우
  -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번호를 창고관리인에게 통보하여 창고에서 물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직원은 해당 물품이 통관허가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 물품인지 확인
  - 물품이 통관허가증과 다르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세관 서비스 부서에 보고하여 즉시 검사 등 조치를 취함
  - 창고에서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면 세관공무원은 물품반출 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
- 관세율, 과세가액 및 물품검사가 필요한 경우
  - 수입자가 물품수령을 위해 수입신고서번호를 창고관리인에게 통보할 경우, 창고관리인은 동 물품이 세관의 물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 창고로부터 동 물품에 대한 검사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세관공무원은 그 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
  -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세관 서비스부서 공무원을 자동적으로 배정하여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율, 가액 및 물품검사를 완료한 후 세관공무원은 그 결과를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하고, 창고관리인에게 통관허가증을 발급하여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함
- 창고에서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면 창고는 인도 사실을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

□ 휴대화물이 있는 통과여객으로서, 통관을 원하지 않을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휴대화물을 세관보세창고에 예치 가능

- 해당 여행자는 제3국을 목적지로 하는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예치기간은 최대 2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예치물품이 금지/제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관세법위반, 밀수, 금지/제한품목의 위반의 우려가 없어야 함
- 휴대화물이 공항 세관보세창고에 예치/유치될 경우, 세관공무원은 예치양식(466양식) 원본과 사본 2부를 발급하고 원본은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사본 1부는 예치물품에 부착하며, 나머지 사본은 예치양식 파일에 첨부함

〈예/유치물품 보관료율〉

화물당중량기준	보관료
(a) 20 kg 미만	40바트/화물/일
(b) 20 kg 초과 40 kg 미만	80바트/화물/일
(c) 40 kg 초과	150바트/화물/일

5) 비관세장벽

5. 비관세장벽	5-① 일반적 통관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및 행위 정도 5-②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5-③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	---

5-① 일반적 통관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및 행위수준

- 태국은 국제표준(IEC) 인증시험소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독자적 인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태국의 표준인증을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수출입기업에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정식 수입 전에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적·행정적인 문제로 신제품 출시 등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
  - 특히,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농산품,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 의료용품 등 10개 카테고리 85개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 산업표준원(Thailand Industrial Standard Institute, TISI)이 정한 표준 공업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 TISI의 규격을 따를 때만 정부조달상 특혜를 주고 있음
  - 다만, TISI에서 인정한 CE마크 등 일부 외국인증 마크를 획득한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제출과 함께, 수입 통관시 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수입시마다 매번 새롭게 검사를 요구해 수입 절차에 번거로움을 주고 있음
  
- 태국에 곡물, 과일 식품 및 그 가공품을 수출하는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 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함
  - 식품 수입 허가에는 약 300달러의 비용 소용, 매 3년마다 갱신이 요구되며 별도 성분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제조과정도 설명하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편임
  - 의약품 수입허가는 1999년 11월에 발효된 의약품에 관한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일부 절감시켰으나 여전히 별도 등록, 매년 갱신이라는 이전 관행은 계속되고 있음
  - 일례로 한국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식품을 태국에서 다시 검사받음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운송기간 및 검역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이 가산되어 식품의 유통기한 제한에 따른 판매기간 축소 등 부작용 발생
  - 화장품은 1974년에 시행된 화장품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허가는 물론, 라벨을 포함한 완제품에 대한 성분 등이 식약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

서는 샘플, 제품공식, 태국 화장품 규정을 준수한다는 보증서와 함께 대표자가 태국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의료장비 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출국 선적에 앞서 태국 식약청에서 수입 및 판매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수량제한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복잡한 수입 절차 때문에 대다수의 수출기업은 태국 내 수입업체에 수입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게 됨

□ 그 외 ‘The Plant Quarantine Act’에서는 곡물, 과일, 가공식품 등에 대해 기술적 조치로서 수입지(공, 항만)에서 반드시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고, ‘The Food Act’에서는 공공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등록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기관에 사전 등록된 수입자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하며, 수입시는 수입허가신청을 필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정한 수준과 질적 조건을 요구하기도 함

□ 최근 미국-EC 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관련 건은 상표부 착요건에 대한 해석 및 관점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 동건에서는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식품영양성분 표시의무가 상기 SPS협정의 당초 목적을 넘어 무역제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쌍방이 서로 상반된 시각을 보임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대립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며, 태국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GMO 수입국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태국은 환경보호를 위해 다음의 조치 등을 취하고 있음

- 보건부는 국민의 생명, 건강,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자체 훈령 및 규정의 형태로 과일, 곡물 등에 대한 살충제의 유형 및 잔류수준 허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
- 상무부 산하의 대외무역국, 산업부 산하의 산업업무국(The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에서는 국내 환경 및 공공보건 보호의 명목으로 스크랩, 스크랩 폐기물, 사용 또는 미사용된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 페타이어 등, 물품의 수

입을 위해서는 동 기관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상무부에서는 공공보건 및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50cc 이하의 오토바이 중고 엔진, CFC를 사용하는 가정용 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수입 자체를 금지하고, 공공 보건,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중고 자동차의 수입을 제한
- 그리고, 상무부 내 육상교통국(The Department of Land Transport)에서는 중고 오토바이 수입에 대해 공공안전 및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엔진배출가스 검사서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건강 및 생명보호를 명목으로 별도 수입허가도 득하도록 규정
- 또한, 상무부 예술국(The Department of Fine Art)에서는 진품 고가품 및 조상물 등의 불법 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동 물품의 재질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기관에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평가내용: 태국은 국제표준(IEC) 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독자적 인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태국의 표준인증을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많은 불합리한 요소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 행정적인 과정도 복잡하여 수출입 과정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

- 이러한 독자적 제도는 국제무역 원활화를 위해서도 자국의 수출증대를 위해서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을 일치시키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제절차 등의 불합리한 요소는 개선이 요구됨

#### 5-②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 태국의 경우 국제무역진흥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일부 수출입물품에 대해 수출입부과금을 부과함

- 물품수출입법 제5조에서는 경제안정, 공공이익, 공중보건,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선의를 위해 상무부는 내각의 승인에 따라 수출입부과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주 및 종류에 대한 요건을 지정하여 관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 제6조에서는 수출입부과금의 부과 및 그 요율에 대한, 수정,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부과금 납부절차 등은 상무부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름

- 수출입부과금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국제무역진흥기금에 귀속되어 국제무역진흥을 위해 기금 내 주재원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집행과 배분에 대한 규칙과 절차는 내각의 승인에 따라 상무부에서 별도 정함
  - 동법 제21조에서는 수출입부과금과 관련하여 별도의 처벌조항도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에서 규정하는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부과금보다 낮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 부당한 조치를 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또는 2가지를 모두 부과할 수도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
  
-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정부조달 관련 법규에서는 내국(태국) 입찰참가자에게 외국입찰참가자에 대해 5%의 입찰가격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입찰과정에서 발주처가 언제든지 기술 요구 조건 미달 등을 이유로 입찰을 거절, 취소할 수 있어서 외국인의 태국 정부조달 시장진출은 쉽지 않은 실정임
  - 또한 입찰조건이 국내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제반절차나 조건이 까다롭고 관련 기관 및 법률이 존재하지만 지방 행정부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인 방법으로 정부 입찰을 진행함
  - 태국 정부가 컨소시엄 형태로 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는 주로 자국 건설업체의 육성, 시공경험 축적, 기술습득 등의 목적이 있을 경우로서,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경우도 주로 외국차관을 재원으로 하여 발주하는 공사가 많으며, 국내재원에 의한 공사 중에는 자체기술로는 설계, 시공, 감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태국에서 정부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태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함
  
- 평가내용: 태국은 관세 이외에도 국제무역진흥기금 마련의 일환으로 일부 수출입물품에 대해 수출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대상 물품의 범주 및 종류에 대해서는 관보에 게재하고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납부한 자에게 다소 강력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그 외 정부조달과 관련하여서는 법규에는 태국 입찰참가자에게 외국입찰참가자에 대해 5%의 입찰가격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운영의 과정이

나 제반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서 외국인이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태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함

5-③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 한국 전자제품 수출업체의 경우, 한국에서 'CB Test'를 이미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TISI에서 동 인증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샘플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하고, 태국으로 비료 수입시 일반타입의 비료가 아닐 경우도 Agriculture Chemistry Department에서 별도의 테스트 및 등록절차가 필요함
  - 테스트 기관의 수가 부족해 1차 검사를 수행하는 시간만 약 2개월이 소요되고, 동 테스트 후에도 Agriculture Chemistry Department 내 위원회의 재승인 절차를 추가로 받아야 함에 따라 품질 테스트 및 등록에는 총 3~4개월의 추가 시일이 소요됨
  - 실례로, 신제품 수입시마다 공업표준규격을 재확인받아야 하는데, 통상 최소 3~7일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 외에도 정식등록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1~2개월이 소요됨
  
- 태국은 공산품에 대해 우리나라의 KS제도와 같은 표준규격제도인 Labeling(Mark)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품목이 11개 산업, 74개 품목으로 그리 많지 않으며, 동 제도의 운영 목적이 소비자 보호의 일반적 취지 외에 사실상 태국상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수출입 등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음
  - Labeling(Mark) 업무는 산업표준원(TISI)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신청시 소요되는 기간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월 내에 종료되며 마크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 발생함
  - 상표에는 제품이름, 설명, 중량·수량과 제조일 및 유효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제조업체 및 디스트리뷰터명과 주소, 제품 또는 상표등록번호도 명기하여야 함
  - 알콜성 음료를 제외한 모든 상표는 태국어로 표기되어야 하고, 철강은 상표를 붙이는 방식이 아니고 철강 자체에 마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식품류의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전에 원산국 정부 또는 인정받은 민간연구소가 발급한 식품분석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5개의 원산지 라벨과 태국어 라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태국의 'The Industrial Product Standard Act'에서는 장난감, 게임, 스포츠용품 및 관련부품, 액세서리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로서 산업표준원(TISI)에 건강, 안전, 환경보호 등 명목으로 성능검사 및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수출입 및 국내 생산품에도 공히 적용되고 있음
  - 식품 수입 허가에는 통상 약 3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매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 성분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조과정도 설명하여야 하는 등 까다로운 편임
  - 의약품 수입허가는 성분분석, 검사 등 모든 과정이 종료되기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수입자는 별도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함
  - 일반 의약품 수입검사에는 1,500바트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태국에 처음 소개되는 의약품의 경우는 통상 40,000바트의 검사비용이 소요되며 일부 절차가 단순화되었음에도 수입검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평가내용: 태국은 국제표준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로 인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1차 검사시 2개월, 품질테스트 및 등록에 추가로 3~4개월이 소요되어 신제품출시를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상품가치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태국에 처음 소개되는 의약품의 경우는 통상 40,000바트의 검사비용이 소요되고 그 승인과정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일부 절차가 단순화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좀더 많은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그 외 라벨링 제도나 등록상표부착시에는 제반절차를 국내기업에도 공히 적용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요소는 적은 것으로 파악됨

6) 효율성과 효과성

6. 효율성과 효과성	6-① 통관절차의 합리성과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6-② 통관절차 및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6-③ 통관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6-④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6-⑤ 통관관련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6-⑥ 통관관련 업무량과 담당조직, 담당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6-⑦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6-⑧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6-⑨ 통관 단위업무 및 전체 통관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6-⑩ 불법물품의 적발실적 6-⑪ 평가대상국에서 수출한 불법물품이 외국세관에서 적발된 실적
-------------	---

6-① 통관절차의 합리성과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세번 분류는 신고물품에 대한 세관의 현품검사 과정에서 동 물품이 현품과 일치하는지, 품목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사전 검토 되고, 별도 분석 등 과정을 통해 전문지식이 반영되며, 이에 각 당사자의 입장 및 관점이 조율/조정되는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신고 세번, 세율 및 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통관행정의 국제적 통례로 되어 있음

○ 태국 세관법규상 서류심사를 완료하게 되면 관세 등 제세를 지불하고(관세 지불 또는 BOI에 의한 면세)난 후에 실제 화물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세금 납부 후 현품 검사과정에서 업무미숙 또는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세 번분류상의 착오가 발생한다거나, 현품이 신고물품과 다르거나, 수량·규격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 정정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동 물품이 세관 관할 및 통제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 밀수 또는 고의적인 관세회피로 간주하여 벌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존재함

□ 평가내용: 세관에서 세금 납부 후 현품검사과정에서 단순한 착오에 의한 정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성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회피로 간주하여 벌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존재하여 무역간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이는 무역의 원

활화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정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인하여 세율 및 세액을 확정하는 통상적인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므로 이의 시정이 요구됨

6-② 통관절차 및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sup>78)</sup>

6-③ 통관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6-④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수입통관 및 수출통관시 태국의 수입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에 의해 수행됨

㉠ 수입신고: 관세청과 연계된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특별한 경우 수동으로 직접 작성하여 신고

㉡ 관련서류 제출: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수입신고서 및 필요시 수입허가서, 외환거래양식, 원산지증명서, 기타 관련서류 등을 전자식 또는 서면으로 제출

㉢ 관세 등 제세 납부: 관세세금 또는 예치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며, 직접 납부, 전자이체,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 물품검사 및 반출: 수입자가 해당 보세창고에 납세영수증과 확인받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세관검사직원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검사하게 되며, 검사한 물품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할 경우,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수입자에게 물품반출을 허락

□ 태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항만이나 지역 또는 공항 세관에서 전자식으로 수행

○ 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작업, 보세창고에의 장치, 무역자유지역이나 수출가공지역으로의 반출입 등 통관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통관업무는 하역 또는 위탁이 이루어지는 세관(항만, 지역 또는 공항)에서 수행

78) 6-②, 6-③, 6-④의 경우는 현재 주어진 자료로는 분류하기 곤란하여 통합하여 사례를 제시함

- 수출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물품을 태국 밖으로 운송 또는 반출하는 항만이나 공항에서 전자시스템을 통해 수행
  - 보세창고나 수출자유지역 또는 수출산업지역에 장치된 물품의 수출통관 절차는 원활한 통관을 위해 동 물품이 태국 밖으로 운송 또는 반출하는 항만이나 공항에서 전자시스템을 통해 수행
  
- 수출물품의 통관절차는 검사면제물품의 경우는 윈스톱서비스로 통관을 완료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되며 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검사면제물품의 통관절차는 윈스톱서비스로 통관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인/허가 취급기관이 해당 정보를 윈스톱서비스를 통해 세관 컴퓨터시스템에 전송하면, 세관 컴퓨터시스템은 통관완료 후 물품의 반출결과와 승인/허가 번호를 입력하게 되며, 이 경우 수출자는 세관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그러나 통관을 윈스톱서비스로 완료할 수 없는 경우는 물품수출이 승인/허가대상인 경우, 수출자는 수출신고서 통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법에 따른 특권, 면허, 등록, 허가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해당 항만 또는 공항의 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특정수량(승인/허가대상)에 대해 1개 이상의 일반통관신고로 수출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침
    - 수출자는 수출신고서 통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반 통관신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항만 또는 공항의 세관에 제출
    - 세관공무원은 세관 컴퓨터시스템과 제출된 서류가 일반 통관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서명 및 일자 등을 기재
    - 해당 세관은 최종 통관면장을 수출자에게 발급
    - 수출자는 수출물량증명서 사본을 수출시 관할 세관에 제출
  
- 평가내용: 수입통관 및 수출통관의 경우 전 과정에서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관세청 수출입규정집(Danapa Paperless)에 적시되어 있고, 수출품의 경우 윈스톱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실제사례에서는 업무 절차상의 복잡성, 직원의 업무미숙, 전산화 미비가 많이 지적됨

## 6-⑤ 통관관련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A.T.A. Carnet(Temporary Admission)는 물품의 일시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제표준 세관문서로서 이를 통해 수입신고, 수출신고, 재수입증명, 여타세관으로 환적증명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
  - 1961년 WCO(당시는 Customs Cooperation Council)는 물품의 일시 수출입 절차를 신속,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 A.T.A. 국제협약을 채택하였으며, 현재는 6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태국 역시 동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등 국제교류의 활성화 등 영향으로 A.T.A. Carnet의 이용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태국의 경우, A.T.A. Carnet를 다음의 4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흰색의 연속지를 포함한 녹색의 전, 후 표지
  - 노란색의 수입, 수출 서식
  - 흰색의 수입, 재수출 서식
  - 청색의 반출/입 통과 서식

## 6-⑥ 통관관련 업무량과 담당조직, 담당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통관과정에서 소요량 확인 업무의 경우, 수작업에 의한 방식으로 제품별 원자재 소요량을 확인하고 필요시 sample 징구 또는 현지 출장을 통하여 마모량을 확인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동 작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환급결정 및 지급이 계속 지연되는 실정임
  
- 평가내용: 태국세관에 대해서는 통관관련 담당인원 및 전문인력 부족이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됨

## 6-⑦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6-⑧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 평가내용: 위의 6-⑦, 6-⑧의 내용은 현재의 조사에 의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태국 세관 관련 전문가나 태국 주재관 등을 통한 추후 점검노력이 요구됨

6-⑨ 통관 단위업무 및 전체 통관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 통관절차는 수입통관신청서 제출에서 시작하여 보세창고로부터의 화물 반출로 종료되며, 통관절차별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음(아래 시간은 기술적인 소요 시간으로서 실제 통관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1~2일 가량임)
  - 수입통관신청서 제출 및 서명 확인(15분)→통관 허가에 필요한 서류 검토(15분)→HS코드 확인 및 관세평가(2~3시간)→산정관세 확인(15분)→산정관세 이상시 재결정 소요시간(20분)→적정관세보다 저율로 신고시 관세 재조정 부과(30분)→관세 및 추징료 수납(15~30분)→선박번호확인 및 검사 물품준비(2~3시간)→검사원 지정(15분)→물품검사 및 반철 순서제시(15~30분)→보세창고에서 화물 반출 절차(15분)
- 평가내용: 통관에 소요되는 기술적인 소요시간은 약 6~9시간 정도이나, 실질적인 통관과정에서는 1~2일의 시간이 소요되어 절차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는 신속통관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됨

6-⑩ 불법물품의 적발실적

- 태국 내로 반입 또는 반출이 금지된 품목은 마약류, 음란물 및 음란잡지, 모조품 및 해적물, 위조지폐 및 위조주화, 보호 야생동물 등이 있음
  - 또한 수출입이 법으로 제한된 물품으로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여행자휴대품의 총가액이 8만바트를 초과할 경우, 해당 여행자는 세관통관부에서 별도의 통관수속 및 절차를 거침

-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미신고물품 가액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과 그에 대한 세금 및 관세를 추징하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과 징역을 병과할 수 있으며 미신고물품은 압류됨

□ 태국은 밀수 및 밀수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벌칙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밀수: 실제 관세액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 밀수품 수취: 실제 관세액의 4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정당한 세관 신고 위반: 1만 5,000바트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6-⑪ 평가대상국에서 수출한 불법물품이 외국세관에서 적발된 실적

□ 추후 조사하여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함

7) 반부패

7. 반부패	7-①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7-②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

7-①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밀수 및 허위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고액의 추징금을 경감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각종 부조리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실정임
  - 최근 이 문제는 미국 상공회의소(AMCHAM)를 중심으로 하는 국내·외 무역단체 간에 이슈화가 되어 있기도 함
  -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미 태국의 관세당국에 동 제도의 부작용 및 문제점에 대해 별도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그 개선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평가내용: 제도의 부작용이나 문제에 대해 향후 태국의 시정조치나 개선 여부를 지켜

보며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7-②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평가내용: 위의 7-②, 7-③, 7-④의 지표 또한 현재의 조사에 의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태국 세관 관련 전문가나 태국 주재관 등을 통한 추후 점검이 필요함

### 8) 권익보호

8. 권익보호	8-①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8-② 통관관련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

8-①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 태국관세청에서는 수출입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세청 본부 및 방콕지역 세관의 세번분류 부서를 통해, 수입자의 신청으로 관련 세번 및 세율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본인에게 회시하여 줄 수 있는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를 2008.7월 이후 시행하고 있음

○ 물품에 대한 사전회시 신청은 동 물품 도착 30일 전까지 가능

○ 사전회시 희망자는 관련서류를 관세청(International Customs Tariff Division)에 관련서류<sup>79)</sup> 등과 함께 신청하면 되며 세번분류 사전회시서는 1년간 유효함

□ 평가내용: 동 제도의 도입으로 사후심사 등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고, 세번/세율/세액의 사전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등, 향후 기업운영 및 영업활동에 많은 도

79) 사전회시신청서류 : 물품구매요청서, 품명, 특징, 물품설명서 등

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8-② 통관관련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는 전문인력 및 지식, 경험 등의 부족으로 제도가 아직까지 정착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
  - 신청일로부터 회신일까지 약 1개월~3개월의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제도 자체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활용에는 여전히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음
- 평가내용: 품목분류 오류시 세관당국의 과도한 벌금 등에 불복하는 절차조차 마련되지 않았으나 위 제도인 품목분류사전회시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이후 행정의 효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세관의 HS세번분류는 통관업무 중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 중의 하나이며, 특히 태국세관의 경우는 세번분류의 차이에 따라 세액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부과되는 벌금액은 추정액에 의거하여 산정되므로 수입시 납부하는 수입관세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됨
  - 최근에는 상품분류의 복잡성, 다기능성 등으로 본의와 관계없이 세번분류상의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임
- 그러나 태국세관은 세번분류상의 오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세 번 분류 오류에서 발생하는 세액부족분을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벌금을 부과하여 태국수출입의 장애요소로 작용함
  - 또한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세액부족분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로 전문지식의 결여나 업무담당자의 무관심 및 관리감독기능의 미흡에서 발생하므로 세관의 행정효율성을 위해 세관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생각됨

- 평가내용: 세번분류상의 오류는 주로 전문지식의 결여, 관련자료의 부족, 업무담당자의 착오, 업무대행자의 무관심/실수, 법규준수 의무의 관리·감독기능 미흡 등에서 유래되고 있음에도 수출입관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태국세관당국의 비효율화를 개별 수출입관계자에게 전가하는 행태이므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9) 서비스

9. 서비스	9-① 당해 통관절차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9-② 통관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

9-① 당해 통관절차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태국관세청은 관세율변경 고시 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관세청 홈페이지에 Integrated Tariff Databas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태국 관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음

- 그 중 태국의 관세율령(Integrated Tariff Database) 사이트에는 품목분류해석에 관한 일반 통칙, 수입관세율, 수출관세율, 관세감면 및 면세 대상품목, 화학물질목록, 철강제품목록 등이 명시되어 있고, 관세율 검색 사이트에서는 HS code별, 연도별, 국가별, 관세율 유형별(기본, 실행, 협정세율 등) 통합검색이 가능함

- 평가내용: 이러한 태국 관세청의 관세율 관련 database 구축은 국내·외 무역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9-② 통관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태국관세청의 수입업자들에게 통관절차와 관세율에 대한 상담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Customs Clinic'을 2009년 9월 7일 개설함
  - 태국관세청이 이처럼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한 이유는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한 세

금징수에서 벗어나 무역증진으로 향하는 큰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국내총생산의 70%가 무역에서 창출되므로 무역효율성 증가로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임

□ 관세청 ‘Customs Clinic’의 역할 및 기대효과<sup>80)</sup>

- 태국관세청의 ‘Customs Clinic’에서는 4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통관절차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하게 됨. 대부분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3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했으며, 예외적으로 다른 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한 기술적 문의사항의 경우 답변기간이 5일로 돼 있음
- 그러나 관세 분류 및 가격 산정에 관한 문의는 60일 내에 응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입업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상담데스크의 기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긴 응답기간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그동안 태국에 진출한 국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통관업체의 큰 고민 중 하나는 관세분류 행정의 지연 및 관세청의 불성실한 응대였으며,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도 용도에 따라 상이한 HS Code로 분류돼 수입시 다른 관세율의 적용을 받는 불합리함이 존재함
- 관세청은 2009년 8월중 임시적으로 개설한 클리닉에서 이미 171건의 문의사항을 접수했으며 태국 관세청에서는 ‘Customs Clinic’의 상담내용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수입업자들에게 최선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평가내용: 태국이 ‘Customs Clinic’을 2009년 설치하여 통관절차와 관세율에 대한 상담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관세청의 무역업무 효율성 증가 노력은 국내 제조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이므로 긴 응답기간 및 상이한 관세율 적용 등의 불합리한 제도적용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80) 자료: 방콕포스트, 태국관세청, Fiscal Policy Office

10) 통관환경 개선노력

10. 통관환경 개선노력	10-① 세관당국의 통관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10-② 통관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

10-① 세관당국의 통관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 태국관세청은 소요량 확인이 장시간 지연되는 경우, 차후 환급을 위해서는 현금 대신 은행 보증서를 관세청에 예치하고, 수출 이행 후에는 은행보증서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환급업무 수행속도가 느리고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관계로 동 서비스를 받는 데는 시간적·행정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

- 현실적으로 관세환급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와 함께, 관련지식 이해 및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세관에서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관세환급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sup>81)</sup>이 발생함
- 이와 관련 태국관세청에서는 수입업자들이 규정된 요구양식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환급요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수출 기간을 초과하거나, 혹은 수입물량의 불일치 등 규정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서류 재작성 요구를 하거나, 환급을 제한하거나, 조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차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02년 태국정부는 정부입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정부기관(All government agencies)으로 하여금 정부입찰을 공고하고 안내하는 Web site를 운영토록 하고, e-auction방식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과정에서 태국어로만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입찰을 공고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외국인이 입찰정보를 얻기는 쉽지가 않음

- 따라서 IT인프라 구축, 특수 장비 제작 등 특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입찰 건 이외

81) 특정 경우는 관세환급을 대행하는 통관사조차 총환급액의 20%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에는 사실상 외국 업체가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에는 사실상 한계가 존재

- 평가내용: 태국의 세관당국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자세가 부족하여, 관세환급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는가를 파악하기보다는 자국 세관의 관리행태만을 설명하거나 또는 투명성을 위해 Web site를 운영함에도 태국어 로만 제공하여 외국인의 접근이 어려운 문제 등이 상존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10-② 통관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태국은 품목분류 및 세액산정상의 단순 오류를 향후 추징 및 벌금부과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많아서 수출입 업체는 자체적으로 전담직원을 확보하고, 전담직원 으로 하여금 해당물품에 대한 통관내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함으로써 잘못된 신고사항을 사전에 확인 및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자체 점검에 따라 잘못이 확인되는 경우는 관세당국의 자진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 Program)에 따라 세관에 잘못된 신고내역을 사전 수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적 벌금 부과 처분을 면할 수가 있음
  - 자진신고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는 세관에 하자발생 사유와 더불어 매신고건별 정 확한 세액산정에 필요한 충분한 관련서류 및 정보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 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단지 다음의 부족세액만이 부과됨
    - 관세액 부족분
    - 부족 관세액에 대한 이자(1%/월)
    - 부가세액 부족분
    - 부가세에 대한 이자(1.5%/월, 부가세액 이하 범위)
    - 부족 부과세 상당액의 벌금
- 평가내용: 태국 세관당국은 품목분류 및 세액 산정상 오류에 대해 대부분 추징 및 벌

금을 부과하여 이해관계국이나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분쟁은 태국세관의 과도한 벌금부과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적극적 협의 및 개선노력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수출입업체의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향후 수출입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됨

- 한편, 태국세관의 불합리한 행정절차나 과도한 벌금부과가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태국세관이 자진신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고무적 현상이나 여전히 제도운영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서 실질적 개선이 요구됨

## V.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제도 및 평가적용 사례

### 1. 통관환경제도<sup>82)</sup>

#### 가. 교역 동향

- 인도네시아는 ASEAN<sup>83)</sup> 국가들 중 인구 및 경제규모가 가장 크며 소비시장도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교역 규모는 지난 10년간 10위권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구매력이 있는 젊은 소비층이 두터워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의 수출 전망은 높은 편임
  
-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로 인하여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제에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연간 수출액이 2008년에 1,370억달러에서 2009년에 1,165억달러로 14.97% 감소했으며, 연간 수입액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 129억달러에서 2009년에 968억달러로 25.05%로 하락함
  
- 하지만 현재의 인도네시아는 정치·경제 기반이 크게 안정되어 있어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10년 전 아시아 통화위기 때의 인도네시아와 비교하면 훨씬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인도네시아의 연간 무역수지 흑자는 2008년에 약 80억달러에서 2009년에 약 197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82) Kotra '국가정보 인도네시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83)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967년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 속해 있음

〈표 V-1〉 연도별 인도네시아 수출입 현황

(단위: US\$백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71,585	85,565	100,799	114,101	137,020	116,510
수입	46,525	57,547	61,100	74,473	129,197	96,829
수지	25,060	28,018	39,730	39,628	7,971	19,681

자료: 인니통계청

1) 교역대상국별 수출입통계/국별 수출입통계

□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이 일본, 중국, 미국 싱가포르에 이어 수출규모에서 5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수출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표 V-2〉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별 수출 현황

(단위: US\$백만)

순위	국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85,660	100,799	114,101	137,020	116,510
1	일본	18,049	21,732	23,633	27,744	18,575
2	중국	6,662	8,344	9,676	11,637	11,499
3	미국	9,868	11,232	11,614	13,037	10,850
4	싱가포르	7,835	8,930	10,502	12,862	10,263
5	한국	7,086	7,693	7,583	9,117	8,145
6	인도	2,878	3,391	4,944	7,163	7,433
7	말레이시아	3,431	4,111	5,096	6,433	6,812
8	대만	2,475	2,735	2,597	3,155	3,382
9	호주	2,228	2,771	3,395	4,111	3,264
10	태국	2,246	2,702	3,054	3,661	3,234

자료: 인니통계청

□ 인도네시아의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가장 높으며,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중국,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6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표 V-3〉 인도네시아의 주요 국별 수입 현황

(단위: US\$백만)

순위	국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57,701	61,065	74,473	129,197	96,829
1	싱가포르	9,471	10,035	9,840	21,790	15,550
2	중국	5,842	6,637	8,558	15,247	14,002
3	일본	6,906	5,516	6,526	15,128	9,844
4	미국	3,879	4,057	4,787	7,880	7,084
5	말레이시아	2,148	3,193	6,412	8,922	5,688
6	한국	2,869	2,876	3,197	6,920	4,742
7	태국	3,447	2,983	4,287	6,334	4,613
8	호주	2,567	2,986	3,004	3,998	3,436
9	사우디	2,712	3,384	3,373	4,805	3,136
10	대만			1,495.3	2,850	2,393

자료: 인니통계청

## 2) 주요 교역품목별 수출입 통계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주요 교역별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면, 석탄이나 팜오일, 가스, 천연고무 등 주요 천연자원이 수출품목의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V-4〉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US\$백만)

구분(HS CODE)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수출	85,659.9	100,799	114,101	137,020	116,510
석탄(2701)	4,354.1	6,082.5	6,697.4	10,488.9	13,799.1
팜오일/부산물(1511)	37,563	48,176	78,686	123,756	103,676
석유가스와 기타가스(2711)	9,153.7	10,197.1	9,983.8	13,160.5	8,935.7
크루드오일(2709)	8,145.8	8,168.8	9,226.0	12,418.7	7,820.3
동광과 고정광(2603)	3,310.9	4,646.1	4,212.6	3,344.6	5,101.3
천연고무, 발라타(4001)	2,583.9	4,322.3	4,870.5	6,058.2	3,224.0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4802)	1,049.9	1,392.1	1,754.5	1,924.9	1,751.5
정제구리와 구리합금(7403)	676.3	938.6	1,720.6	1,258.4	1,731.0
야자유, 팜유(1513)	1,001.5	887.2	1,568.2	2,193.1	1,479.2
석유코크스, 아스팔트 및 잔재물(2713)	24.1	22.56	972.87	2,360.8	1,382.8
주석의 괴(8001)	911.4	913.4	1011.4	1,961.4	1,245.5

자료: 인니통계청

-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입 내용을 살펴보면, 석유와 역청유, 크루드오일, 항공기 등이 주요 수입품목으로 수입되고 있음

〈표 V-5〉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US\$백만)

구분(CODE)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수입	57,700.9	61,065.5	74,473.4	129,197	96,829
석유와 역청유(2710)	10,580.8	10,963.1	12,619.5	19,963.6	10,841.0
크루드오일(2709)	6,794.0	7,852.6	9,056.9	10,061.5	7,362.2
항공기(8802)	440.2	902.5	1,537.4	1,852.3	3,125.5
전화기,통신기기(8517)	174.9	257.4	730.9	1,891.4	3,096.3
크루즈/화물선/바지 등(8517)	190.2	1,016.6	257.6	637.7	1,664.1
밀과 메슬린(1001)	799.0	816.1	1,181.3	1,975.5	1,316.1
자동차료처리기기(8471)	398.8	450.7	844.9	1,805.5	1,171.1
전기회로(8542)	97.2	72.5	134.4	1,486.6	1,056.0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8708)	1,250.6	904.2	839.9	2,547.2	981.4
자체사용 부분품 혹은 기타(8529)	98.2	145.6	221.0	1,033.8	1,037.8

자료: 인니통계청

### 3) 한국과의 교역 동향

-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5번째 교역 상대국이며,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11번째 교역 대상국('09년 기준)으로 성장하였음
  - 對인도네시아 수출: 59억 9,988만달러(경유, 휘발유, 편직물, 합성수지, 음향기기 등)
  - 對인도네시아 수입: 92억 6,413만달러(유연탄, 천연가스, 원유, 동광, 펄프, 목재 등)
- 2007년 7월 1일부로 한-ASEAN FTA가 발효되었고, 2009년 1월 1일부로 일반품목(Normal Track)에 대한 관세면제가 시행되면서 향후 교역규모 성장이 예상되나, 최근 국제경기 침체가 교역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표 V-6〉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입 규모

(단위: 천달러, %)

연도	수출 금액	증가율	수입 금액	증가율
2001	3,279,783	-6.4	4,473,515	-15.4
2002	3,144,766	-4.1	4,723,422	5.6
2003	3,377,626	7.4	5,212,310	10.4
2004	3,677,740	8.9	6,368,132	22.2
2005	5,045,582	37.2	8,184,433	28.5
2006	4,873,522	-3.4	8,848,554	8.1
2007	5,770,618	18.4	9,113,843	3.0
2008	7,933,617	37.5	11,320,291	24.2
2009	5,999,880	-24.4	9,264,135	-18.2

자료: 인니통계청

-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품목들을 살펴보면, 경유와 휘발유, 편직물, 합성수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V-7〉 對 인도네시아 수출상위 10대 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08		2009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933,617	37.5	5,999,880	-24.4
1	경유	2,258,938	75	825,988	-63.4
2	휘발유	180,357	38	664,157	268.3
3	편직물	454,012	34.2	465,877	2.6
4	합성수지	440,793	31.2	354,756	-19.5
5	음향기기부품	138,018	18.6	177,904	28.9
6	냉연강판	149,822	68.8	136,575	-8.8
7	가열난방기	7,436	32.6	135,679	1724.60
8	합성고무	195,987	122.6	123,126	-37.2
9	평판디스플레이	115,548	30.6	108,874	-5.8
10	무선전화기	53,871	376.6	107,483	99.5

자료: KOTIS

- 한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항목으로는 유연탄, 천연가스, 원유, 기타금속광물, 펄프, 천연고무 등이 있음

〈표 V-8〉 대 인도네시아 수입상위 10대 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품목명	2008		2009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1,320,291	24.2	9,264,135	-18.2
1	유연탄	1,919,251	57.2	2,150,946	12.1
2	천연가스	2,594,556	12.4	1,409,680	-45.7
3	원유	1,554,581	52	1,182,390	-23.9
4	동광	482,440	-25.1	1,144,176	137.2
5	기타금속광물	276,752	40	238,317	-13.9
6	펄프	385,199	14.4	181,380	-52.9
7	천연고무	298,422	48	162,403	-45.6
8	기타석탄	178,311	16.7	157,115	-11.9
9	니켈피딧스크랩	280,400	60.6	143,651	-48.8
10	암모니아수	179,189	858	132,620	-26

자료: KOTIS

#### 4) 수입규제제도

##### 가) 관세장벽

-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써 일부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을 비롯하여 타이어, 튜브, 가정용 전자기기, 일부 섬유류, 자동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고율의 수입과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또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실효특혜관세(CEPT)협정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공동실효특혜관세(CEPT)를 적용하고 있음
  - 관세인하 대상은 농업, 서비스를 제외하고 자본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 가공 농산품, 기타 비농산물 등이며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 국산자재 및

부품 사용비율이 40% 이상일 것이 요구됨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상품협정이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식으로 서명되었으며(태국 제외), 2007년 4월 한국 국회에서 비준되면서 2007년 6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되었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FTA 발효 후에도 재무부의 실행안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관세 철폐 및 인하를 2007년 7월 1일부로 적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아세안FTA 협정내용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23일부로 '2009년 한-아세안FTA 인도네시아 신규 관세율표'를 재무부 장관령(No.236/MK.011/2008)으로 발표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일반품목군의 관세를 면제시킴

#### 나) 비관세장벽

-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FTA, 한-아세안FTA, 인니-일본EPA 등 다양한 FTA를 체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경기침체를 맞아 내수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음
-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관리하는 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 및 직물 관련 제품, 옥수수, 쌀·벼, 대두류, 사탕수수류 등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수입허가(NPIK)를 취득해야 함
- 수입허가(NPIK)제도 이외에도 '선적 전 검사(SGS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이나 통관을 지연시키는 여러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 화학제품 수입시는 MSDS(물질안전보건 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중고 기계 수입시는 실수요자(제조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함)의 '선적 전 검사(SGS 검사)' 시행 및 무역부에서 중고 기계 수입허가 취득이 필요함

- 직물(textile)을 재료로 하여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예: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제품 수입시 선적 전 검사(SGS 검사)가 요구되고 있음
  - 세라믹 제품 수입시도 선적 전 검사(SGS)를 받아야 하며 수입시 수입관세는 물류 통량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함
  - 통신 제품 수입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함(전화, 모뎀 등)
  - 오일 및 기타 유류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이 필요함
- 이 밖에도 수입시 규제하는 사항이 많음
- 규제 사항의 예로는, 무역 업체는 직물(textile) 원단 수입 불가, 실수요자가 원단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한하여 수입 가능, 부직포의 경우는 종류가 가능하나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서 순수하게 부직포로 이면을 하는 경우는 완전 부직포 상태의 부직포만 인정, 한 면은 부직포 다른 한 면은 직조된 천으로 코팅된 것은 부직포로 불인정하여 통관불가능한 사례 등이 가끔 발생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세관은 FTA 체결 이후에 세관의 대대적인 변혁을 통해 수입통관제도를 강화하면서 검사대상 통관제품의 전수검사, 시중가격과 차액이 큰 제품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도·자기류 제품에 대한 종량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상들의 사업 여건을 악화시키는 유·무형의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음
- 상기 규제들 외에도 최근 들어 국제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국내 산업보호를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No.15/M-DAG/PER/12/2008)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두 가지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① 무역부에서 기존 일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IT: Listed / Registered Importers)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2009년 1월부터 시행)
  - ②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받은 선적 전 검사기관의 선적 전 검사(2009년 2월부터 시행)

- 또한 2009년 1월1일부터 상기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5개 지정항구나 국제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
  - 5개의 항구로는 자카르타 Tanjung Priok 항구, 수라비야 Tanjung Perak 항구, 메단 Belawan 항구, 마카시르 Soekarno-Hatta 항구, 리아우 Dumai 항구<sup>84)</sup>가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는 국가표준(Standard National Indonesia: SNI)을 강화하면서 2007년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제도를 강화해 34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련 법규(PERMENPERIN No. 1 & 2/M-IND/PER/2009\_에 의거 2009년 1월부터 아연도금강판(Steel Plates Coated Zinc)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SNI를 적용함
  - 특히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품목인 열간 압연 강판 및 코일(Steel Sheet, plate, HRC), 갈바륨(Sheet Steel and Aluminum-Zinc Alloy Coated Coil) 제품에 대한 SNI 강제규격을 확대 적용하여 2009년 5월 6일과 7월 6일 각각 발표함으로써 한국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64개 HS 코드를 추가로 SNI 적용대상으로 편입할 예정임
    - 이 중 2009년 1억 3,700만달러의 수출을 기록한 CRC(Cold rolled Coil) 일부가 포함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수출물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SNI 통관강제 대상품목 중 45개 품목군에 해당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출대상국의 수출업체가 인도네시아 표준관리기관의 조사관(Insepector)들을 자비로 초청해 실사를 하도록 강제하는 등 상당한 비용부담이 드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임
  - 최근에는 한국의 주력수출품인 철강부분에 대해서도 SNI인증제도를 추가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는 중임

84) 리아우 Dumai항구는 식음료 분야만 수입이 허용됨

- SNI인증 절차는 ①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기관(LS Pro)에 규격인증신청서 제출, ② 인증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인증비용 납부, ③ 인증비용 납부 후 인증기관 현장 실사 실시(인증 실사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현장실사를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은 의뢰사에게 지불), ④ 인도네시아 샘플분석기관에 의뢰 인증기관 내부협의 후 인증서(SPPT-SNI) 발급, ⑤ 인증서와 추가자료 제출 후 산업부에서 최종 인증서 발행 순서로 진행됨
  
- 인도네시아 무역부(Ministry of Trade)는 ‘제품 라벨 강제규정’과 관련된 법령(62/M-DAG/PER/12/2009)을 2011년 1월에 시행하려 했으나, 이를 2010년 9월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함
  - 동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제품과 그 제품의 포장에는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표기된 라벨(Label)이 부착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 제2조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는 제품을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음
    - ① 분류 1: 가전제품, 통신 및 정보관련 제품(총 64개 대분류)
    - ② 분류 2: 건설 자재(총 9개 대분류)
    - ③ 분류 3: 자동차 부품 등(총 24개 대분류)
    - ④ 분류 4: 기타 제품(총 24개 대분류)
  - 인도네시아 내에서 관련 법령 2조에 언급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주체는 무역부의 DirGen PDN에게 인도네시아어로 된 라벨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샘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DirGen PDN은 샘플 접수 후 5일 이내에 공문을 회신해야 함
    - 동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라벨 규정을 어긴 자는 무역면허(SIUP), 기타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중고자본재 수입허가 품목 리스트<sup>85)</sup>를 발표하였음
  - 중고자본재는 재사용이나 재가공을 위해 좋은 상태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수입

85) 관련 법령은 57/M-DAG/PER/12/2008의 수정본임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고, 관련 수입 중고자본재는 '생산 프로세스' 혹은 '생산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법률은 설명하고 있음

– 동 법률은 중고자본재 수입이 회사나 공장 등의 직접 사용자, 자체 생산공정을 위한 가공업체에 의해서만 되도록 수입을 제한하고 있음

- 보세구역 내 기업이 수입한 중고자본재는 2년 사용 후, 보세구역 내 다른 기업에 이전이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전 중고자본재에 대한 감독관의 기술 및 적격 여부 검사가 보세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 나. 통관제도

### 1) 통관 개요

- 인도네시아에서는 선통관 사후심사(Post Auditing)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입자 신고납부 후 세관 사후심사를 하고 있음
  - 지역세관에서 통관이 완료된 화물의 수입신고서는 관할 본부세관으로 이관되어 2년 이내 사후 심사를 실시함
  - 2007년 7월 1일자로 Jakarta Tang Gung Priok항에 위치한 기존의 인도네시아 최대 항만 세관 조직이 해체되고 KANTOR PELAYARAN UTAMA(KPU)의 단일 조직으로 통합되면서 권한 및 위상이 강화되었음
  - KPU의 차별화 추진 내용으로는 전문요원 선발 차별화, 직원 인사권 강화, 부정부패 방지 강화, 수입자와 통관 담당관 개별접촉 금지, Consultation Desk 설치 등이 있음
  
- 수입통관 단계도 변경되었는데, 검사와 비검사 2단계에서 Green, Yellow, Red Channel 3단계로 변경되었음
  - ① Green Light(Jalur Hijau): 서류심사
  - ② Yellow Light(Jalur Kuning): 서류심사 강화
  - ③ Red light (Jalur Merah): 서류심사 및 화물검사

- 검사와 가격심사의 내용도 샘플검사 강화, 통관심사 권한 강화, 벌금 상향조정 등으로 한층 엄격해졌음
  - 종전의 샘플 검사를 FCL 화물검사시 내품 100% 검사로 강화됨
  - 통관심사관(PEPD)의 권한도 강화되어 민원인 대면이 불가하고 신고가격심사 후 신고가격 불인정 및 추징이 강화됨
  - 세액추징시 부과되는 벌금도 상향 조정됨
    - 기존의 최대 500%에서 1000%로 상향 조정됨
    - 세관 확정가와 신고가격 차액 정도에 따라 부과되며
      - ① 25% 이하의 경우 100% 부과
      - ② 25~50%의 경우 200% 부과
      - ③ 50~75%의 경우 400% 부과
      - ④ 75~100%의 경우 700% 부과
      - ⑤ 100% 이상의 경우 1000% 부과됨
  
- 수입자 필수구비 사항으로는 제조업 수입허가, 무역업 허가, 세적등록, 관세청 등록증, 특별 수입자 인지번호, 지정 수입자(IT-PRODUK TERTENTU)가 있음
  
-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로는 수입 관세(Import Duty), 부가가치세(VAT), 법인 소득세(Corporate Tax), Luxury Tax(PPNBM), 담배 소비세(CUKAI), Additional import Duty(Pajal Pertambahan Nilai) 등이 있음
  
-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은 보세업체 통관과 비보세업체 통관으로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비보세업체 통관은 매수입건별로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수입세) 등을 납부하여야 함
  - 화물수입을 할 수 있는 통관방식으로 보세업체가 되면 수입업체가 간단해지기는 하지만 내수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일반적으로 내수 혹은 내수

와 수출을 겸하고자 하는 업체 및 완제품 수입을 하는 업체는 보세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 업무를 진행함

- 수입통관시 사전 구비 허가서 종류로는 APIT, APIU, NPWP, SRP, IT 등이 있음
  - APIT: 제조 업체용 수입허가서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행하며 유효기간은 항구적이고 대상은 법인 소유자 외국인임
  - APIU: 무역 업체용 수입허가서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행하여 유효 기간은 항구적이며, 법인 소유자 외국인이 대상임
  - NPWP: 납세자번호(세무등록번호)이며, 발행기관은 법인 소재 관할 세무서임
  - SRP: 세관에서 발행하며, 반드시 법인을 세관에 등록하여 발급받아야 하고, 없을 때에는 수입 통관 최초 1회만 가능, 추후 수입은 불가능함
  - IT: 2009년 1월 1일부터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해 등록된 수입업자(IT: Listed/Registered Importers)만 수입을 허용도록 규제중임
    - 제출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지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등록수입업자 자격이 부여됨

## 2) 수입통관절차

- 수입통관절차를 정리하면 10단계로 정리될 수 있음
  - ① 선적서류 및 수입신고서 준비
  - ② 수입신고서에 준하여 수입세 납부
  - ③ 수입세를 은행에 납부한 이후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전송(EDI SYSTEM)
  - ④ 세관에서는 전송받은 서류를 근거로 수입 세금이 납부된 은행과 교신하여 수입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함
  - ⑤ 수입 세금 납부가 확인이 되면 세관에서 수입 신고서를 접수함
  - ⑥ 수입 신고서 접수 확인이 되면 원본서류를 세관에 제출함
  - ⑦ 세관에서 원본 서류 접수 이후 검사 혹은 무검사 통관 결정

- ⑧ 검사 통관으로 결정난 경우, 검사관과 함께 화물검사 실시, 검사보고서 작성 후 담당관에게 보고서 제출
  - ⑨ 통관 승인을 받고 화물 출고 동의서 수령
  - ⑩ 창고비 지불하고 출고증 받아 화물 출고
- 
-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 INSURANCE POLICY 등)를 준비할 때에는 세관 내규에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야 함
    - 적하 보험증권의 경우 FOB인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부보 가능함
  - 한-아세안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선적서류 속에 원산지증명서(CO)도 AK-FTA용으로 받아서 포함시키고 적용관세율 항목에 AK-FTA 관세임을 밝혀야 함
  - 수입 신고서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하는 경우, 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됨
    - 인도네시아의 경우 화물 수입시 법인세를 선납함
  - 수입 신고서 접수 확인이 되면 원본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 제출하는 서류로는 원본 세금 계산서, 원본 BL, 원본 INVOICE, 원본 PACKING LIST, 원본 선하 보험증서가 있음
  - 검사 통관으로 결정난 경우, 검사관과 함께 화물검사 실시, 검사보고서 작성 후 담당관에게 보고서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에 화물검사는 100% 실제로 화물검사를 실시하므로 반드시 선적서류와 실제 화물을 일치시켜야 하며, 선적서류상에 명시되지 않은 화물은 밀수로 간주되어 벌금 부과 혹은 고액의 별도 비용을 지출하여야 함

### 3) 기타 수입통관 참고사항

- 수입관세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관세국에서 발행하는 관세율표에 기준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한-아세안FTA 상품협정에 따라 전체품목의 90%에 달하는 일반품목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2009년 1월 1일부로 관세가 면제되었으며, 나머지 민감 혹은 초민감품목이 3~20%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 그 밖에 10% 부가세와 2.5%의 법인세(선납 법인세)를 모두 수입통관시 한꺼번에 납부하게 됨
  
- 특히 화물 수입시 적용되는 세관 고지 환율이 매 1주일 단위로 변경되어 수입자의 불편이 큼
  - 세관 고지 환율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나 결정되어 통지되는데, 은행의 수입세 관련업무 접수마감 시간이 매일 오전 11시로 제한되어 있어 매주 월요일은 수입신고서를 준비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고 수입세 납부가 불가능함
  
- 1달 이내에 추징 관세 및 벌금 납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추징 고지서 발급 시점에(NOTA PEMBETULAN) 추징금액을 납부하고 세관에 신고해야만 출고 동의서를 발급하므로 세관 내규가 서로 상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부가세 및 선납법인 소득세 부분의 현금 환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매출부가세를 기준으로 수입시 발생한 매출 부가세를 상쇄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함
  - 부가세 환급 신청시 세무감사가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므로 부가세 환급이 사실상 기피되는 상황임
  
- 수출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화물(원재료)을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세 면제, 부가세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은 세관 본부에서 하며 기관 명칭은 KITE (KEMUDAHAN IMPOR TUJUAN EXPOR)임

#### 4) 항구 및 공항

- 한국 국적기가 취항하는 곳은 자카르타의 soekarno-Hatta 공항과 발리 덴파사의 Ngu rah Rai 공항 두 곳이므로 나머지 지역들은 일단 자카르타에 도착한 후 국내선편을 이용해야 함
  -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등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5개 지정 항구<sup>86)</sup>나 국제 공항<sup>87)</sup>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

#### 5) 운송비용

- 한국에서 자카르타까지의 순수 해상운임은 2009년 4월 기준 20피트 컨테이너 500달러, 40피트 1천달러가 소요되며, 터미널 charge는 2005년 11월 1일부로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종전 150달러에서 95달러(20피트), 145달러(40피트)로 인하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야적장(CY) LIFT 요금도 제품 도착 후 3일 이내 통관시 20피트는 225,000루피아 40피트는 33만루피아 선임

### 다. 통관애로 사례

#### 1) 우리나라 기업들의 애로사항

- 2009 인도네시아 Grand Survey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진출시 겪었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정보부족(30%)', '행정불투명성(부정부패 포함, 15.3%)', 투자지역 선택(10.7%), 투자인센티브 부족(9.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행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어려움은 1990년대의 9.8%에서 2000~2007년 사이 진

86) Tanjung Priok항구, Tanjung Perak항구, Belawan항구, Soekarno-Hatta항구, Dumai항구

87) Soekaron-Hatta 공항, Polonia 공항, Tabing 공항, Juanda 공항, N혜모 Rai공항, Sam Ratulangi 공항, Sultan Syarif Kasim II공항

출한 기업에서는 19.4%, 2008년 이후 진출기업에서는 14.3%로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행정의 불투명성에는 세관 통관시 겪는 불투명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 2009 인도네시아 Grand Survey에서 세관 통관시 겪는 애로사항은 ‘통관시 비공식 비용 발생(35.9%)’과 ‘통관 수속의 지연(33.2%)’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그 밖에 조정관세 및 벌금부과가 12.9%, 무응답 10.1%, 기타 의견이 7.8%로 나타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세관 행정에 대해서 불만족에 60% 내외의 응답이 집중되어 세관행정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임
  - 인도네시아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기업은 물론 영세율적용 수출기업도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전액 납부한 후 환급을 받아야 함
  - 현지 세무서에서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시점에서 환급시점까지 세액에 대한 이자수입 상당액 만큼 비용을 발생시키며 투자자 자금 흐름의 경색을 초래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체는 부가세 환급신청을 약 절반(46.7%)이 하고 있으며, 부가세 환급 신청 후 환급 기간은 약 50%의 기업체가 ‘6개월 이내’라고 응답하였음
  - 부가세 환급 미신청 기업들의 경우 미신청 이유로는 ‘신청시 현지 정부의 세무 실사’라는 응답이 30.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신청 절차의 복잡’을 지적하였음
  
- 환급지연의 원인으로는 인도네시아 전산시스템의 열악을 들 수 있음
  - 외국인을 전담하는 세무서 역시 수기로 세무자료를 관리함
  - 선 환급 후 검증 시스템이 환급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현지 세무서 역량에 비추어 도입이 불가함

-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제도의 불비도 들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 내부통제제도가 불비되어 개별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도구가 갖추어지지 않음
  - 국제투명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청렴도가 180개국 중 143위임
  - 인도네시아 부패위원회(KPK)에서 정부 부패 특히 통관 및 조세영역에서의 부패 방지에 힘쓰고 있으나 복잡한 구비서류 및 통관절차로 인하여 급행료 등 불법적인 커미션 수수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 2) 對韓 수입규제 동향

### 가) 2008년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 ① 수입규제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에 ASEAN을 통해 중국, 한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자유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반덤핑 등의 수입규제 관련 조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반덤핑 제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 조정관세 부과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포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 강화, 통관시 SNI 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임

## ② 수입규제 내역

〈표 V-9〉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비코팅 인쇄용지 (Uncoated Printing Paper)	4802.55 4802.56 4802.57	반덤핑	03.2.10	04.11.11	관세율: 59.64% 09년 11월 11일까지 적용
열연코일 (HRC: Hot Rolled Coil)	7208.40/51/5 2/53/54	반덤핑	08.4.7		
도기류 제품 (Ceramic Table wear)	6911.10 6911.90 6912.00	세이프가드	05.5.13	06.1.4	2012년까지 조치 연장 - 09.1.4~10.1.3: 1,200루피아/kg - 10.1.4~11.1.3: 1,150루피아/kg - 11.1.4~12.1.3: 1,100루피아/kg
못과 선재 (Nail & Wire rod)	7317	세이프가드	08.11.11	조사중	
포도당 탄산암모늄(dextrose Monohydrate)	1702.30	세이프가드	08.5.14	조사중	
Carbon Black	2803.00.10 2803.00.30	반덤핑	04.9	09.9	Korea Steel Company(10%), Columbian Chemical Korea(7%), Korean Carbon Black(9%)

Source: Kotra 국가정보 인도네시아

- 한국 상품에 대해 2008년 중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경우는 없었으며, 진행중인 건도 덤핑판정이 확정적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산 복사/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판정을 다시 내린 것에 대해 WTO에서 한국의 반덤핑 재판정에 대해 절차적인 하자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 보복관세를 추진할 수도 있도록 하는 판정이 난 바 있었으나, 별다른 보복조치가 없이 무마되었음

③ 2008년 수입규제 변동 내역

- 아무런 공식적인 수입규제 해소사태가 없던 2007년과 달리 2008년에 들어와서는 한국산 제품 3건(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2건)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파악이 됨
- 원래 2009년까지 7~10%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국제 경제위기를 맞아 타이어업계나 국내 관련 산업계의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동 규제를 자발적으로 해제하였음
- 비코팅 인쇄용지(HS4802.52) HS코드가 세번 변화되어 원래 기존의 반덤핑 대상인 비코팅 인쇄용지의 HS 번호는 4802.55.40.00, 4802.56.30.00, 4802.57.30.00 등이었으나, 최근 관세율표상에서는 HS 번호에 일부 변경이 발생해 4802.55.90.00, 4802.56.90.00, 4805.57.90.00 등으로 세번 변경되었음
- 도기류 제품(Ceramic Table wear)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관세율이 인하되어 왔는데, 금년 4월부터 1년간 kg당 1,200루피아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함

나) 2009년도 수입규제 현황 및 동향

- 아직은 인도네시아 기업이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활성화 되지 못해 수입규제가 주로 일부 단체나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말부터 본격화된 세계 경기침체로 중국 등 후발도상국들의 제품이 선진국시장에서 선회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덤핑판매를 시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수입규제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국내 철강업계가 국제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게 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산과 말레이시아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정식으로 개시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음

### ① 수입규제

- 2009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정이 나서 본격적인 반덤핑조사가 시작됨
- 인도네시아 국내외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최근에 각종 수입규제 장벽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조사로서 반덤핑 판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또한 2009년 8월부터 204개 개도국을 제외한 국가에(한국은 적용 대상) Destrose Monohydrate 세이프 가드를 가동하였음
  - 동 제품군에 포함되는 제품은 Glucose syrup, Dextrose monohydrate pharma grade, maltodextrin 등이며, 관세는 3년 동안 탄력적으로 운용될 예정임

### ② 수입규제 동향

-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가 체결, 발효되면서 인도네시아 수입 시장이 빠르게 개방됨에 따라, 이를 커버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조치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통관검사나 수입허가 절차 강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통관절차의 개선 및 선진화라는 명분하에서 수입을 위축시키는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는 중임
- 기존의 공산품 국가표준에 이어 농산물에 대한 국가표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하며, 당장 2007년에는 마늘, 2008년에는 사과와 코코아 등에 품질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 또한 2008년 들어서 그동안 전문성 미비로 대충 통관을 해주었던 화학제품들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면서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통관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인도네시아 통상정책 기조는 FTA 활성화로 방향이 잡혀 있으나, 내수시장 방어를 위한 틀로서 반덤핑 관정 등의 활용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불거질 경우,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 동북아 국가 제품을 타깃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③ 수입규제 예상품목

- 최근 들어 한국의 수출이 급증한 품목으로는 텔레프린터, 페놀수지, 섬유원단,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한 품목과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음
-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수입량 급증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가 제기되는 품목으로는 가전업체와 섬유업체가 지난해부터 세이프가드 발동을 주장해 옴
- 또한 자국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철강 등 원자재 가공품, 제지, 농산물 등에 대해 수입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비재 수입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면서 시중 소비자가격을 조사해 조정관세를 매기거나 종량세와 같은 추가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소비재 수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임

## 2. 관세제도

### 가. 관세행정

- 인도네시아 관세청(Director General customs and Excise)은 관세와 소비세를 관장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관련 내국세 징수, 국내 산업 보호, 무역촉진 및 산업 지원, 밀수단속 및 불법무역 단속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세관개혁(Customs Reform)을 착수했으며, 세관개혁의 핵심은 Main Service Office(KPU) 신설과 Indonesian National Single Window(INSW) 운영임
  - KPU는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업무처리 기법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고품질 서비스와 능률적인 통제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됨
  - INSW는 세관통관을 위해 통합 자료 및 정보제출과 처리를 가능하게 하며, 향후 ASEAN Single Window(ASW)의 일부가 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전체 세관직원은 약 10,000명, 본청인력은 약 1,500명, 13개 본부세관을 포함하여 전체 130개의 세관이 있음
- 인도네시아 관세법은 1995년 법 No, 10을 제정하여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나. 관세 분류방식

- 인도네시아의 수입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 체계로 되어 있음
  - 1993년 1월부터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가 추진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CEPT에 따른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중국과의 FTA협정 체결로 2004년부터 일부 농산물에 대해 Early Harvest Program을 적용,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2005년 7월부터 공산품에 대해서도 본격 관세인하가 시작됨
- 인도네시아는 1989년부터 HS제도를 도입하였고, 총품목은 종전의 약 5,000개에서 9,100개(HS 단위를 기준)으로 증가하였음
- 한-ASEAN 간에도 FTA(2007년), 일-ASEAN FTA(2008년) 등 2개의 FTA 관세체제도 추가되었음

#### 다. 관세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안정보장,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과 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
  
- 수입관세는 수입품 관세평가액의 0~15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한-ASEAN 간 FTA 체결로 대한민국 수입제품 관세율은 대부분 면제가 되고 민간품목군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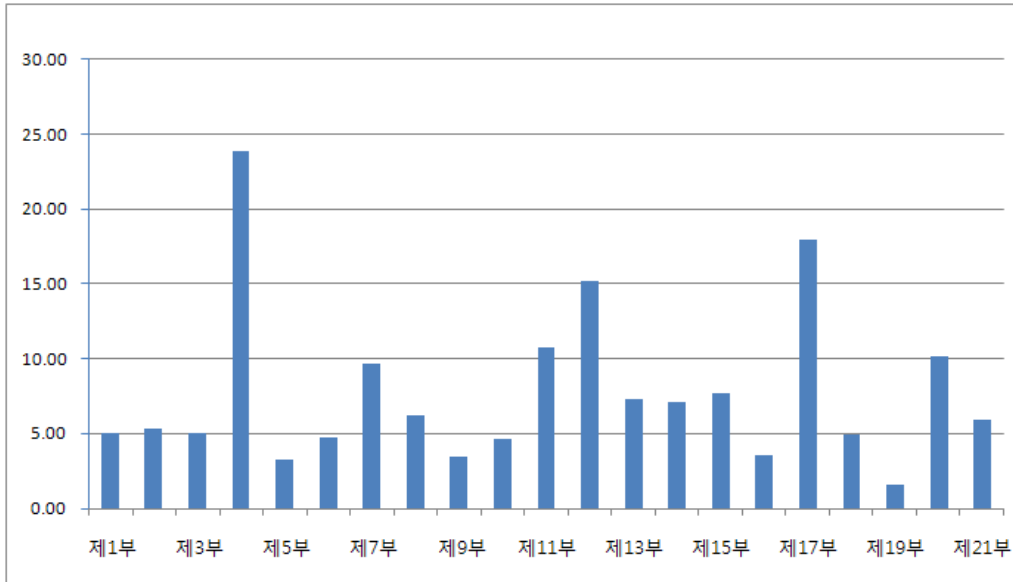
〈표 V-10〉 인도네시아의 평균관세율(2009)

(단위: %)

구분		평균관세율
	총합계	7.568
제1부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5.08
제2부	식물성 생산품	5.32
제3부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5.06
제4부	조제식료품과 음료·알코올·식초 및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3.85
제5부	광물성 생산품	3.26
제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4.72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9.71
제8부	원피	6.19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재료의 제품,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3.42
제10부	목재펠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 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지와 판지 및 이들의 제품)	4.65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제품	10.74
제12부	신발류·모자류·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조제우모와 그 제품, 조화, 인모제품	15.23
제13부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7.29
제14부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과 주화	7.06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7.68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57
제17부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18.00
제18부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시계와 악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89
제19부	무기, 총포탄 및 이들의 부속품과 부분품	1.60
제20부	잡 품	10.19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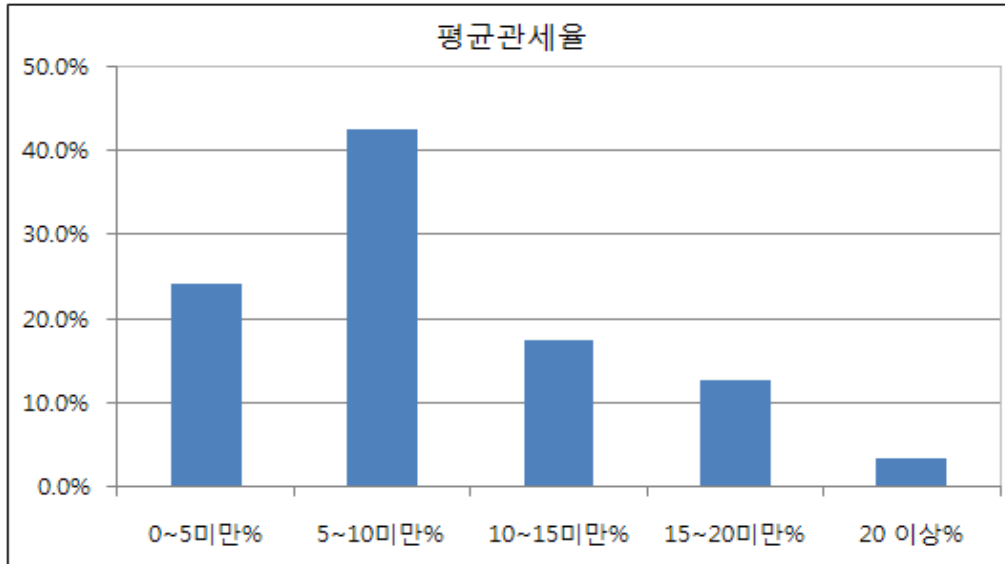
[그림 V-1] 인도네시아 부별 평균 관세율 분포

(단위: %)



- 인도네시아의 평균관세율은 7.56%이며, 평균관세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0~5% 미만 이 24%, 5% 이상~10% 미만이 42.6%, 10% 이상~15% 미만이 17.4%, 15% 이상~20% 미만이 12.6%, 20% 이상이 3.3%를 차지하고 있어 0~10% 미만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V-2] 인도네시아의 평균관세율별 분포현황(2009)



- 인도네시아의 종가세와 종량세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9년 현재 종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8,705개<sup>88)</sup>로서 약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량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33개로 0.4%에 불과함

〈표 V-11〉 인도네시아의 종가세·종량세 비율(2009)

	총수	종가세	종량세
개수	8738	8705	33
비중	100%	99.6%	0.4%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상 또는 기업 비즈니스맨들은 중국계로서 싱가포르 또는 바탐섬 등 자유무역지대로 일단 수입을 하여 하차, 보관한 후 인도네시아로 재수입하는 일이 많았음

88) 인도네시아에서는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품목번호들이 있어 이들을 제외한 개수임

- 싱가포르에서 환적한 후 제반 선적 서류를 교환하여 아세안 특혜관세 혜택을 받거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수입통로를 통해 관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많이 행해졌는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이 부패적결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라. 관세평가제도

- 관세산정 방식으로는, HS 도입 이전에는 종량세 품목이 521개 품목으로 총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1989~1990년 기간 중 모든 종량제를 종가세 및 수입과징금으로 대체시킨 바 있음
  - 이와 같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화하는 것은 관세율의 공개성과 예측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관세부과는 국내인도가격(CIF)을 기준으로 함
    - 관세금액 = 수입품 가격 × 관세율 × 관세 환율
    - 관세 환율은 재무성이 외국 통화를 루피아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주 발표함
- 관세부과 기준금액은 FOB 가격 기준으로 U\$5,000 이상인 경우, 수출시 SGS<sup>89)</sup>가 평가한 수출국의 정상 시장 가격과 송장금액 중 높은 가격임
- U\$5,000 이하인 경우 송장금액, 단 송장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유사 물품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됨
  - 특히 동일한 품목이 수입될 경우, 예전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샘플 등으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했다가 나중에 대량 수입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려면 예전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정관세와 벌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89)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출물건 검사기관

## 마. 관세환급제도

-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수입관세를 환급해 주는데 이는 수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완제품 및 원자재의 수입시 수입관세를 일단 납부하고 제조, 가공 및 수출 후 환급받는 제도임
- 관세환급절차는 사전 유예가 가능하므로 (은행 보증서 이용) 통상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잠정 유예 통관이 됨(수출 신고시 완전해제)
- 환급대상은 물품의 수출 전 3년 이내에 수입한 완제품 및 원자재로서 최종 수출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환급대상 제외 품목으로는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윤활유, 연료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수입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벌과금 등이 있음
- 환급절차는 ① 신청서 제출, ② 환급 결정, ③ 수입관세 환급지시서(SPMKBM) 작성, ④ 환급금 지급의 과정을 거침
  - 인도네시아에서 관세 환급은 절차나 시스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짐
  - ① 신청서 제출
    - : 신청서는 수출 후 1년 이내에 수입관세 환급 신청서(공통서류: Form E)와 수입증빙 서류, 수입되는 제품 및 원재료와 최종 수출품의 연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② 환급 결정
    - : 담당부서(P4BM)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하고 환급 승인시 신청금액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 확인 후 국영은행을 통해 지급함
  - ③ 수입관세 환급지시서(SPMKBM) 작성
    - : 수입관세 환급지시서는 3부를 작성하며, 원본은 신청인이, 한 부는 국영은행

이, 다른 한 부는 예산국장에게 송부함

④ 환급금 지급

: 국영은행에서 환급지시서의 진위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함

### 바. 원산지 규정

-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EU 수출시 관세환급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고, 미국이나 EU에 섬유류를 수출할 때도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됨
  - 인도네시아에서 통관 서류로서의 원산지 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 후 관세환급 신청시에나 요구되는 정도임
  - 한-ASEAN FTA가 발효되면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당 원산지 증명서(AK-FTA양식)가 요구되고 있음
  
- FTA 내 수입 원산지증명 절차 변경 법안(SE-01/BC/2010)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COO Form D(CEPT-AFTA), Form AK(AKFTA), Form JIEPA(IJ-EPA)의 경우에만, 제 3국 송장(Invoice) 사용을 허가하고 있음
  - 중국에 공장이 있으나 한국에서 송장(Invoice)을 발행하는 경우 AKFTA<sup>90)</sup> 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함

## 3. 통관환경 적용사례

### 가. 개요

- 앞서 III장에서 개발한 통관환경 평가지표 38개별로 문헌조사와 통계조사에 근거<sup>91)</sup>

---

90) ASEAN Korea Free Trade Agreement

91) 이번 조사에서 활용한 기초자료로는 외교통상부가 발간한 '2008 분야별 외국의 통상환경', '2009 분야별 외국의 통상환경', '통상마찰·기업 애로사례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간한 'ASEAN 비관세장벽 현황조사', '국가정보 인도네시아', 각종 인터넷 공개자료, 관세청의 각종 연구보고서

하여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에 적용시켜 보고자 함

- 차후에 전문가조사와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기초로 평가지표별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평가지표는 10개 평가요소와 각 평가요소별로 제시된 38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이번 평가요소별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들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기업들의 세관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 많아 여러 부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특별히 투명성 평가요소의 검토내용으로는 인도네시아의 통관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 합리적인 공개방법으로 공시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낮으며, 세관의 판단기준이 자의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관세장벽 평가요소의 평가결과로는 인도네시아의 관세 부과방법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방법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비관세장벽 평가요소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강화 및 조정관세 부과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 강화, 통관시 SNI 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표 V-12〉 평가요소와 가능한 평가지표

평가요소	가능한 평가지표
1. 투명성	1-①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1-②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1-③ 통관과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1-④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1-⑤ 국제협약 가입상황
2. 공정성	2-①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2-② 수입물품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3. 적법성	3-① 통관과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3-② 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4. 관세장벽	4-① 수입/수출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율의 수준 4-② 관세의 부과대상, 부과구조, 부과방법의 적정성 4-③ 감면세율 및 관세환급률 수준 4-④ 관세의 징수유예 및 보세 허용 정도
5. 비관세 장벽	5-① 일반적 통관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및 행위 정도 5-②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5-③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6. 효율성과 효과성	6-① 통관절차의 합리성과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6-② 통관절차 및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6-③ 통관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6-④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6-⑤ 통관관련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6-⑥ 통관관련 업무량과 담당조직, 담당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6-⑦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6-⑧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6-⑨ 통관 단위업무 및 전체 통관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6-⑩ 불법물품의 적발실적 6-⑪ 평가대상국에서 수출한 불법물품이 외국세관에서 적발된 실적
7. 반부패	7-①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7-②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8. 권익보호	8-①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8-② 통관관련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9. 서비스	9-① 당해 통관절차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9-② 통관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10. 통관환경 개선노력	10-① 세관당국의 통관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10-② 통관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10개 요소	38개 지표

주: 이 표는 Ⅲ장의 지표개발에서 제시된 표이나, 각국 지표 적용 사례시 대비하기 위하여 중복하여 예시한 것임

- 효율성과 효과성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들어 통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통관절차가 비합리적이고 복잡하다는 의견들이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반부패 평가요소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세관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서비스에 대한 평가요소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통관 절차를 이용했던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관 통관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통관시 비공식적인 비용 발생, 통관수속의 지연 등의 의견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나. 지표별 적용사례

1) 투명성

1. 투명성	1-①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1-②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1-③ 통관과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1-④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

1-①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1-②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 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인도네시아의 통관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으나, 국문 번역 자료는 거의 찾기 어렵고 영문 번역 자료도 접근성이 높지 않음
  - 인도네시아의 재무부 산하 관세국에서 발행하는 관세율표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시 관세국 홈페이지가 자주 다운되고, 영어 버전 사이트가 검색되지 않아 관련자료들에 접근하기가 어려움

- 화물 수입시 적용되는 세관 고지 환율이 매 1주일 단위로 변경되어 수입자의 불편이 크며, 세관 고지 환율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나 결정되어 통지되는데, 은행의 수입세 관련 업무 접수마감 시간이 매일 오전 11시로 제한되어 있어 매주 월요일은 수입 신고시 준비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고 수입세 납부가 불가능함
  
- 인도네시아의 경우 통관에 적용되는 각종 법규를 영문 등 외국어로 번역된 공개 자료의 접근성이 어려워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의 통관관련 법령과 규칙 등 규제내용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으나,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개방법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1-③ 통관과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인도네시아 통관제도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검사관의 자의적인 규정해석 등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세관에서 서류 심사시 가격이 너무 낮다고 자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관세 및 벌금을 추징하게 되는데, 이 때 세관에서 제시하는 판매가격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단계가 많은 소비재 분야에서 과도한 조정관세를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세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준과 근거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입자에게 추징되는 벌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실제 승소 확률은 상당히 낮은 실정임
  - 이의제기 절차 및 판단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세나 벌금 추징의 기준

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수입통관 절차에 있어서 현재 인도네시아 통관 규정상 1건의 통관 서류상에 수출용 원·부자재일지라도 수입화물의 종류가 5개 이상이거나, 일반소비재(내수 판매용)인 경우는 필수 검사품목(JALUR MERAH)으로 지정하여, 화물 확인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무자들에 따라 적용방법이 다르고 관할 세관마다 시행에 차이가 있어 수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음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통관애로사항 중 하나가 세관결정이 자의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임
  - 세관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마련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1-④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는 공개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세관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근거 이유가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인 근거의 공개가 필요한 상황임
- 평가내용: 세관결정의 이유가 공개되고는 있지만, 좀 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판단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세관결정의 이유의 공개 정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부족하므로 전문가 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좀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확보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1-⑤ 국제협약 가입상황

- 한-ASEAN FTA는 2007년 6월에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0년까지 전체 과세부과 대상품목의 92.4%에 달하는 10,403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됨

- AFTA(아세안 역내 자유무역협정)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제무역 보호정책과 지역주의의 대두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간에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로 만들어진 역내 자유무역협정임
  
- 2000년 11월 싱가포르 중-ASEAN 정상회담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중-ASEAN을 포함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하면서 시작된 중-ASEAN FTA는 2002년 12월 캄보디아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본협정이 체결되었음
  - 2004년 11월 라오스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품분야 관세철폐계획에 합의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되어 모든 무역거래 재화의 90% 이상이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음
  
- 일본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은 2007년 8월 20일 광범위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연대협정(EPA)에 서명하여 2008년 7월부터 발효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1995년 1월 1일부터 WTO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으로 예외적인 조치나 협정 적용의 유보가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음
  
- WCO(세계관세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인도네시아도 WCO의 각종 협약들(국제통일 상품분류 협약,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및 이스탄불 협약, 세관의 청렴성에 관한 아루샤 선언,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세이프 프레임워크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1년 이후 다양한 협정들을 체결하였음
  -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71.8)
  - 건설협력 양해각서(81.7)
  - 임업협정(87.6)
  - 항공협정(89.9)

- 이중관세 방지협정(89.11)
- 투자보장협정(91.2)
- 법무자료 교환협정(96.12)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정(97.11)
- 건설협력약정(99.4)
- 범직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00.11)
- 사법공조협정(02.3)
- 자원협력협정(02.4)
- 도로협약약정(03.1)
-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06.12)
- 한-ASEAN FTA 상품협정 체결(06.5), 발효(07.6)
- 한-ASEAN FTA 서비스협정 체결(07.11), 발효(09.5)
- 한-ASEAN FTA 투자협정 체결(09.6)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한-ASEAN FTA, AFTA(아세안 역내자유무역협정), 중-ASEAN FTA, 일-ASEAN EPA, 일-아세안 FTA 등 다수의 FTA를 체결하였고, WTO와 WCO에 가입되어 있음

2) 공정성

2. 공정성	2-①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2-② 수입물품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

2-①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2-② 수입물품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

□ 공정성 평가에 있어서 인도네시아는 2006년 한-ASEAN FTA를 체결하게 됨에 따라 협정문에 규정된 GATT 원칙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 한-ASEAN FTA 상품무역 협정문 제2조에서 국내 조세 및 규범에 관한 내국민대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통상절차상 내국민대우 적용을 받게됨
- 한-ASEAN FTA 기본협정 제2.4조에서는 최혜국 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상호간에 부여하여야 함
-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WTO의 회원국으로서 GATT 원칙인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공정성의 평가자료인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준수 정도’와 ‘수입물품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GATT 원칙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평가내용: 통관의 기초환경과 통관 집행 절차별로 내국민대우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의 준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 적법성

3. 적법성	3-① 통관과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3-② 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

3-① 통관과 관련된 평가대상국 법령·규칙과 협정의 일치 정도

3-② 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 또는 행위의 협정위반 정도

- 인도네시아는 한·ASEAN FTA를 체결함에 따라 기본협정과 상품협정, 분쟁해결제도 협정에 따라 각종 처분을 해야 함
-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ASEAN FTA 이전에 WTO 규정과도 합치되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으로서 예외적인 조치나 협정적용의 유보가 인정되는 경우들을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2002년 1월에 발표된 AFTA(ASEAN Free Trade Agreement)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다른 5개 최초 ASEAN 회원국들에서 실시되었고, 인도네시아는 당초 약속한 세목(7,206개)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에 대하여 5%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적어도 65% 이상이 원산지가 ASEAN인 물품에 대해서는 5% 미만으로 관세를 인하하였음
-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 1월 새로운 관세인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새로운 관세율표에서는 세율을 국제적인 비ASEAN 적용세율과 ASEAN적용세율로 구분하고 있음
  - 대부분의 비ASEAN 국가 적용세율은 자동차 관련 품목과 주류 같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0%, 5%, 10% 권역으로 나뉨
- 우루과이라운드 시장접근 협상에서 인도네시아는 관세율표상 94.6%의 세율을 양허했음
  - 대부분의 세목은 40%로 양허되어 있음
  - 양허세율이 40%를 초과하거나 양허가 되지 않은 품목은 자동차, 철강, 철강제품 및 일부 화학제품임
- 인도네시아는 2005년까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양허한 품목에 대한 수입부과금(import surcharges)을 제거하기로 약속한 바 있고, WTO 농업협정에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농산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이를 관세로 대체하기로 동의한 바 있음
- 농업분야는 가장 민감하고 과도하게 보호되는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341개 세목이 40% 또는 그 이상의 세율로 양허되어 있음
  - 현재 논의 중인 Doha 협상에서 인도네시아는 쌀, 설탕, 콩 및 옥수수가 관세 인하 품목에서 제외되는 특별품목으로 취급하는 안을 옹호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수입관세 과세가격 산정은 1997년 선적 전 검사제도 폐지 전까지는 다소 불합리하였다고 할 수 있었으나, 1997년 폐지 이후에는 CIF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

하고 있으며, 보험이 없는 송장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갖고 있는 기준에 보험료를 포함시켜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과세가격 산정상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의 통관 관련 법령과 규칙이 협정에 따라 비교적 일치되고 있으며 통관과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처분이나 행위가 대부분 협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됨

#### 4) 관세장벽

4. 관세장벽	4-① 수입/수출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율의 수준 4-② 관세의 부과대상, 부과구조, 부과방법의 적정성 4-③ 감면세율 및 관세환급률 수준 4-④ 관세의 징수유예 및 보세 허용 정도
---------	--

##### 4-① 수입/수출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종류와 관세율의 수준

□ 2009년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관세품목의 약 60%에 대해 0~10% 사이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1994년 20%였던 인도네시아의 단순평균 실행관세율은 현재 7.56%(2009년) 수준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6년 1월 1일 새로운 관세인하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새로운 관세율표는 세율을 국제적인 비ASEAN 적용세율과 ASEAN적용세율로 구분하고 있음
- 대부분의 비ASEAN 국가적용세율은 자동차 관련 품목과 주류 같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0%, 5% 및 10% 권역으로 나뉨
- 농업 분야는 가장 민감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341개 세목이 40% 또는 그 이상의 세율로 양허되어 있음

□ 1993년 1월부터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가 추진됨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CEPT에 따른 특혜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중국과의 FTA협정 체결로 2~4년부터 일부 농산물에 대해 Early Harvest Program을 적용하여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2005년 7월부터는 공산품에 대해서도 본격 관세인하가 시작됨
- 인도네시아는 1989년부터 HS제도를 도입, 총품목은 종전의 약 5,000개에서 9,100개(HS 9단위를 기준)로 증가하였음
- 2007년 7월 1일부로 한-ASEAN FTA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9년 1월부터 일반품목군(품목수 기준 91.12%, 수출액 기준 90.43%)의 관세가 폐지되었음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안정보장,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

#### 4-② 관세의 부과대상, 부과구조, 부과방법의 적정성

- 1달 이내에 추징된 관세 및 벌금 납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추징 고지서 발급 시점에 추징금액을 납부하고 세관에 신고하여야만 출고동의서를 발급하므로 세관 내규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수입관세 과세가격 산정상의 불합리가 지적되고 있음
  - 관세평가가격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일부 수입품에 대해 10% 부가가치세 외에 사치세를 부과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의 관세 부과방법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방법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 4-③ 감면세율 및 관세환급률 수준

- '2009년 인도네시아 Grand survey'<sup>92)</sup>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환급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만족도는 불만족(60.0%)이 만족(4.7%)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부가세 환급 신청 후 환급기간은 약 50%의 기업체가 '6개월 이내'라고 응답
  - 6~9개월 걸리는 기업이 18.6%, 9~12개월 걸리는 기업이 14.3%, 1년 이상 걸리는 기업도 11.4%
- 현지 진출 기업들의 46.7%만이 환급신청을 하고 있어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이 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음
- 부가세 환급 미신청 이유는 '신청시 현지 정부의 세무실사'라는 응답이 30.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신청 절차의 복잡'을 지적하였음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관세환급은 절차나 시스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007년 7월 1일부로 한-ASEAN FTA를 적용하고 있으며, 2009년 1월부터 일반품목군 (품목 수 기준 91.12%, 수출액 기준 90.43%)의 관세가 폐지되었음

평가내용: 인도네시아의 감면세율과 관세환급률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실제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지 진출 기업들의 46.7%만이 환급신청을 하고 있어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이 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음
- 대다수의 기업들이 환급신청을 통하여 정당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4-④ 관세의 징수유예 및 보세 허용 정도

평가내용: 관세의 징수유예와 보세 허용 정도에 대해서는 차후 관련 자료를 보강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92) KOTRA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2009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 150개사들을 대상으로 투자환경을 조사한 보고서임

## 5) 비관세장벽

5. 비관세장벽	5-① 일반적 통관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및 행위 정도 5-②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5-③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	---

## 5-① 일반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 정도

- 2008년도의 경우 공식적인 수입규제 제소가 한국산 제품 3건(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2건)이 발생하였음
- KOTRA에서 2004.10~11월 두 달간 조사한 비관세장벽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5건이 발굴되었음
- 자동차의 경우 불합리한 관세율 선정기준, 특히 조립률에 따른 차별적 관세 부과 사례
  - 의류의 경우 부가세 및 법인세 환급 과정의 부조리, 환급시 30% 정도는 커미션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례
  - 의류의 경우 불합리한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금 규정으로 인한 투자장벽
  - 전수 검사 실시로 통관절차 지연에 따른 손실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석유화학 산업의 수입금지
- 비코팅 인쇄용지(HS4802.52) HS코드는 세번 변화되어 원래 기존의 반덤핑 대상인 비코팅 인쇄용지의 HS번호는 4802.55.40.00, 4802.56.30.00, 4802.57.30.00 등이었으나, 최근 관세율표상에서는 HS번호에 일부 변경이 발생해 4802.55.90.00, 4802.56.90.00, 4802.57.90.00 등으로 세번이 변경되었음
- 2009년 8월부터 204개 개도국을 제외한 국가에(한국은 적용대상) Dextrose Monohydrate 세이프가드를 가동하였음
- 동 제품군에 포함되는 제품은 Glucose syrup, Dextrose monohydrate pharma

grade, Maltodextrin 등이며, 관세는 3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 기존의 공산품 국가표준에 이어, 농산물에 대한 국가표준을 도입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마늘, 2008년에는 사과와 코코아 등에 품질기준을 적용하였음
- 또한 2008년 들어 그동안 전문성 미비로 대충 통관을 해 주었던 화학제품들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면서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통관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소비재 수입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면서 시중 소비자가격을 조사해 조정관세를 매기거나 종량세와 같은 추가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소비재 수입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임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는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통관 강화 및 조정관세 부과 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 강화,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5-②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수출입제한의 정도

-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중-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 인도네시아-일본 FTA 등 다수의 FTA로 인해 시장이 빠르게 개방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경기침체를 맞아 내수 산업 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점점 높여가고 있음
  - 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 및 직물관련 제품, 옥수수, 쌀, 대두류, 사탕수수류 등의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수입 허가(NPIK)를 취득해야 함
  - 수입허가제도 이외에도 화학제품, 중고기계, 섬유, 세라믹 제품, 통신제품 및 기타 유제품을 수입할 때 ‘선적 전 검사(SGS 검사)’나 ‘형식 승인’ 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 및 통관을 지연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 최근 들어 국제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12월 발표된 무역부장관령을 통해 2009년부터 전자제품, 의류, 아동

용 완구, 신발 및 샌들, 식음료 등 5대 품목군에 대해 무역부에서 기존의 수입허가 이외에 추가로 등록수입업자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수입 허용, 5대 지정항 및 국제공항으로만 수입하되, 인가받은 선적 전 검사기관의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2007년 7월부터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제도인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제도를 강화해 34개 품목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통관을 제한해 오고 있음
- 2008년 9개 품목을 추가하고, 2009년에 다시 2개 철강재 품목군을 추가해 총 45개 품목에 대해 SNI 인증 강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국가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금지나 수입쿼터와 같은 수량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입은 수입업자만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은 환경관련 유해물질(폴리머에틸렌 등), 오존파괴물질, 납폐기물, 중국어로 표기된 인쇄물 등이며 납폐기물, 중국어로 표기된 인쇄물 등은 특별허가를 얻을 시 수입이 가능함

□ 수입허가 품목(HS10단위)은 1990년의 1,112개 품목에서 현재 196개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폐기물, 폭약, 석유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로 115개 품목이 그 대상임

□ 특히 인도네시아 국내외 경기침체와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각종 수입규제 장벽을 강화하려는 추세임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국가들과의 FTA가 체결·발효되면서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이 빠르게 개방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조치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제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통관 검사나 수입허가 절차 강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 통관절차의 개선 및 선

진화라는 명분하에서 수입을 위축시키는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는 중임

5-③ 비관세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한 무역업체의 비용부담 정도와 발생빈도 및 통관시간 지체 정도

- 선적 전 확인 조사제도의 경우, 확인조사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수출상품의 가격에 전가됨에 따라 수입자의 비용부담이 증가되어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 선적 전 확인조사 비용은 철강판재류의 경우 1건당 US\$750, 섬유류는 FOB 가격의 0.85% 임
  
- 수입허가 품목(HS10단위)은 1990년의 1,112개 품목에서 현재 196개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으며 폐기물, 폭약, 석유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면 실제로 115개 품목이 그 대상임
  
-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 관리하는 특정 품목들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별도의 수입허가(NPIK)를 취득해야 함
  - 별도의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품목으로는 장난감, 전자, 신발, 의류 및 식물 관련 제품, 옥수수, 쌀, 대두류, 사탕수수류 등이 있음
  
- 수입허가(NPIK)제도 이외에도 ‘선적 전 검사(SGS 검사)’나 ‘형식승인’등의 제한을 통해 수입·통관을 지연시키는 여러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 이러한 수입·통관을 지연시키는 행태로는
    - 화학제품 수입시는 MSDS 반드시 첨부
    - TEXTILE을 재료로 하며 생산된 일반 소재 제품(ex: 식탁보, 수건, 양말, 의류 등)의 제품수입시 선적 전 검사(SGS) 요망
    - CERAMIC 제품 수입시도 선적 전 검사(SGS)를 받아야 하며, 수입시 수입관세는 물류 종량세를 별도로 납부

- 통신 제품 수입시는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전화, 모뎀 등)
  - 오일 및 기타 유류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품에 대한 형식 승인 필요
  - 수입시 규제하는 사항이 과다해 전체 열거 불가능
- 인도네시아의 경우 반덤핑 등의 수입규제 관련 조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나, 철강 분야 등 자국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한 반덤핑 제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 2008년도의 경우 공식적인 수입규제 제소가 한국산 제품 3건(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2건)이 발생하였음
- KOTRA에서 2004년 10~11월 두달간 조사한 비관세장벽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5건이 발굴되었음
- 자동차의 경우 불합리한 관세율 선정기준, 특히 조립률에 따른 차별적 관세 부과 사례
  - 의류의 경우 부가세 및 법인세 환급 과정의 부조리, 환급시 30% 정도는 커미션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례
  - 의류의 경우 불합리한 초과근무 수당 및 퇴직금 규정으로 인한 투자장벽
  - 전수 검사 실시로 통관절차 지연에 따른 손실
  -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석유화학 산업의 수입금지
- 비코팅 인쇄용지(HS4802.52) HS코드는 세번 변화되어 원래 기존의 반덤핑 대상인 비코팅 인쇄용지의 HS번호는 4802.55.40.00, 4802.56.30.00, 4802.57.30.00 등이었으나, 최근 관세율표상에서는 HS번호에 일부 변경이 발생해 4802.55.90.00, 4802.56.90.00, 4802.57.90.00 등으로 세번이 변경되었음
- 2009년 8월부터 204개 개도국을 제외한 국가에(한국은 적용대상) Dextrose

Monohydrate 세이프 가드를 가동하였음

○ 동 제품군에 포함되는 제품은 Glucose syrup, Dextrose monohydrate pharma grade, maltodextrin 등이며, 관세는 3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공산품 국가표준에 이어, 농산물에 대한 국가표준을 도입하고 있는데, 2007년에는 마늘, 2008년에는 사과와 코코아 등에 품질기준을 적용하였음

□ 세관 통관시 겪는 애로사항 조사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통관시 비공식 비용 발생과 통관 수속의 지연이 각각 35.9%와 33.2%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 비관세 처분과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업체의 비용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처분과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통관시간도 오래 지연된다는 민원들이 많아 개선이 요구됨

### 6) 효율성과 효과성

6. 효율성과 효과성	6-① 통관절차의 합리성과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6-② 통관절차 및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6-③ 통관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창구 구축 정도 6-④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6-⑤ 통관관련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6-⑥ 통관관련 업무량과 담당조직, 담당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6-⑦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6-⑧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 정도 6-⑨ 통관 단위업무 및 전체 통관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6-⑩ 불법물품의 적발실적 6-⑪ 평가대상국에서 수출한 불법물품이 외국세관에서 적발된 실적
-------------	---

#### 6-① 통관절차의 합리성과 국제규범 또는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

□ 97년 4월 관세청이 사후 검사제도(Post-Entry Audit System)를 도입, 검사보다는 인증

에 의존함으로써 통관이 간편해짐

- 수입자, 은행, 세관을 연결하는 전자자료교환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 1997년 4월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자가 컴퓨터 디스켓에 양식으로 된 수입 서류를 제출 후 세관원의 검사는 수입업자 창고에서 사후에 실시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통관절차가 아직도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세관 통관시 겪는 애로사항 조사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통관시 비공식 비용 발생과 통관 수속의 지연이 각각 35.9%와 33.2%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의 통관절차에 대하여는 비합리적이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아직도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통관절차의 국제규범과 국제표준의 적용 정도는 좀 더 구체적인 현장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6-② 통관절차 및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 정도

□ 1997년 4월 수입 후 검사제도(post-entry audit system) 및 수입자·은행·세관을 연결하는 전자자료교환(EDI) 시스템 도입 이후 종전의 절차와 비교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며, 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검사관의 자의적인 규정해석 등의 행태들이 문제되고 있음

□ 1999년부터 인도네시아는 수입절차를 개정하는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음

-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에 있어 세관과 시스템 제공자 간 EDI제도라고 알려진 전자매체방식의 활용, 서비스 향상을 위해 비 현품검사 수단으로서 컨테이너용 X-RAY 활용 등이 있음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의 통관절차와 시스템의 전산화/정보화/자동화는 종전에 비하

여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때에는 좀 더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6-③ 통관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통관단일 창구 구축 정도

- 인도네시아는 National Single Window를 설치 중에 있으며, Tanjung Priok 항구에서 통관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서비스 센터를 신설할 계획중임
  - 동 센터는 Jababeka 공단(서부자바 짜까랑 소재)에 설치될 예정이며, 동 센터가 설치되면 동 지역업체들은 Tanjung Priok 세관에 가서 통관할 필요가 없음
  - 또한 해안감시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상감시센터를 신설할 계획임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는 최근들어 통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관단일 창구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통관 행정기관도 통일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실행중에 있음

6-④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 기법의 고도화 정도

-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은 WTO 개정교토협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기법을 적용하여, 업체 및 수입물품 위험도에 따라 차별관리하고 있음
  - 이러한 Channelling System은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통관제도로써 현지 우리 업체의 통관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 문제는 실제 운영과정에서 Priority Channel로 지정된 업체는 전체 150여 정도에 불과하며, 이 중 한국인 현지업체는 삼성, LG 등 5개 업체에 불과함
  - 대부분 Red 또는 Yellow 업체로서 통관과정에서 물품검사 또는 서류심사 등의 이유로 통관과정에서 물품검사 또는 서류심사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고위험 화물 및 수입자에 대한 표적화 심사 강화, 적절한 평가를 위한 DGCE의 능력 향상 등 밀수 및 저가신고에 대한 규제 노력을 하고 있음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위험관리, 심사통제 등 현대적 통관관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현지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6-⑤ 통관관련 다른 정부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

-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상무부, 농림부, 검찰, 경찰, 이민기관, 검역기관 등과 협력 및 공조관계를 구성하고 있음
- 수출입 금지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당국이 관리책임을 짐
  - 주요한 수출입 금지대상은 특정보호, 동·식물종 불법거래, 마약류 불법수입 등임
  -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은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구축된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불법수출입 거래의 발본색원 마약류 거래 원천차단 등을 위한 분야에서 관련회의나 협력체제 구축 등이 동시에 발전되고 있음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관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좀 더 구체적인 현장조사를 통하여 협조시스템 구축 정도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 6-⑥ 통관관련 업무량과 담당조직, 담당인원 및 전문성 확보의 적정성

- 2007년 7월 1일 자카르타 부두 세관이 기존의 1,2,3 세관 조직에서 단일조직(KPU)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세관 조직과의 봉급 차별화, 요원 선발 방법 차별화, 인사 고과 강화, 부정부패 방지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단일 지휘 체계에 의한 엄격한 수입 화물 통관 체계를 수입하여 가고 있음
- 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전략으로 조직기구와 업무절차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세관제도 및 절차의 간소화

와 합리화가 주 목표임

-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최근 관세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부패적결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친인척 등용을 배제하고 관세 공무원들이 전문가로서 부패와 충돌 없이 일하도록 기본적 필요에 맞는 충분한 봉급, 충분한 보상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는 최근 관세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와 부패적결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임

6-⑦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계 구축과 활용 정도

-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체에 대하여 빠른 통관을 보장할 수 있는 'GOLD CARD'제도를 도입하여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무역지원을 하고 있음
- 정책과제를 자문하고 기술위원회 업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국립 관세자문위원회를 설립(공공 및 민간분야 대표로 구성)할 예정이어서, 특정한 평가분야 및 무역 지원문제 등에 대한 자문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아직 무역업체,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계 구축과 활용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극복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는 무역업체와 수출입물류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계 구축과 활용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6-⑧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활용 정도

- 인도네시아는 영토가 광활하고 다수 국가와 국경을 접촉하여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나, 아직 이 부분이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약점이 세관 현대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또한 밀수에 취약한 것으로 보임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 관세당국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활용 정도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6-⑨ 통관 단위업무 및 전체 통관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

□ 기본적으로 통관 서류를 받은 후 24시간 내에 통관 완료 후 DELIBERY하고 있으며, JAUR MERAH(화물 검사 품목으로 지정)에 해당될 시 화물 검사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소요기간이 한 두 시간에 정리가 되었으나, 2007년부터는 검사가 강화되어 100% 전수 검사로 들어가면서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보세구역 내에 소재한 업체가 아닌 일반 공단 지역에 입주한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위의 경우이며, 보세구역 내에 입주한 업체는 수출·입 통관이 이루어지고(세관원이 공단에 상주), 부두의 세관에서는 단지 신고 절차만 거치고 전반적인 흐름은 동일함

□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세관직원의 의무를 확정하는 수입화물 처리시간대를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 ① 수입신고시 제출로부터 검사 여부 채널이 결정될 때까지 처리시간의 최대화
- ② 적색채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접수 승낙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실제 현품검사의 실시
- ③ 수입신고 접수로부터 48시간 이내 반출통지서의 발부
- ④ (품목분류)접수번호가 발부된 30일 후에는 분류전문가는 품목분류 결정 통보

○ 동 제도는 선박회사가 적하목록을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이 제도는 물품전달 시간을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시스템으로 준비된 적하목록은 반출 또는 반출을 위한 허가 전에 수입서류 정리를 지원할 수 있어 관리에 효과적임

- 평가내용: 통관의 단위업무와 전체 통과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장에서 실제 측정하고, 현지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6-⑩ 불법물품의 적발실적

- 평가내용: 불법물품의 적발실적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으며, 차후 확보하여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임

6-⑪ 평가대상국에서 수출한 불법물품이 외국세관에서 적발된 실적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한 불법물품이 외국세관에서 적발된 실적은 차후 확보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7) 반부패

7. 반부패	7-①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7-②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7-③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

7-①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을 요구받은 정도

- 인도네시아 정부 내부통제제도가 불비되어 개별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도구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음
  - 국제투명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청렴도가 180개국 중 143위임
  - 인도네시아 부패위원회(KPK)에서 정부 부패 특히 통관 및 조세영역에서의 부패 방지에 힘쓰고 있으나 복잡한 구비서류 및 통관절차로 인하여 급행료 등 불법적인 커미션 수수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의 세관공무원들의 청렴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7-② 이해관계자가 통관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의 세관공무원들에게 통관과정에서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그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음

## 7-③ 부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운영의 적정성

- 2002년부터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관세행정 혁신을 시작하였고, 주된 내용으로 부패 척결을 내걸었음
- 민원인의 직접접촉을 줄이고, 세관자료를 공개하며 세관 공무원의 복지 향상, 신뢰할 만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행동지침의 시행 등을 실행하고 있음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의 부패척결을 위한 관세행정 혁신을 실행하고 있으나, 실제 그 결과에 대하여는 현장 설문과 자료 조사를 통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7-④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 인도네시아의 관세청은 관세행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개혁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세관공무원의 개혁임
- 이러한 인적자원의 개혁은 청렴, 경쟁력, 근무문화를 포함하며, 특히 관세청 직원에 대한 청렴도 향상 개혁은 인적자원 혁신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음
    - 관세청 조직에는 내부통제팀과 성과관리시스템이 있으며, 직원의 청렴도와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독립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현지 기업체들은 관세청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관세청 내에서도 사람의 자질 내지 품격에 대한 개혁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음
- 관세 환급, 부가세 환급, 법인세 선납 등 세금 선납 후 사후 정산 및 환급시의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음

- 필수 만연으로 정상적인 수출입에 장애 발생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및 보호 의식 부족

평가내용: 인도네시아 세관 공무원의 부패행위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이에 대한 관세청의 관세행정 개혁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8) 권익보호

8. 권익보호	8-①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8-② 통관관련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	--

8-① 규제의 신설 또는 주요 정책결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정도

8-② 통관관련 권익침해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복절차 접근의 용이성

8-③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익보호의 적정성

인도네시아에 수입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수입자에게 추정되는 관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승소확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평가내용: 수입자에게 추정되는 관세에 대한 이의 제기시 승소 확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이의제기 절차와 내용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권익보호에 대한 부분은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전문가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9) 서비스

9. 서비스	9-① 당해 통관절차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9-② 통관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

## 9-① 당해 통관절차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이 느낀 만족도

- 2009 인도네시아 Grand Survey에 따르면 세관행정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58.7%) 의견이 만족(3.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관 통관시 겪는 애로사항은 ‘통관시 비공식 비용 발생(35.9%)’과 ‘통관 수속의 지연(33.2%)’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세관 변화에 대한 과도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인도네시아 세관이 통합되고 인원이 재배치되면서 오히려 관료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 통관 지연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 세관의 부패척결과 세관업무의 효율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과도기를 겪으면서 세관원이 원칙을 고수한다는 명목으로 통관절차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오히려 통관지연이 심화되는 상황임
  - 연말연시 연휴기간 동안 업무를 중단해 통관지연이 극심한 상황도 자주 발생했었지만,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 그동안 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급행료 등을 통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으나 기준 적용을 강화하면서 통관시 겪는 애로사항이 더 많아지고 있음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 통관절차를 이용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9-② 통관과 관련된 편의적 시설, 시스템의 제공 정도

- 인도네시아 세관은 ‘National Single Window’라는 온라인 수출입 통관시스템을 도입을 추진하면서 세관 행정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임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 통관 관련 편의시설과 시스템의 제공 정도에 대한 자료를 차후 보강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

10) 통관환경 개선노력

10. 통관환경 개선노력	10-① 세관당국의 통관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10-② 통관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

10-① 세관당국의 통관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

10-② 통관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

-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ASEAN을 통해 중국, 한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자유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 조치보다는 세관 통관 강화 및 조정관세 부가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그리고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 강화, 통관시 SNI인증 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임
  - 특히 통관절차의 개선 및 선진화라는 명문화에서 수입을 위축시키는 조치들을 강화해 가는 중임
  
- 평가내용: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의 통관 문제점 파악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국과 협의의 적극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없으며,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전문가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Ⅵ. 요약 및 향후 개선방안

- 본 연구는 급변하는 국제 무역의 여건 속에서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통한 무역원활화에 밑바탕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작성됨
  - 급변하는 국제무역 상황에서 해외 통관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여러 수출국의 통관정보를 한국 수출기업에 제공하는 것은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또한 통관환경에 대한 올바른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고 살펴보는 것 역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제사회에서 한국 기업이 원활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1. 평가지표 개발

-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통관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와 그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 국제협약인 WTO협정과 개정교토협약 이념 등의 내용에 기초하여 통관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함
  - 통관환경요소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개발의 목적과 방법, 평가요소 및 주요 평가지표를 정의한 후 평가대상인 통관환경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음
- 또한 통관환경에 대한 평가지표는 각국에 적용되는 지표이므로 국제규범에 근거하여야 하며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함
  - 특히 어떤 분야나 특정국가에 한정하는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국제협약 등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이 특징임

- 이와 같이 개발된 지표가 일반적인 평가보고서<sup>93)</sup>보다 많은 양의 지표와 폭넓은 포괄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이한 무역 환경에서 타국을 평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평가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개발이 요구되기 때문임
  - 기존에 발간되던 평가보고서는 5~6개의 평가지표만을 토대로 하여 기존무역활동의 장애가 되는 애로사항에 중점을 두어 검토되었다고 한다
  - 본고에서 검토한 평가지표는 여러 국가에 공통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무역 전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지표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따라 그 포괄범위와 지표의 양이 기존의 보고서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지와 목적을 바탕으로 고려할 수 있는 평가요소로서 10개 항목을 제시함
  - 10개 평가요소는 ① 투명성, ② 공정성, ③ 적법성, ④ 관세장벽, ⑤ 비관세장벽, ⑥ 통관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 ⑦ 반부패, ⑧ 권리보호, ⑨ 서비스, ⑩ 통관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정리됨
  - 이 10개의 평가요소별로 각각 2~5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총 38개의 평가지표가 개발되었고 이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이후 적용사례를 살펴보았음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지표는 최종적인 지표가 아닌 향후 조정가능하고 다각적인 판단을 통해 수정되어야 할 평가지표(안)로서 현재 연구수준에서 고려 가능한 범위의 다양한 지표를 제시한 것임
  - 이와 같이 개발된 10개 평가요소에 따른 38개의 평가지표 중에서 ①투명성과 관련된 평가지표(5개)를 예시로 소개함<sup>94)</sup>
  - 투명성 관련된 평가지표로는 5개의 지표가 개발됨
    - 1-①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의 공개 정도

93) 기존의 외교통상부 평가보고서나 미국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등은 대략 5~6개의 지표만을 가지고 통상환경을 평가하는 것과 비교할 때 본고에서 개발된 지표는 10개의 요소에 38개의 지표라는 매우 많은 양의 지표이므로 대비를 보이고 있음

94) 개발된 모든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표 III-1> 참조

- 1-② 통관에 적용되는 법령·규칙 등 규제내용 공개방법의 합리성
  - 1-③ 통관과 관련한 세관결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
  - 1-④ 불이익한 처분과 관련한 세관결정 이유의 공개 정도
  - 1-⑤ 국제협약 가입상황
-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개발된 각 지표 38개에 대해서 2개국의 적용사례를 검토함
- 또한 본고에서는 통관환경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통관 기초환경과 통관단위 업무 집행 환경에 대한 지표를 세부적으로 검토<sup>95)</sup>하였음
- 통관 기초환경과 관련해서는 7개의 지표를 적용하였고, 통관단위 업무집행환경에 대해서는 통관업무를 15개로 구분하여 지표의 포괄범위를 제시함
- 통관 기초환경과 관련해서는 7개의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그 기준을 살펴보면 관련 법령 및 규칙의 관리와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협정체결 상황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① 관련법령·규칙 등과 이에 대한 관리, ② 전산/정보화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③ 이해관계자/이해관계국과의 협력시스템, ④ 국제협약 가입상황, ⑤ 우리나라와의 협정체결 상황, ⑥ 수입·수출·반송·환적물량, 외국무역선(기) 입출항 수, 징수실적, ⑦ 통관 담당조직과 인원으로 구분됨
- 통관 단위업무 집행환경과 관련해서는 통관업무를 15개로 구분하여 앞절에서 개발된 38개 지표 중 해당될 수 있는 지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제시함
- 구체적 제시내용은 ①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절차, ② 화물의 하역과 보관, ③ 보세제도, ④ 보세화물에 대한 관리, ⑤ 수입신고의 요건, ⑥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⑦관세율, ⑧ 수입통관절차, ⑨ 납세제도, ⑩ 수입신고사항의 심사제도, ⑪ 위법에 대한 조사와 처분, ⑫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⑬ 반송통관 및 환적절차, ⑭ 휴대품 통관절차, ⑮ 우편물 또는 특송화물의 통관절차로 분류함
- 다만, 본고에서는 15개 각 업무에 대해 지표의 범위를 포괄적으로만 제시하여, 각 업무별로 적용 가능한 지표를 열거하는 것으로 정리함

95) 구체적 내용은 <표 Ⅲ-2> 참조

- 그 이유는 평가대상국마다 갖추어진 통관 인프라와 운용하고 있는 통관시스템의 현대화에 차이가 있고, 통관을 규율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전문성)과 태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관절차의 집행은 나라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둬
  - 그러므로 본 연구인 탐색연구의 단계에서는 구체적 적용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범위의 조정 및 지표의 범주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지표개발에 앞서 이전 각국의 전반적인 무역환경과 무역장애요소를 정리한 자료인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와 『한-EU 시장장벽 보고서』 및 『외국의 통상환경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함
  -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미국 수출 및 투자에 장애가 되는 각국의 무역장벽 상황과 각국의 경제무역 환경에 대해 기술함
  - 한-EU 협상과 관련하여 EU상공회의소가 매년 발간하는 『한-EU 시장장벽 보고서』는 18개의 분과 위원회에서 해당부분별로 한-EU 간 통상교류시 발생하는 무역장벽의 현안 및 제언사항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임
  -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발간하는 『통상환경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에 대한 통상환경을 분석 및 정리하여 우리나라의 통상이익 확보를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2. 태국과 인도네시아 적용사례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10개 평가요소와, 각 평가요소별로 당해 요소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38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태국과 인도네시아 2개국에 대해 개괄적인 적용사례를 제시함
  - 다양한 여러 국가에 대한 평가지표의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검토해야 하지만 평가지표 개발의 초년도이고 해당 지표의 적용 여부, 가능성, 지표로서의 활용정도 등을 개괄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무역교류가 많은 2개국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사례를 살펴봄

- 특히, 후속연구의 자료 축적 및 평가를 위해 우리나라의 관세관련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2개국의 제도 전반과 지표의 적용 현황 및 통관현황의 특징을 정리한 후 향후 과제에 대해서 검토함

## 가. 태국

- 우선 태국 통관환경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무역통관과정에서 문제시되는 요소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국제규범과 불일치하는 독자적 인증제도를 운영함에 따른 각종 제도운영의 미비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임
  - 특히 국제규범과 별개인 태국만의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표준인증제도로 택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금전적 손실, 그리고 행정·절차적 문제까지 발생시키면서 제반 무역환경에 지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의 변경시 별도 고시, 통관과정에서 업무 절차상의 복잡성 등 기타 다양한 영역에서의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은 태국과의 교역을 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부담감을 야기하고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는 세관에서 매년 통관편람의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반면, 태국은 관세율을 별도 고시하는 등 종합적인 통관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입찰 공고시 웹사이트에 공지하나 태국어로만 운영하는 등 불합리한 요소가 존재함
  - 또한 관세청 수출입규정집에는 통관과정의 전자방식과 신속통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에서는 업무절차상의 복잡성, 직원의 업무미숙, 전산화 미비가 자주 지적됨
- 그 외에도 태국은 상당한 비관세장벽 제한을 가지고 있는데, 독자적 인증제도, 라벨

링제도, 식품안전, 환경보호, 수출입부과금, 정부조달 등 다양한 영역을 이루고 있음  
 ○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자국산업 보호 등의 측면이 존재하므로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태국의 경우는 주로 제절차상의 불합리한 요소에 대한 지적이 많아 서 이의 개선노력이 요구됨

- 최근 태국관세청은 다양한 지적에 대한 개선의 노력으로 행정효율화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ITD(Integrated Tariff Database)사이트 운영과 ‘Customs Clinic’을 개설함
  - ITD(Integrated Tariff Database) 사이트는 관세율변경 고시 방법의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태국 관세율령·수출입 관세율 검색·관세율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 또한 ‘Customs Clinic’은 수입업자들에게 통관절차와 관세율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서 무역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이상과 같이 태국의 통관환경을 평가요소별로 검토한 결과, 국제규범과 불일치하는 요소들이 다소 존재하고, 제도 운영시 업무절차상의 복잡성, 직원의 업무미숙, 전산화 미비가 자주 지적되며 이로 인한 무역마찰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최근 ITD 및 ‘Customs Clinic’ 등 일련의 조치는 태국의 세관당국이 관세청의 역할을 단순한 세금징수를 뛰어넘어 포괄적인 무역증진의 일환으로 판단한다는 큰 정책적 변화로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제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 및 제도운영의 불합리성 및 행정·절차적 복잡성에 대한 지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나.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 평가내용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들이 많았고 현지 진출 기업들의 세관행정에 대한 불만의견이 만족 의견(40%)에 비하여 60%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통관수속 지연이 많이 발생하며, 통관시 비공식 비용들이 발생하는 점들이 주된 애로사항들로 나타남
  -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는 통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National Single Window” 온라인 수출입 통관시스템 도입 추진, 통합서비스센터 신설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통관 절차가 비합리적이고 복잡하다는 의견들이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그 밖에 부가가치세 환급지연과 부가가치세 신청 절차의 복잡성,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시 현지 정부의 세무실사 등이 현지 진출 기업들의 주된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인도네시아는 세관들의 부정부패가 심하고, 세관들의 판단기준이 자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들, 간접적인 수입규제 강화 등도 원활한 통상환경 형성을 위한 개선사항들로 지적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부패위원회에서는 관료주의 개혁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부 부패 특히 통관 및 조세영역에서의 부패방지에 힘쓰고 있으나, 복잡한 구비서류 및 통관절차로 인하여 급행료 등 불법적인 커미션 수수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최근 인도네시아는 반덤핑과 같은 공식적인 수입규제조치보다는 세관 통관강화 및 조정관세 부과기준 강화, 자의적인 과표 산정, 통관업체들에 대한 단속 및 등록 강화, 통관시 SNI 인증강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안정보장과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과 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관세 환급률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실제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음
- 실제 현지 진출 기업들의 46.7%만이 환급신청을 하고 있어 과반수 이상의 기업들이 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음

- 대다수의 기업들이 환급신청을 통하여 정당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상과 같이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을 평가요소별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통관환경에 대한 각종 애로사항들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지연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인도네시아 비관세 처분과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 무역업체의 비용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처분과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통관시간도 오래 지연된다는 민원들이 많아 개선이 요구됨

### 3. 향후 개선방안

-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교역관계 설정 및 상대국이 직면한 경제사회 현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특정국의 통관환경을 평가하는 지표(안)을 대략적으로 마련해 보았고,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 2개국에 대해 지표의 적용현황을 각종 문헌 및 통계조사를 수행하여 살펴봄
- 본 연구의 문헌 및 통계조사방법은 통관환경평가를 위한 조사방법<sup>96)</sup> 중에서 1단계의 탐색조사 일부를 수행한 것으로서, 주로 문헌/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발간된 자료를 중심으로 애로사례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는 국내외 정부기관의 평가보고서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대상국의 상공회의소, 외교통상부, 관세무역개발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문헌자료를 모두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 그러나, 전문가조사 및 평가대상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의 심층조사는 1차 단계에서는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96) 제Ⅲ장 4절 '통관환경 평가를 위한 조사' 참조

- 심층조사에 포함되는 전문가조사 및 평가대상국의 자료요구 등은 탐색조사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판단하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1차 단계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전문가조사 등은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목적과 대상에 부합되게 조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 이와 같이 태국과 인도네시아 2개국에 각 평가요소별 평가지표를 적용한 결과 탐색조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국 관련 정보를 모두 활용하였음에도 많은 한계를 가짐
- 가장 우선적으로 언어의 제한과 조사 자료의 제약으로 평가지표와 관련된 제도 및 애로사항의 존재여부만을 판단했을 뿐 실질적 평가를 위한 정량적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였음
  - 또한 탐색조사의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무역관계자나 전문가 및 다른 나라 행정당국의 구체적 이해와 요구 등을 수렴할 수 없기 때문에 지표의 개발과 평가의 과정은 다소 추상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
- 이는 현재의 조사수준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계이므로 이는 추후 무역관계자의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 등을 병행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발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자료의 제약으로 모든 지표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좀더 심층조사가 필요한 대상국의 행정당국 및 여타 무역협회나 단체 등의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전문가조사 및 설문조사의 대략적 조사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현지 직접투자 법인 등의 전문가조사와 설문조사를 더불어 수행하는 것이 요구됨
- 이에 본고에서는 향후 평가지표의 적용과정과 방법, 설문조사의 형태 그리고 설문조사 대략 구성을 제시하고,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는 이후 연구의 과제로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우선 평가지표의 적용과정을 살펴보면, 구체성 확보 및 설문조사의 수행과정은 각국에 주재하는 상공회의소를 이용하여 현지법인들과 교류하는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임
  - 평가지표의 구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태국과 무역업을 수행하는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설문지를 마련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문지 마련 등 구체적·실질적 조사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각 업체들의 업무협조를 촉발하여 정보를 수집<sup>97)</sup>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대략적인 설문조사의 형태와 구성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후속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의 양식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대략적인 설문의 형태를 살펴보면 설문의 대상은 주요하게 ① 여행객·국내수출업체 ② 현지 투자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의 경우는 일반적인 통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역 전반에 대한 보편적 질문으로 구성될 수 있는 반면,
  - ②의 경우는 ①의 보편적인 질문을 모두 포함하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설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설문의 구성은 대략 ①대상국 관련 보편적 정보, ②일반적인 무역현황, ③구체적인 통관환경 관련 질문으로 구성될 수 있음
  - 대상국 관련 보편적 정보로는 대한무역순위, 대상국에 진출한 업체 수, 대한(對韓) 자유무역협정 체결 유무 등의 일반적 정보가 해당될 것임

97) 우리나라의 통상환경에 대한 평가보고서나 그외 각국의 평가보고서도 출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대상국의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업체들의 무역관련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통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일반적인 무역현황은 제Ⅲ장에서 개발한 10개의 평가요소에 따른 38개 지표를 포괄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인 통관환경 관련 설문내용으로는 ①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절차 ②화물의 하역과 보관 ③보세제도 ④보세화물에 대한 관리 ⑤수입신고의 요건 ⑥관세율 ⑦수입통관절차 ⑧수입신고사항의 심사제도 ⑨납세제도 ⑩수입사항의 심사제도 ⑪위법에 대한 조사와 처분 ⑫수출물품의 통관절차 ⑬반송통관 및 환적절차 ⑭휴대품통관절차 ⑮우편물 또는 특송화물의 통관절차 등이 될 수 있을 것임
- 지금까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2개국에 적용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국가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이라는 과제는 일반적인 평가지표의 개발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우선 일반적인 인구조사나 소득조사와는 달리 무역 관련자 및 이해당사국의 관점에 따라 평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최우선 과제인 객관성의 확보에서부터 공정성, 합리성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다각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도 존재함
-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이후 타국가에 대한 통관환경 평가지표개발 적용과정을 대략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함
- 우선 초년도에는 통관환경 전반에 대한 탐색조사로서 평가지표를 대략적으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2개국의 적용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검토함
  - 이후 2단계에서는 해당국 및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구체적 설문(안)을 마련하고 이를 일반 무역 관련업체 및 현재 투자법인 등에 배포하여 수집하는 과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3단계에서는 이렇게 조사된 설문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서, 실제 적용 가능한 평가지표를 조정하고 개발하여
  - 4단계에 여러 각국에 적용하고 정량화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이와 같이 통관환경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은 단시간에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타국가의 무역환경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함과 긴 안목으로 지표개발 과정에 임해야 할 것임
- 또한 모든 지표개발이 초기 개발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되는 후속연도의 많은 심층조사와 이해당사자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반영하여 꾸준한 조정이 요구됨

## 참고문헌

- 김 구,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비앤엠북스, 2008.
- 레리 B., 프레드릭 J 크레이브터 저, 김효동외 역, 『사회과학통계방법론의 핵심 이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양준석, 「WTO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적 함의」,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2004, 6.
- 외교통상부, 『WTO 이해하기』, 1999, 8.
- 이남구,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정책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 제1호, 2005, 2.
- 이명현·정재호·김재식, 『무역원활화 규범관련 논의농향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12.
- 정재완, 「국경절차에 대한 가치평가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6권제3호, 2005. 8.
- \_\_\_\_\_,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0.
- 정재완·장근호, 『WCO교토협약이 권고하는 선진통관제도의 합리적 도입방안』,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1.
- 채서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비앤엠북스, 2009.
- 외교통상부, 『분야별 외국의 통상환경』, 각 연도.
- \_\_\_\_\_, 『통상마찰·기업 애로사례집』, 각 연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SEAN 비관세장벽 현황조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 정보-인도네시아』 2010. 5.
- 대한민국 관세청,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한태상공회회의소, 『태국의 관세제도 및 무역정책』, 2009. 6.
- EUCCK, 『시장장벽 백서』, 각 연도.

- 외교통상부, 「한·ASEAN FTA 주요 내용」 2007. 4.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중소기업연구원, 『2009 인도네시아 Grand Survey-인도네시아 진출기업 경영성과 및 전망』 2009. 11.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각 연도.
- Anne O. Krueger, *The WTO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 Arrowsmith, S., “Transparency in Government Procurement : The Objectives of Regulation and the Boundarie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Journal of World Trade*, 37, 2003.
- Bernard M. Hoekman & Michel M. Kostecki,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EUCCK, Review on 2009 EUCCK Market Access Issues 및 2010 Market Access issues, 2009, 2010.
- Kameswari, S., “Introduction to the Revised Kyoto Convention-the key instrument link the GATT article on trade Facilitation,” 2004.
- Kostecki, M., “International Marketing and the Trading System”, Geneva : ITC, 2001.
- Leslie Alan Glick, Esq., “Guide to United States Customs and Trade Laws,” Wolter Kluwer, 2008.
- Marceau G. and Trachtman J., “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greement,”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greement, and the GATT, *Journal of World Trade*, 36, 2002.
- Meserlin, P. and Zarrouk, J., “Trade Facilitation : Technical Regulation and Customs Procedures,” *The World Economy*, 23, 2000.
- Stewart, Torrence P(ed), *The GATT Uruguay Round: A Negotiating History (1986-1992)*,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3.
- U.S. Representativ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09, 2010.

<http://www.kita.net/>(무역협회)

<http://www.customs.go.kr/>(관세청, 태국(방콕) 자료실)

<http://www.korchamthai.com/kr/> (한태상공회회의소)

<http://www.kotra.or.kr/wps/portal/dk>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mofat.go.kr/economic/relation/site/index.jsp>(외교통상부 경제통상사이트)

<http://korean.eucck.org/>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http://www.fta.go.kr/user/index.asp>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09/2009-national-trade-estimate-report-foreign-trade> (NTE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www.kctdi.or.kr/](http://www.kctdi.or.kr/) (관세무역개발원)

[www.customsclinic.org](http://www.customsclinic.org) 태국관세청 'Customs Clinic'

## [부 록]

### 1. 정부투자기관의 아시아지역 소재지 및 연락처

#### 1. 싱가포르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7 Temasec Boulevard, #13-02 Suntec  
Tower One Singapore 038987

Tel : 65-6221-3055 Fax : 65-6223-5850

E-mail : kortrade@singnet.com.sg

② 한국무역협회

Tel : 65-6323-1161 Fax : 65-6323-1171

E-mail : heaven@kita.net

#### 2. 태국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change Tower 32th Fl., Unit No. 3201 Sukhumvit Road, Klongtoey Sub-district,  
Klongtoey District, Bangkok 10110, thailand

Tel : 66-2-663-6900 Fax : 66-2-261-1232

E-mail : kotra2@kotrathai.com

### 3. 인도네시아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isma GKBI, 21st Fl, Suite 2102, Jl. Jendral Sudirman Kav 28, Jakarta 10210, Indonesia

Tel : 62-21-574-1522 Fax : 62-21-572-2187

E-mail : jakarta@kotra.or.kr

② 한국무역보험공사

Wisma GKBI 21st. Fl., Suite 2104, Jl. Jendral

Sudirman Kav. 28, Jakarta 10210 Indonesia

Tel : 001-62-21-570-5565, 5790-1060

Fax : 001-62-21-574-1470

E-Mail : kes0163@keic.or.kr

### 4. 말레이시아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th Fl., Menara Hap Seng (formerly known as Mui Plaza), jalan P. Ramlee, 5025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2117-7100 Fax : 60-3-2142-2107

E-mail : kennykh@kotra.or.kr

### 5. 필리핀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nit B 10th FL., Ayala Life-FGU Center, 6811 Ayala Ave., Makati City, 1226, Metro

Manila

Tel : 63-2-893-3244/1183 Fax : 63-2-817-3369/751-4358

E-mail : manila@kotra.or.kr

## 6. 베트남

###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노이)KOTRA Hanoi, c/o Korean Embassy Suite V501, 5th Fl., Pacific Place 83B  
Ly Thuong Kiet St., Hoan Kiem Dist., Hanoi, Vietnam

Tel : 84-4-3946-0511~8 Fax : 84-4-3946-0519

E-mail : kotra@hn.vnn.vn

(호치민)R.708B, Fl.7, Diamond Plaza, 34 Le Duan Street, Dist.1, HCMC, Vietnam

Tel : 84-8-3822-3944/3950 Fax : 84-8-3822-3941

E-mail : kotrasgn@hanmail.net

### ② 한국무역보험공사

Diamond Plaza(#507), 34 Le Duan St., Dist1,

Ho Chi Minh City

Tel : 001-84-8-824-6844/6845 Fax : 001-84-8-824-6846

E-Mail : lsj0181@hanmail.net

## 7. 인도

###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뉴델리)A-602 Signature Tower, South City, NH-8, Gurgaon, 122001, Haryana, India

Tel : 91-124-4628-500 Fax : 91-124-4628-501

E-mail : ktcdelhi@ktcdelhi.net

(뭄바이) No.93, 9th Floor, Maker Chamber 6, Nariman Point, Mumbai-400 021,  
India

Tel : 91-22-6631-8000 Fax : 91-22-6631-8780

E-mail : ktcmbai@kotra.or.k

(첸나이) 463, L.R.Swami Parvatham Block, Anna Salai, Teynampet, Chennai-600018

Tel : 91-44-24337280 Fax : 91-44-24337281

E-mail : kotra@chennaiktc.com

② 한국무역보험공사

Unit No. 306, Rectangle-1, D-4, Saket, New Delhi-110017, India

Tel : 001-91-11-4057-5045,5047

Fax : 001-91-11-4057-5046

E-Mail : happyojh@paran.com

③ 한국수출입은행

901,9th Floor, Eros Corporate Tower, Nehru Place, New Delhi-110019, India

Tel : 91-11-4168-8720~2

Fax : 91-11-4168-8723

E-mail : pks1041@koreaexim.go.kr

## 8. 미얀마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902, Sakura Tower, No.339, Bogyoke Aung San Rd., Kyauktada T/S, Yangon,  
Myanmar

Tel : 95-1-255453~6

Fax : 95-1-255457

E-mail : yangon@kotra.or.kr

## 9. 기타지역

① 캄보디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TRA Office at PGCT Center, St 274, Phnompenh,  
Cambodia

Tel : 855-23-999 099 Fax : 855-23-211 598

E-mail : kotrapnh@gmail.com

② 방글라데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OTRA Office at Molly Capita Centre, 7th Floor. 76,  
Gulnshan-1 Dhaka-1212, Bangladesh

Tel : 880-2-881-3153 Fax : 880-2-882-3068

E-mail : sono50@kotra.or.kr

## 2. 종합무역상사의 아시아지역 소재지 및 연락처

### 1. 싱가포르

#### ① 삼성물산

Samsung C&T Singapore Pte., Ltd.

3 CHURCH STREET, #21-02, SAMSUNG HUB BLDG, SINGAPORE

Tel : 65-6550-8300      Fax : 65-6550-8333

#### ② 현대종합상사

Hyundai Singapore Pte., Ltd., 7 Temasek Boulevard, #40-01B, Suntec City Tower 1,  
Singapore

Tel : 65-6337-4111      Fax : 65-6336-4111

M/P : 65-9639-2696      E-mail : ikkim@hyundaicorp.com

#### ③ 대우인터내셔널

Daewoo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7 Temasek Boulevard #27-03

Suntec Tower One, Singapore 028987

Tel : 65-6333-5507      Fax : 65-6333-5508~9

E-mail : sgkim@daewoo.com.sg

#### ④ LG상사

LG INTERNATIONAL (S'PORE) Pte., Ltd.

Tel 65-6832-1500, 6333-6089

Fax : 65-6333-6115      E-mail : jnlee@lgi.co.kr

⑤ 효성무역 PG

SINGAPORE Hyosung Singapore Pte, Ltd.  
250, North Bridge Road#16-03, Raffles City Tower, Singapore 179101  
Tel : 656-337-2079 Fax : 656-339-4504

2. 태국

① 삼성물산

Samsung C&T (Thailand) Co., Ltd.  
21ST FL. LAKE RAJADA OFFICE COMPLEX, 193/90 RACHADAPISEK RD.KHET,  
KLONGTOEY  
Tel : 66-2-264-0527 Fax : 66-2-264-0530

② LG상사

LG INTERNATIONAL CORP. BANGKOK OFFICE  
Tel : 66-2-260-6610 Fax : 66-2-260-6619~20  
E-mail : chchun@lgi.co.kr

③ 효성무역 PG

BANGKOK Hyosung Corporation Bangkok Office  
Room No. 1404, 14th Floor One Pacific Place 142 Sukhumvit Road, Bangkok, 10110,  
Thailand  
Tel : 66-2-653-2031 Fax : 66-2-653-2030

④ GS 글로벌

399 Interchange 21 Building, 23th Floor, Sukhumvit Road, KhlongToey-Nua,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10310  
Tel : 66-2-611-2826~8 Fax : 66-2-611-2825

E-mail : djyum@gsgcorp.com

### 3. 인도네시아

#### ① 삼성물산

- Samsung C&T Corporation Jakarta Office

12A FLOOR, MENARA KEBON SIRIH, SUITE 12A01 JL.KEBON SIRIH NO. 17-19  
JAKARTA INDONESIA

Tel : 62-21-3983-7001 Fax : 61-21-571-3243,3244

- Samsung & Ganda Pte. Ltd.

JL. PUTRI INDAH NO. 3, PEKANBARU, RIAU, INDONESIA

Tel : 62-761-859-774

- Samsung & Ganda Pte. Ltd.- PT. Gandaerah Hendana

UKUI, SUB DISTRICT PANGKALAN KURAS, REGION OF PELALAWAN, RIAU  
PROVINCE, INDONESIA

Tel : 62-761-859-774

- Samsung & Ganda Pte. Ltd.- PT. Inecda

SIBERIDA, SUB DISTRICT SIBERIDA, REGION INDRAGIRI HULU, RIAU  
PROVINCE, INDONESIA

Tel : 62-761-859-774

#### ② 현대종합상사

- Bri II Building, 21st floor, Suite 2103A, JL. Jend. Sudirman KAV. 44-46 Jakarta  
10210 Indonesia

Tel : 62-21-571-3441/3443 Fax : 62-21-571-3444

M/P : 62-855-900-9988 E-mail : dskwon@hyundaicorp.com

③ LG상사

LG INTERNATIONAL CORP. JAKARTA REPRESENTATIVE OFFICE

Tel : 62-21-515-1704 Fax : 62-21-515-1710

Email : ywlee@lgi.co.kr

④ 효성무역 PG

JAKARTA Hyosung Corporation Jakarta Office

Citi Bank Tower 24th F1, Plaza Bapindo Jl, Jendral Sudirman Kav, 54-55

Jakarta 12920, Indonesia

Tel : 62-21-526-6475 Fax : 62-21-526-6473

⑤ GS글로벌

Korea Centre Bldg., #302 Jl, Jend. Gatot Subroto Kav. 57~58 Jakarta, Selatan 12950

Tel : 62-21-5296-3283 Fax : 62-21-5296-3284

E-mail : jhkim64@gsgcorp.com

#### 4. 말레이시아

① 삼성물산

Samsung C&T Malaysia Sdn. Bhd.

1404 KENANGA INTERNATIONAL, SULTAN ISMAIL 50250, KUALA LUMPUR

Tel : 60-3-2161-6497 Fax : 60-3-2161-5907

② 현대종합상사

Box 55, Lot WO5-B1, 5th Floor, West Block, Wisma Selangor Dredging, 142-C Jalan

Ampang, 5045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2161-7455 Fax : 60-3-2161-7012

M/P : 60-19-210-8582 E-mail : jbchai@hyundaicorp.com

③ LG상사

LG INTERNATIONAL CORP. KUALA LUMPUR OFFICE

Tel : 60-3-2163-0288 Fax : 60-3-2162-8960

Email : bensontay@lgi.co.kr

④ 효성무역 PG

KUALA LUMPUR Hyosung Corporation Kuala Lumpur Office

Suite 24-04, Level 24 Wisma Goldhill, No. 67, Jalan Raja Chulan, 5020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2031-2416 Fax : 60-3-2031-2417

⑤ GS글로벌

Suite 1707, 17th Floor Kenanga International Building, Jalan Sultan Ismail 50250 Kuala Lumpur, Malaysia 50250

말레이시아 Kuala Lumpur 지사

Tel : 60-3-2162-3635 Fax : 60-3-2162-3807

E-mail : rich@gsgcorp.com

5. 필리핀

① 삼성물산

Samsung C&T Corporation Manila Regional Office

1231 2F. SOLID HOUSE BLDG., 2285 PASONG TAMO EXTENTION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Tel : 63-2-815-2937 Fax : 63-2-815-2936

Star World Corporation Ltd.

1231 2F. SOLID HOUSE BLDG., 2285 PASONG TAMO EXTENTION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Tel : 63-2-815-2937 Fax : 63-2-815-2936

② LG상사

LG INTERNATIONAL CORP. MANILA OFFICE

Tel : 63-2-6336097 Fax : 63-2-6342250

E-mail : jl.enriquez@lgi.co.kr

③ 효성무역 PG

MANILA Hyosung Corporation Manila Office

12F Unit 1203, Ayala Tower 1, Ayala Triangle, Ayala Avenue, Makati City,  
Philippines

Tel : 632-848-6204 Fax : 632-848-6208

6. 베트남

① 삼성물산

- Samsung C&T Corporation Ho Chi Minh Office

#701,DIAMOND PLAZA BLDG., 34 LE DUAN ST., DISTRICT 1, HOCHIMINH,  
VIETNAM

Tel : 84-823-1135 Fax : 84-8-823-113

- Samsung C&T Corporation Hanoi Representative Office

ROOM 406, PACIFIC PLACE 83B LY THOUNG KIET STR., HANOI, VIETNAM

Tel : 84-4-946-1407 Fax : 84-4-946-1413

- Samsung Chemical Technology VINA Llc.

LAND PLOT NO.10 ON THE ROAD NO.3, GO DAU INDUSTRIAL ZONE, PHUOC  
THAI VILLAGE,

LONG THANH DISTRICT, DONG NAI PROVINCE, VIETNAM

Tel : 84-8-823-1135 Fax : 84-61-355-1831

② 현대종합상사

Saigon Centre Building 11th Floor, 65 Le Loi Street, District 1, Hochiminh City,  
Vietnam

Tel : 84-8-8213501 Fax : 84-8-8213500

M/P : 84-95-8100038 E-mail : kwkang@hyundaicorp.com

③ LG상사

- LG INTERNATIONAL CORP. HOCHIMINH OFFICE

Tel : 84-8-3829-3279 Fax : 84-8-3829-1639

E-mail : mjjo0@lgi.co.kr

- LG INTERNATIONAL CORP. HANOI OFFICE

Tel : 84-4-3734-7388 Fax : 84-4-3734-7389

E-mail : mjjo0@lgi.co.kr

④ GS글로벌

- Room 1, 20th Floor, Vincom B Tower, 191 Ba Trieu, Hanoi, Vietnam

Tel : 84-4-3934-5100 Fax : 84-4-3934-5104

E-mail : dungnd@gsgcorp.com

- Lot 301, Nguyen Van Huong Street, Thao Dien ward, District 2, Hochiminh,  
Vietnam

Tel : 84-8-3519-2035 Fax : 84-8-3519-2039

E-mail : lulurara@gsgcorp.com

⑤ 효성무역 PG

- HOCHIMINH Hyosung Vietnam Co., Ltd.

N2 St, Nhon Trach 5 Industrial Zone, Dong Nai Province, Vietnam

Tel : 84-613-569-445 Fax : 84-613-569-230

- HOCHIMINH Hyosung Hochiminh Office

65 Nguyen Du Street, 4th Floor 4B1 District 1, Hochiminh City, Vietnam  
Tel : 84-8-823-1970 Fax : 84-8-823-1971

⑥ SK 네트워크

8F, Diamond Plaza Bld, 34 Le Duan St, Dist. 1, HCMC, Vietnam  
Tel : 84-8-3823-1397 Fax : 84-8-3823-1397  
E-mail : skchoi@sknetworks.co.kr

7. 인도

① 삼성물산

- Samsung C&T Corporation New Delhi Office  
1ST & 2ND FLOOR,55,COMMUNITY CENTRE EAST OF KAILASH, NEW DELHI,  
INDIA  
Tel : 91-11-4655-9000 Fax : 91-11-4655-9090  
- Samsung C&T Corporation Mumbai Office  
27,MAKER CHAMBER 3, NARIMAN POINT, MUMBAI-400 021, MUMBAI, INDIA  
Tel : 91-22-6655-0491 Fax : 91-22-6655-0500

② 현대종합상사

Hyundai Corporation, New Delhi liaison office 302 (3rd floor) Southern Park D2,  
Saket District Centre, Saket, New Delhi 110017  
Tel : 91-11-4168-9111 Fax : 91-11-4168-9120  
M/P : 91-98110-34958 E-mail : jdskim@hyundaicorp.com

③ LG상사

- LG INTERNATIONAL CORP. NEW DELHI OFFICE  
Tel : 91-11-2376-6601 Fax : 91-11-2376-6600

E-mail : hsjae@lgi.co.kr

- LG INTERNATIONAL CORP. MUMBAI LIASON OFFICE

Tel : 91-22-2822-2494 Fax : 91-22-2822-2492

E-mail : jdrho@lgi.co.kr

④ 효성무역 PG

NEW DELHI Hyosung Corporation New Delhi Office

D-4 Commercial Complex Paschimi Marg 2nd Floor, Vasant Vihar, New Delhi, India

Tel : 91-11-4166-2255 Fax : 91-11-4609-4912

⑤ GS글로벌

Flat No. 1108-1111, Ansal Tower 38, Nehru Place New-Delhi-110019

Tes : 91-11-4132-3700/3703 Fax : 91-11-4132-5649

E-mail : ckpark@gsgcorp.com

⑥ sk 네트워크스

404/405, 36 Turner Road, Turner Road, Bandra(W), Mumbai, India

Tel : 91-22-2645-4344 Fax : 91-22-2645-4343

E-mail : bkpark1@sknetworks.co.kr

8. 미얀마

① 삼성물산

Samsung C&T Corporation Yangon Office

5TH FL, DAGON CENTER, 262-264 PYAY ROAD, SANCHAUNG TOWNSHIP,  
YANGON, MYANMAR

Tel : 95-9-513-878 Fax : 95-9-514-718

② 효성무역 PG

MYANMAR Myanmar Hyosung Co., Ltd.

Room No. 9(A), First Floor, Micasa Hotel, 17 Kaba Aye Pagoda, Yanki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 95-1-650933

Fax : 95-1-650933

## 3. 최근 6년간 관세청장회의(세관협력회의) 개최실적

연도	일시	회의명	개최지
2004	2.20	제1차 한·일 관세청장회의	한국(서울)
	3.30	제1차 한·칠레 관세청장회의	칠레(발파라이소)
	4. 2	제1차 한·페루 관세청장회의	페루(칼라오)
	5.25	제2차 한·카흐스탄 관세청장회의	한국(서울)
	6. 4	제1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	멕시코(멕시코시티)
	6.28	제1차 한·노르웨이 관세청장회의	노르웨이(오슬로)
	9.14	제9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한국(서울)
	10.15	제1차 한·오스트리아 관세청장회의	오스트리아(빈)
	10.18	제1차 한·헝가리 관세청장회의	헝가리(부다페스트)
	11. 8	제12차 한·미국 관세청장회의	한국(부산)
	12.17	제25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홍콩
	12.20	제11차 한·중국 관세청장회의	중국(북경)
2005	2.23	제2차 한·칠레 관세청장회의	한국(서울)
	4.12	제3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카자흐스탄(알마티)
	4.15	제3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	몽골(울란바토르)
	7.14	제5차 한·태국 세관협력회의	한국(서울)
	9.13	제10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베트남(하노이)
	11.23	제26차 한·홍콩 세관협력회의	한국(제주)
2006	2.23	제5차 한·EU 세관협력회의	벨기에(브뤼셀)
	3.28	제1차 한·도미니카 관세청장회의	도미니카(산토도밍고)
	5.16	제11차 한·베트남 세관협력회의	한국(서울)
	7.5	제1차 한·아제르바이잔 세관협력회의	아제르바이잔(바쿠)
	7.7	제1차 한·키르기즈 세관협력회의	키르기즈(비슈케크)
	7.10	제1차 한·벨라루스 세관협력회의	벨라루스(민스크)
	7.13	제1차 한·타지키스탄 세관협력회의	타지키스탄(두산베)
	11.3	제1차 한·필리핀 세관협력회의	필리핀(마닐라)

연도	일시	회의명	개최지
2007	4.9	제12차 한·중국 관세청장회의	한국(서울)
	4.11	제 1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	일본(일본)
	4.12	제27차 한·일본 세관협력회의	일본(일본)
	5.30	제 6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	태국(방콕)
	11.29	제27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홍콩(홍콩)
	11.09	제 1차 한·콜롬비아 세관협력회의	콜롬비아(보고타)
	11.12	제 1차 한·과테말라 세관협력회의	과테말라
	11.25	제 1차 한·싱가폴 세관협력회의	싱가폴
2008	12.07	제 1차 한·에콰도르 세관협력회의	에콰도르(과야킬)
	5.07	제12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베트남(하노이)
	7.22	제 7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	러시아(모스크바)
	10.23	제 2차 한·폴란드 관세청장회의	폴란드(바르샤바)
	11.11	제 2차 한중일 삼국 관세청장회의	한국(제주도)
2009	11.20	제 6차 한·EU 세관협력회의	한국(제주도)
	3.5	제 1차 한·이스라엘 세관협력회의	이스라엘(예루살렘)
	4.20	제 8차 한·러시아 관세청장회의	한국(서울)
	4.28	제 4차 한·카자흐스탄 세관협력회의	카자흐스탄(알마티)
	4.30	제 1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	인도(뉴델리)
	7.29	제13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	중국(북경)
	9.28	제 3차 한중일 삼국 관세청장회의	한국(제주)
	11.2	제28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한국(제주)
	11.4	제 4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	한국(제주)
	11.19	제 5차 한·카자흐스탄 세관협력회의	한국(서울)
11.26	제 7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	한국(서울)	
12.10	제 7차 한·EU 세관협력회의	벨기에(브뤼셀)	



관세연구 10-04

**통관환경 평가지표 개발 연구**  
- 태국, 인도네시아 평가지표 적용 -

---

2010년 12월 23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정재완 · 이정미 · 김정아 · 박지우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543-8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